

21대 대선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대한상공회의소

KEF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언을 드리며

한국경제는 오랜 세월을 견뎌온 거목(巨木)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씨앗을 틔우고, 산업화의 바람을 타고 줄기를 세웠으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이라는 혹독한 계절도 묵묵히 지나왔습니다.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잎을 키우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거목은 전환기의 문턱에서 점점 생기를 잃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하락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가지 끝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AI 기술혁명의 격랑은 외풍이 되어 나무를 흔들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장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이 거목을 다시 키울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는 무엇보다도 한국경제라는 나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장의 토양을 단단히 다지고, 민간의 활력을 끌어낼 동력과 영양분을 공급하며, 새로운 성장 산업이라는 새 가지를 붙여야 합니다. 동시에 경제의 영토를 확장해 더 넓은 시장으로 뿌리를 뻗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거목은 다시 우람한 줄기를 키우고,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과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제언집에는 국민들의 현장 목소리도 담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소통플랫폼을 통해 지난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국민들께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나만의 정책' 의견을 여쭙었고, 총 8,184분이 참여하셔서 24,490건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국민들이 이번 21대 대선에 가장 바라는 바는 '민생경제'와 '기업·산업의 성장', '경기회복'이었습니다. 높은 물가와 주거비를 안정시켜 달라는 마음, 세계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산업에 힘이 되어달라는 마음,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내수경기에 활력을 넣어달라는 마음들이 담긴 결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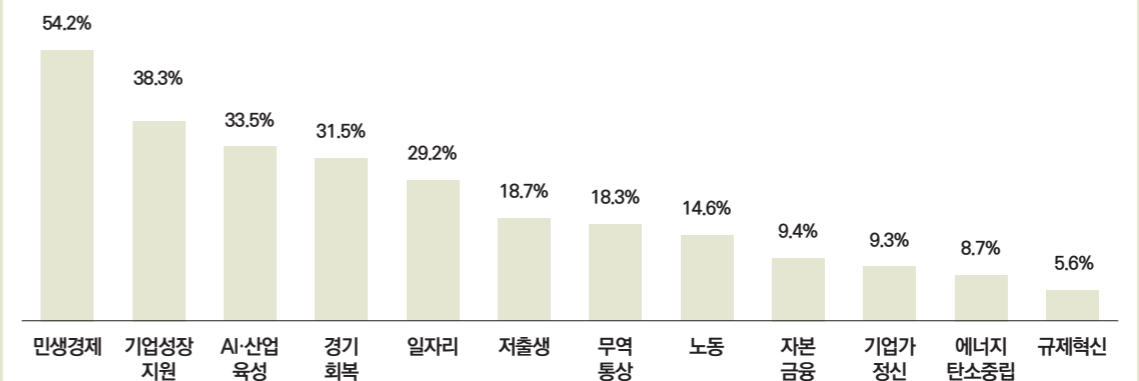
점점 좁아지는 취업의 문을 넓혀달라는 제안, 이제라도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을 만들어달라는 제안, 관세폭풍과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할 대책 주문, 국제기관들이 항상 우리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경직적 노동시장과 대립적 노사관계를 풀 해법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과 기업의 의견을 경제 5단체가 공동으로 모아서 '4대 분야, 100대 과제'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하기 위해 추구해야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공약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계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제안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나만의 정책' 12대 과제

* 총 8,184명, 복수응답



Contents

I. 성장을 촉진할 동력

1 AI 육성 9

- 1 국가 AI 역량 강화를 위한 3+3 이니셔티브
- 2 AI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 3 제조 AI 활성화
- 4 중소기업 AX 기반 마련
- 5 AI 기반 차세대 수출산업 육성
- 6 한국형 LLM 모델 구축과 활용 촉진
- 7 AI 인프라에 대한 에너지의 효율적 공급
- 8 AI 데이터의 확충 및 활용 촉진 방안
- 9 고급 AI 인재 양성-확보-활용 방안
- 10 한국형 AI 규제 프레임워크 방안

2 규제혁신 37

- 1 통합 솔루션 '메가 샌드박스' 추진
- 2 지역혁신 위한 광역지자체 재정·권한 확대
- 3 네거티브 전환을 통한 규제시스템 혁신
- 4 국민배심원제 통한 규제갈등 해소
- 5 입법영향평가 도입
- 6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체계 마련

3 에너지정책 53

- 1 전력시장 개편
- 2 다양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 3 LNG 산업의 글로벌화
- 4 차세대 원자로 건설 지원
- 5 종합 에너지 거버넌스 확립

4 탄소중립 67

- 1 한국판 '탄소중립 전환(GX) 추진법' 제정
- 2 탈탄소 전환금융 도입
- 3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
- 4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
- 5 탄소중립 무역장벽 대응 수출전략 추진

5 기업가정신 81

- 1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도입
- 2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 강화
- 3 증여 활성화를 통한 기업승계 환경 조성
- 4 기업공익법인 활성화
- 5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로 통한 기업가정신 제고
- 6 경제인 배임죄 개선
- 7 기업인 형사처벌 규정을 행정제재로 전환
- 8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 확보
- 9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 10 사회적 가치 창출 확산 위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
- 11 사회문제 해결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

II. 새로운 산업의 이식

6 신산업 105

- 1 고부가가치 미래산업, 항공우주산업 육성
- 2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3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 4 미래형 친환경 선박 지원 확대
- 5 방위산업, CCUS 분야 국가전략기술 지정
- 6 첨단전략산업 직접환급, 제3자 양도 허용
- 7 첨단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 8 첨단전략산업 보조금 및 인프라 지원
- 9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기술개발 지원

7 서비스산업 125

- 1 서비스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
- 2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전략
- 3 혁신성장 연계 MICE산업 육성
- 4 수출입 물류 디지털화 추진
- 5 물류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 6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지원

Contents

8 스케일업 143

- 1 스타트업 M&A 활성화 기반 조성
- 2 벤처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CVC 제도 개선
- 3 중견기업 육성정책 강화
- 4 스타트업의 수출 지원 확대
- 5 오픈 이노베이션 통한 혁신성장 확산
- 6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 7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적합업종제도 합리화
- 8 내수 스케일업을 위한 장·단기 대책 추진
- 9 기업 규모별 차별 철폐
- 10 연구개발 및 투자 인센티브 확대
- 11 불합리한 유통규제 개선

Ⅲ. 경제영토 확장

9 통상·해외시장 173

-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상조치 대응
- 2 시장 개척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FTA 강화
- 3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진출전략 구체화
- 4 국가전략산업의 공급망 리스크 분산 추진
- 5 리쇼어링 및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강화
- 6 국내 산업영향을 고려한 외국기업 국내투자 유치
- 7 무역업계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력 강화

10 수출지원 191

- 1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 강화
- 2 수출기업 해외 인증 지원 확대
- 3 간접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4 수출통제제도 절차 간소화 및 이행 부담 완화
- 5 경제안보 차원의 해외자원개발투자 정책지원 확대
- 6 외국인 해외마케팅 인력 활용을 위한 비자 완화

Ⅳ.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11 자본·금융 207

- 1 한국형 인내자본 펀드 신설
- 2 첨단산업 투자 확충 위한 규제 완화
- 3 민간벤처투자 활성화
- 4 토큰증권(ST) 제도화
- 5 자본시장 자금유입 촉진
- 6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

12 인력 223

- 1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한 고령자 고용연장
- 2 출산·육아 친화적 근로문화 확산 지원
- 3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 4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 5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활용 확대
- 6 해외 고급인력 유치 확대
- 7 취업 의지 촉진을 위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13 노동·안전 237

- 1 환경변화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
- 2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 3 최저임금 제도 개편
- 4 적극적 고용환경 조성 위한 제도 개선
- 5 노사관계 선진화
- 6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명확화 및 처벌 수준 완화
- 7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4 산업재생 261

- 1 산업위기지역 활력 부여
- 2 석유화학산업 테스트베드 복합단지 조성
- 3 과잉생산설비 조정으로 위기업종 구조조정 지원
- 4 산업위기 지역·업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21대 대선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1


성장을 촉진할 동력 - AI 육성

- 1 국가 AI 역량 강화를 위한 3+3 이니셔티브
- 2 AI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 3 제조 AI 활성화
- 4 중소기업 AX 기반 마련
- 5 AI기반 차세대 수출산업 육성
- 6 한국형 LLM 모델 구축과 활용 촉진
- 7 AI 인프라에 대한 에너지의 효율적 공급
- 8 AI 데이터의 확충 및 활용 촉진 방안
- 9 고급 AI 인재 양성-확보-활용 방안
- 10 한국형 AI 규제 프레임워크 방안

 대한상공회의소

 KEF 한국경영자총협회

 FKI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현장의 목소리

시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산업분야에 접목시키는 것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주력 분야인 제조업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제조업의 미래를 바꾸는 핵심 기술이 될 것입니다.” 40대 연구직

“AI 투자는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미래 경쟁력과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AI 기술 수준은 선도국인 미국과 격차가 존재합니다. 미국, 중국, EU 등은 AI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고 투자를 확대 중입니다.” 30대 여성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이 시급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활용 교육과 인프라 지원을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30대 제조중소기업 중간관리자

AI 활용해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과도한 규제를 풀고 AI를 활용해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가시킬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컨대 농업에서는 스마트팜, AI 드론 등 기술은 이미 갖춰져 있는데, 규제 때문에 도입이 지체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30대 남성

“AI를 통해 경제성장과 경제안보를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AI 분야 전체를 키우는 게 어렵다면 AI 보안과 같은 ‘대한민국 특화분야’를 찾고 집중한다면 어떨까요.” 30대 공공기관 재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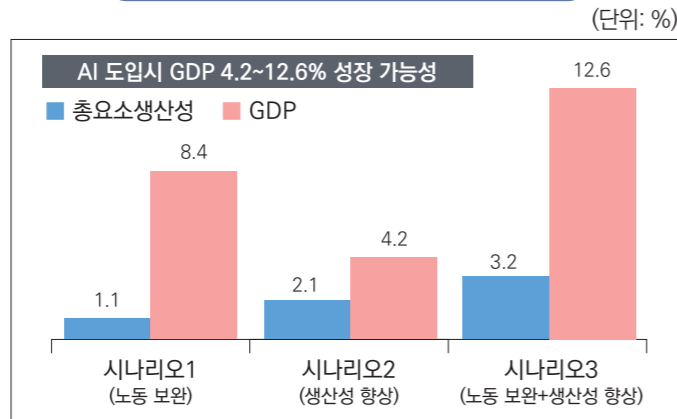
“AI 인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인재 양성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신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현장 실습과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40대 직장인

1-1 국가 AI 역량 강화를 위한 3+3 이니셔티브

현실진단

- AI는 경제/산업의 기존 작동방식을 전환시켜,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 등 엄청난 경제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
 - 한국경제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감소, 1%대 저성장의 리스크를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AI 도입·활용은 필수

AI 도입이 생산성 및 GDP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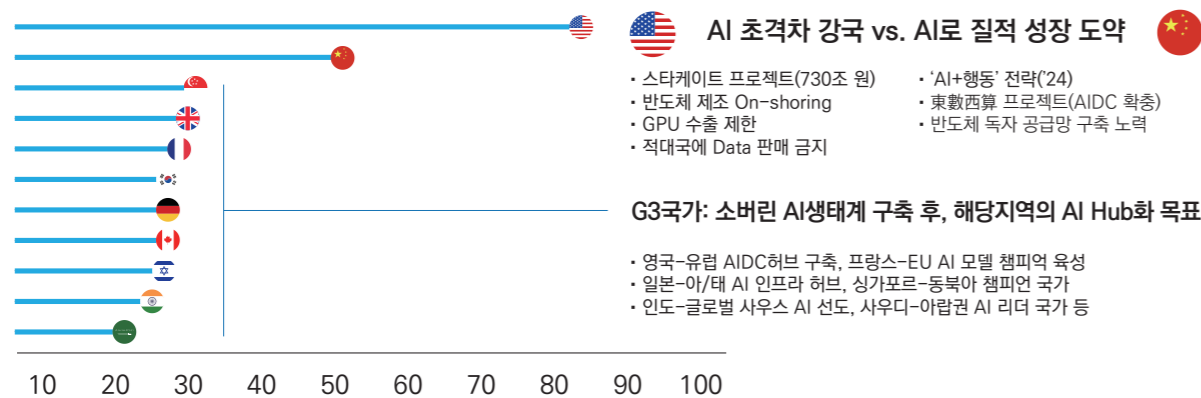


* 한국은행('25.2)

- AI 산업을 둘러싼 국가간 패권전쟁 양상을 띄고 있으며 현재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G3 국가들의 AI 정책 경쟁도 가열 중

* G3 국가들은 자국의 소비인 AI 생태계 구축에 우선 집중한 후에 해당 지역의 AI 허브 지위를 확보하여 시장 블록화를 노리는 전략을 추구

국가 간 AI 정책 Race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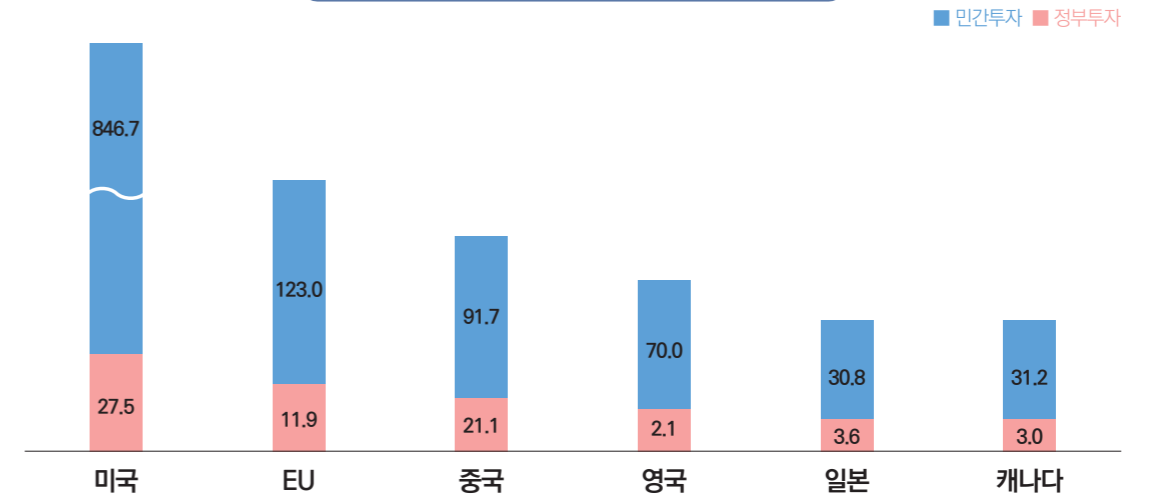


* 국가별 순위 출처: Tortoise Media, "The Global AI Index 2024"

- 우리나라는 AI 인프라와 모델 분야에서 자체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나라지만 AI 투자는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미국의 투자 규모는 '23년 기준 874.1억 달러로, 전 세계 AI 투자의 62%를 차지.
-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 비교 대상에서 빠져 있지만 일본·캐나다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체 국가 중 10위권 정도에 해당 (NIA, 2024)

주요국 AI 투자 동향 (단위: 억 달러, '2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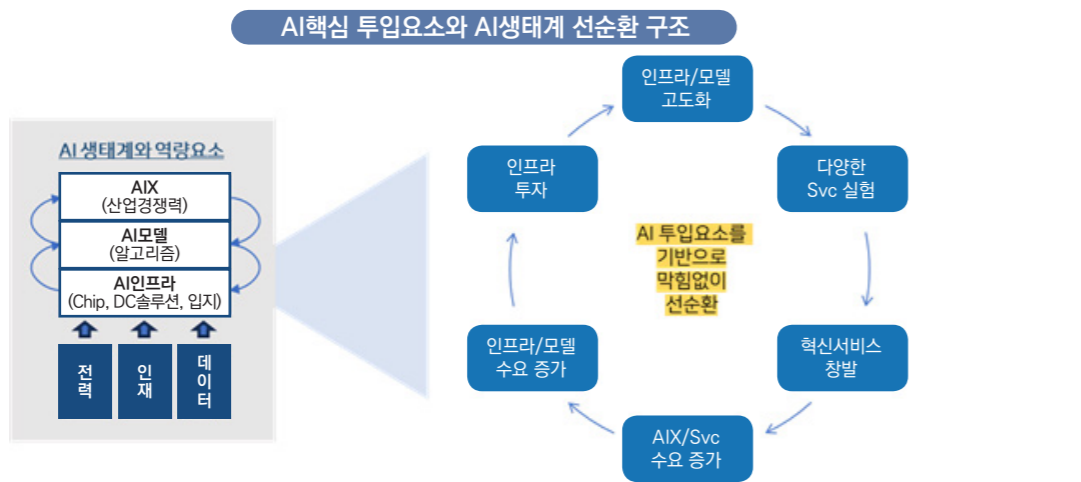
출처: NIA(2024), "글로벌 정부-민간 분야 AI 투자 동향 분석"

- AI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시 선도국과의 큰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초래할 수 있음

- 최근 급격한 AI 기술변화로 국가간의 'AI Divide' 발생할 우려 커지는 상황
- 특히 우리의 주력산업인 제조업 분야에 AI 적용이 늦어질 경우 제품 품질, 생산효율성, 가격 등 측면에서 경쟁국에 뒤처질 우려
- * 제조업에 AI 도입시 납기 준수율 20~30% 증가, 불량률 20~50% 감소, 제품 개발 비용 50% 절감 효과(삼일pwc)

정책제안

- **향후 3~4년간은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
 - 과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겪으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할 때 '사이버코리아21' 국가정보화 비전을 발표하고 막대한 국가 자원을 집중해 정보통신 강국으로 도약한 사례 있음
 - 마찬가지로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적극적 정책지원 하에 기술혁신과 시장창출 노력을 집중하여 우리나라 AI 국가역량을 빠르게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
- **AI 국가역량 강화는 AI 산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구축 과정에서 가능해짐**
 - AI의 핵심 투입요소인 전력, 인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프라/모델 고도화 → 서비스 창출 → 인프라/모델/서비스 수요증가"가 막힘없이 순환되는 것을 의미
 - 다만, 막대한 AI 투자부담, 초기 수요 불확실성, AI의 핵심 투입요소인 전력·데이터·인재 등의 공급 문제 등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정부의 역할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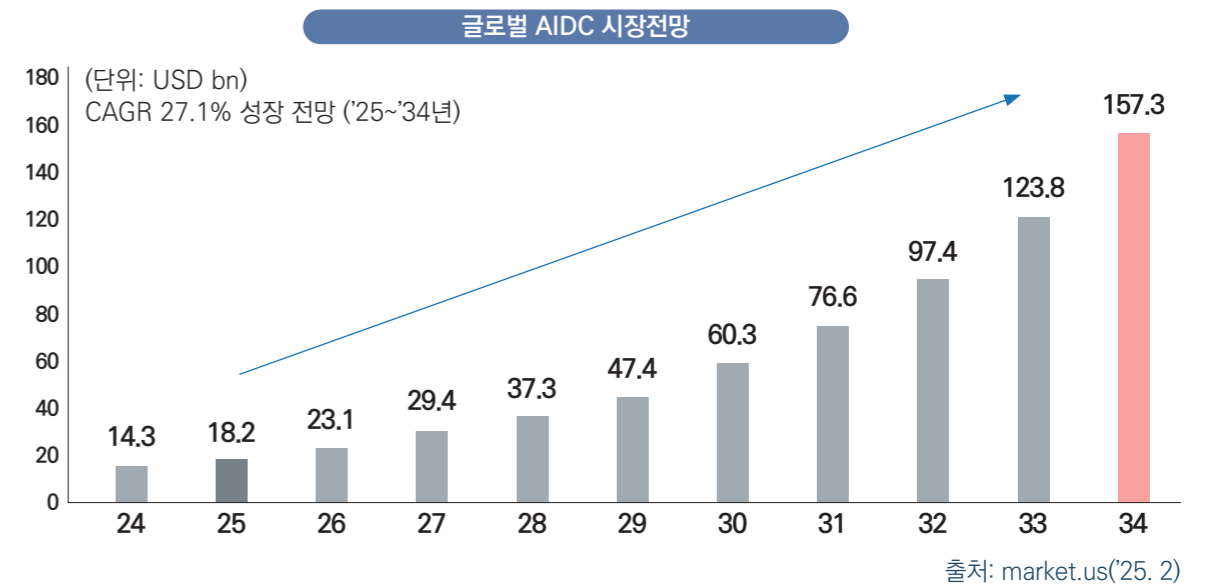


- **AI 파도에 순항하여 대한민국이 G3로 도약하기 위한 AI 국가전략 방향은 "3+3 Initiative"**
 - AI를 새로운 국부창출을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X) 및 3대 투입요소(전력, 데이터, 인재)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 ⇒ 3대 밸류체인과 3대 투입요소가 신경망처럼 얽혀 있어 정책의 파편적 접근보다 통합적 접근이 효과적
 - "3+3 Initiative" 정책의 성공적 실행으로 AI G3 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대한민국 경제·사회가 직면한 근본과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
 - AI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을 넘어 AI 수출국으로 도약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성장의 기회를 잡아 국부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

1-2 AI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현실진단

- **글로벌 AIDC 시장이 급성장 중이며 우리나라는 이 분야 잠재력이 큰 나라로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면 AI 생태계 선순환을 이끌어낼 Trigger 역할 가능**
 - 글로벌 AIDC시장이 향후 10년간(25~34년) 연평균 27%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HBM, AI반도체, 에너지솔루션 등 핵심요소에서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기회 포착 가능



- **다만, 국내는 아직 AIDC 시장형성 초기 단계로 공급측면에서는 막대한 AIDC 구축비용이, 수요측면에서는 대규모 자본 투자를 뒷받침할 만한 수요 불확실성이 상존**
 - 수전 용량 100MW급 AIDC 1개 건설에도 약 6.5조 원의 투자가 필요
 - 아직 잠재력에 머물고 있는 AIDC 에너지/냉각/DC운영 솔루션 개발 역량 축적도 과제 → 기존 강자인 글로벌 CSP와의 협력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필요
- **아울러 각종 규제가 AI 인프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
 - 주요국 AI인프라 구축에 앞장서는 가운데, 한국은 투자 부족 및 각종 규제에 발목
 - * (AI 민간투자 지수) 美100점 > 中88.8점 > 사우디 51.2점 >... > 韓 27.7점(11위) (英Tortoise Intelligence('25)) (규제) 데이터센터 구축시 통과해야 하는 '전력계통 영향평가'는 평가기준 높고 시간·비용 과도

정책제안

● 초기수요 확대 방안 마련

- 가칭 'AI 컴퓨팅 액세스 펀드'를 조성해, 바우처 제공 대폭 확대
 - * 연구기관, 대학, 스타트업, 공공/전략산업 등 수요처에 AIDC 액세스 바우처 제공
 - * 캐나다 정부는 '컴퓨팅 액세스 기금'을 조성하여 AI 컴퓨팅 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AIDC 수요 촉진
- 정부가 추진중인 산업별 선도 프로젝트 확대·강화에도 바우처 활용 → 제조업 등 주력산업 AX 촉진

● AIDC 투자에 대한 세제 및 정책금융 지원 강화

- AI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범위가 컴퓨터 하드웨어 제조시설로 제한되어 있음
- 이로 인해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국내 주요 AI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1% 수준의 낮은 공제율만 적용받는 실정
 - ⇒ 이에 최대 15%(대기업 기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중 '인공지능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AIDC 관련 설비를 포함(컴퓨팅 인프라, 냉각(쿨링) 설비, 전력 공급 설비, 운영·관제 설비 등)

조세특례제한법 통합투자세액공제 현황(2025년 기준)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연구개발시설 포함)	15%		25%
반도체	20%		3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연구개발시설 포함)	3%	8%	14%
그 외(일반 자산)	1%	7%	12%

● AIDC 투자 관련 규제 완화

- AI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까다로운 평가기준* 조정해 초기투자 부담 완화
 - * (現)계약전력의 40%이상 자가발전원 확보해야 만점 → (改)20%이상 자가발전원 확보
- 데이터센터 內 과도한 면적의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화 완화
 - * 상주인력 불필요하나 서울 등 주요 지자체는 숙박시설 기준에 해당되는 200m² 당 1대 규제 적용
- AI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시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 행정절차 간소화

1-3 제조 AI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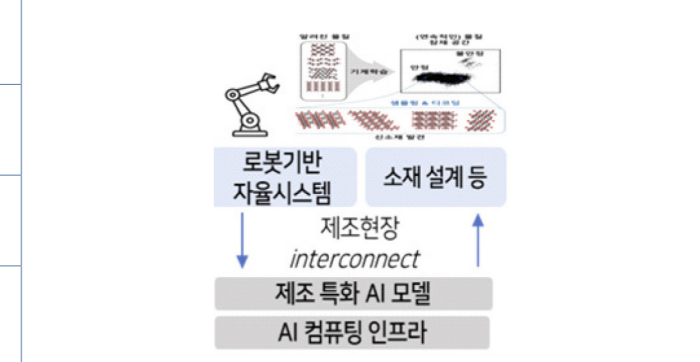
현실진단

● 한국경제가 재도약 발판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에서 AI의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 AI 도입은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증대시킬 중요한 기회
 - * AI가 노동력을 보완하고 전반적인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시나리오를 상정할 때 총요소생산성이 3.2%, GDP가 12.6% 증가 (한국은행, "AI와 한국경제", 2025.2.10.)

●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제조 특화 AI모델 개발, AI의 제조 순과정 투입에 상당한 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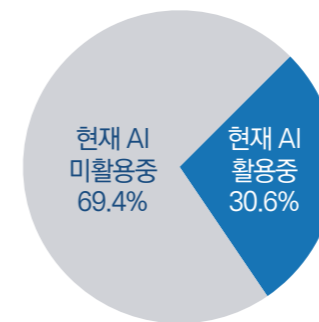
- (Foxconn) 제조 특화 LLM 'FoxBrain' 개발, 제조 및 공급망 관리
- (Xiaomi) AI/로봇 기반으로 스마트폰 제조 전과정 자동화(다크팩토리)
- (Haier) 산업인터넷 플랫폼(COSMOPlat)에 AI적용 맞춤형 대량생산 지원
- (Daim Research) 공장안 실물로봇 조작성 공장 밖 AI디지털트윈으로 전환해 공장투자비 30%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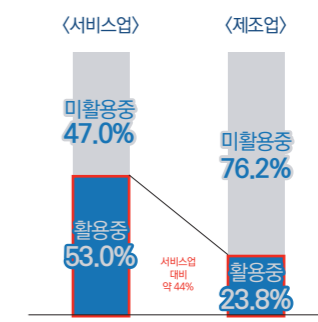
● 우리 기업들은 초기 투자비용 부담, 데이터 축적 등 문제로 AI 활용과 도입에 어려움

- 기업의 78%가 생산성 제고와 비용절감 등 성과향상을 위해 AI 기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AI기술 활용비율은 그 절반에 그치고 제조업의 활용비율 저조

AI 기술 실제 활용 비율



제조업/서비스업 AI활용비율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국내 기업 AI 기술 활용실태 조사"(24년 8월)

- 산업별 AI 도입률에서도 제조업은 타 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산업별 AI 도입률은 2022년에 제조업(2.7%)·소매업(2.6%)에서 특히 낮고, 정보통신(19.0%), 전기·가스공급(13.0%), 금융·보험(12.8%), 교육 서비스(10.6%) 순 (산업연구원, 2025)

 정책제안

● 제조 AI 촉진 펀드 조성

- 지난 1월 정부는 AI 등 첨단전략산업의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로 투자·대출·보증 등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발표
- 조속한 관련법 개정, 기금의 지원도 일회성 지원이 아닌 실패를 용인하는 장기적 지원 기금 마련을 통해 산업 AX 지원 확대할 필요

첨단전략산업기금 주요내용

- 첨단산업 특성상 장기투자 불가피한데 그간 정책펀드는 투자기간이 충분치 않아(5년 ↓) 기술·초장기투자 부족하다는 문제 인식 ⇒ 인내자본 확충 필요성
- 기금규모는 50조원으로 20년간 기금운용, 자본투자 및 후순위보강 등 방식으로 지원

● 제조 AI 특화 Agent 및 Physical AI 개발 지원

- 디지털 트윈과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gent 개발 지원
- 특히 국내 약 3만개 가량 있는 제조실행시스템(MES) 솔루션 기업을 sLLM 연계한 제조 AI 에이전트로 육성
- 기술 개발 및 제조 과정에서 사람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개발 지원
 - *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2025년 CES에서 "AI의 다음 개척 분야는 Physical AI"임을 강조
 - *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피지컬 AI 기술 주도하며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시스템 등 개발

● 제조기업의 AI 투자 부담을 줄여줄 실질적인 조치 마련

- 국가전략기술 AI분야에 AI기반 제조혁신, AI 응용 제조혁신 기술 포함
- 신성장 원천기술에 디지털트윈, 방열/그래핀 등 고기능성 소재기술 포함

● 제조 Data Lake 구축 및 활용 기반 조성

- 기업 Data는 공유 가능한 부분과 기밀 사항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가장 잘 아는 민간 제조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한 구축이 중요 → 산업 데이터 거래에 대한 시장형성 지원 (민간 자율의 표준화, 대가 산정 등)
- 실물자산 데이터 표준화 및 축적 체계 마련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 확대

유럽 및 독일의 제조 AI 관련 데이터 정책 사례

독일	<p>[Plattform Industrie 4.0] 제조 AI 추진 및 관련 데이터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set Administration Shell) 상호운용성 표준 개발 및 확산 지원 → 실물자산 등의 정보/데이터 축적 및 상호운용성 위한 표준화, 기업간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 (Manufacturing-X) 산업 전반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이니셔티브 → 자동차·기계 등 분야별로 개방형 데이터 협업 플랫폼 마련 • (Catena-X) 자동차 산업 전 공급망 데이터 교환 플랫폼 → 제조·부품·IT·통신기업이 참여,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공동 표준·데이터 모델 개발
EU	<p>[EU vertical AI Priorities Plan] 10대 전략산업 AX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공유로 학습데이터 확보 및 산업 특화 모델 개발을 위한 협력 구조 수립 • 모델 훈련, 데이터 교류 시 경쟁법 예외 적용 검토

1-4 중소기업 AX 기반 마련

현실진단

- 산업 전방위로 AI 기술 확산하나, 중소 제조업 현장에서의 활용은 저조한 현실
 - 필요성은 인식(78.4%)하나 실제 활용률은 30.6%에 불과 (*24, 상의·KIET)
 - * 규모별 활용률 : 대기업(48.8%) > 중견기업(30.1%) > 중소기업(28.7%)
 - * CEO 관심도·도입의지 : 대기업(48.7%) > 중견기업(34.9%) > 중소기업(31.9%)
 - 제조업의 AI 기술 활용률은 서비스업 분야의 절반 수준
 - * 금융서비스(57.1%), IT서비스(55.1%), 제조업(23.8%)
- 이러한 AI 격차로 양극화가 심화되며 산업 생태계 전반의 AX도 지연 우려
 - AI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종사자 수도 기업 규모별로 양극화
 - * '27년까지 AI 12,800명, 빅데이터 19,600명, 클라우드 18,800명 부족 (*23, 고용부)
 - * 평균 AI 종사자 수 : 대기업(460.7명), 중기업(13.7명), 소기업(3.4명) (*23, 과기부)
- 따라서 中企 AX 기반을 마련해 향후 기업 규모별, 업종별 생산성 격차 완화 필요
 - AI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과 양질의 데이터 축적 등 선행투자가 필요하나 인력과 자본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은 AI 도입도 어려운 실정
 - 기술, 인력, 자금, 역량 등 추진역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지원 시급

정책제안

-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 광역별 AI 교육센터 설치해 온오프라인 교육 및 업종 특화 컨설팅 실시
- 중소기업이 AI 기술 및 데이터 활용 쉽도록 접근성 제고
 - 중소기업 맞춤형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체계 마련
 - 중소기업이 저비용으로 도입 가능한 AI 솔루션 제공 등 인프라 구축

1-5 AI 기반 차세대 수출산업 육성

현실진단

- 한국의 AI 기술수준은 미국, 중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 역량 강화가 시급하나 과도한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
 - 한국의 글로벌 AI 역량 지수(27)는 미국(100), 중국(54)을 크게 하회하며, 한국의 AI 특허 건수는 중국의 12%, 특허의 실제 사업화 활용 비중은 미국의 8%에 불과

주요국 AI 역량 지표

구분	미국	중국	한국	설명
글로벌 AI 지수(*24)	100	54	27	높을수록 국가별 AI 역량 수준 우수
AI 특허 건수(*24.1~10, 건)	8,609	12,945	1,537	많을수록 AI 연구개발 수준 우수
피인용 상위 AI 특허 점유율(*17~*22, %)	66.2	10.2	5.5	높을수록 AI 특허 실효성(사업화 연계) 높음
AI 투자규모(*24, 억 달러)	1,090	93	13	클수록 AI 연구개발 지원 많음

자료: Tortoise Media, WIPO, SPRI, Stanford

- 타국과 달리 한국의 정책(AI기본법)은 규제에 집중되어, 기업 AI의 운영 환경을 저해
 - * 내년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의 규제 항목은 구체적인 반면, 주요 규제 대상인 '고영향 AI'의 정의는 모호하여 규제 범위가 자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산업계 우려 존재

주요국 AI 정책 및 특징

	AI 관련 법안 (시행연도)	정책 특징	AI 기업환경 순위(*24)
미국	· 국가 AI 이니셔티브 법(*20)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행정명령(*23)	· 민간 주도 개발 (정부는 지원 중심) · 규제보다는 자율성 중시	2
중국	· 차세대 AI 발전계획(*17) · 'AI+ 전략'(*24)	· 대형 AI 모델 개발 및 산업 융합 중심	21
한국	· AI 국가전략(*19) · AI 기본법(*26 시행 예정)	· 글로벌 표준 연계 규제 중심	35

자료: 각국 정부 웹사이트, Tortoise Media

- 중소 제조기업 중심의 우리 수출업계가 체감하는 AI의 효과도 미미한 수준으로, 기업이 AI를 수출 역량 제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
 - 2024년 산업디지털전환실태조사에 따르면, AI기술을 업무에 활용하는 우리기업은 8.8%에 불과하며 전통제조업 및 소규모 기업에서는 활용비율이 보다 낮게 나타남.
 - AI 역량 제고와 더불어 실제 수출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지원 필요

정책제안

● AI 응용 수출 유망 분야 발굴 및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AI 산업 규제 완화 및 수출기업 지원 제도화는 수출 구조 고도화의 핵심 수단으로, 향후 기술 기반 수출 경쟁력을 갖춘 'AI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제공
- (네거티브 규제 적용) AI 기본법 등 규제 중심의 법·제도 등을 완화하고 “네거티브 규제” 적용으로 AI 산업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경직된 규제 환경 개선
- (AI 융합 수출산업 지원 제도화) AI 기본법의 하위법령에 AI를 활용한 수출진흥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행령 및 행정규칙을 마련하고, 정책의 범위와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
 - * 지원범위 : 해외마케팅, 무역금융, 생산, 계약, 물류 등 수출 실무 전 과정 포괄
 - * 지원대상 : 기존 수출기업 외에도 수출전환기업(내수→수출), 수출창업 준비기업 등으로 확장

● AI 기술기업-수출 제조업체 간 협력 생태계 조성

- AI 기술기업과 수출 제조기업 간 상호 보완적 역량을 활용해, 정부가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실증-제품고도화-해외진출'로 이어지는 융합형 수출모델을 육성
- 기술-수요 매칭 플랫폼과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제조 현장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기술 실증 및 AI 기반 제품개선 동시 추진
-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AI 기술의 산업 현장 실증을 유연하게 허용하고, 수출 연계형 기술의 조기 적용 지원
- 민간 주도의 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해 AI 기술의 현장 적용과 수출 성과를 연계하고, 지속 가능한 AI 수출산업 성장 기반 마련

AI-제조업 협력 및 실제 사례

분야	협력 방식	협력 효과	실제 사례
의료기기	AI 영상진단 기술 보유 기업 + 영상장비 제조업체	진단 정밀도 향상, 고부가 의료기기 수출	루닛(AI기반 판독 솔루션) + 필립스·GE(의료기기 제조업체)
자동차 전장부품	자율주행·ADAS 알고리즘 개발사 + 전장 부품 제조업체	스마트화된 부품 수출, 고부가가치화	스트라드비전(AI기반 ADAS개발) + 현대모비스(자동차부품)
식품/의약품	공정 제어 AI 기업 + 식품/제약 제조업체	위생·정밀성 향상, 품질 인증 기반 수출 유리	알테어(AI기반 미세 제공정제어) + 화이자 (제약사)

자료: 언론보도 정리

1-6 한국형 LLM 모델 구축과 활용 촉진

현실진단

- 미국과 중국 기업들의 모델 성능 여전히 월등한 가운데, 딥시크 등장 이후 모델 기술의 장벽 완화로 소버린 모델 구축 경쟁과 AI Agent 플랫폼 경쟁도 가열 중
 - 주요국은 이미 국가 특성에 맞는 소버린 모델을 개발 중

프랑스 (미스트랄)	- 딥마인드, 메타 출신 연구원 '23년 창업 - '23.6, 에릭 슈미트로부터 약 1.05억 유로 투자 조달 - '23.12, 엔트리슨 호로위츠 등으로부터 3.85억 유로 조달 - 창업 반년 만에 유니콘 등극
일본 (사카나)	- 경제산업성의 GENIAC(Generative AI Accelerator Challenge) 프로그램에서 탄생 - 구글 AI 연구원 출신 창업 - 복수의 오픈소스 AI를 이중 교배하는 방식으로 개발 - 설립 1년 만에 유니콘으로 등극
UAE (Felcon)	- ATRC(첨단기술연구위원회) 산하 TII(기술혁신연구소)에서 개발
영국 (BritGPT)	- 영국 정부 주도 독자적 LLM 구축 - '23.4, Foundation Model TF 구성

최근 AI 모델 시장의 Key Trend

- i) 미·중 FM 모델 압도적 우위 지속
- ii) FM(Foundation Model) 기술 수렴 및 오픈소스 모델 확대로 해자 다소 완화
- iii) Vertical 특화 AI Model 출시 경쟁 확대
- iv) AI Agent P/f 선점 경쟁 가속화 (오픈 AI, Anthropic MCP 지원 발표)

● 한국형 LLM(WBL) 개발을 통해 AI 선도국으로 비상할 필요

- 해외 LLM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AI 종속국으로 전략 우려
 - * AI 특성상 공공, 국가안보, 기업기밀 등이 중요한 분야 및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지켜야 하는 분야에서 종속된다면 국가 존립에까지 직결되는 문제
- 정부는 글로벌 수준의 모델 개발을 위한 'World Best LLM(WBL) 프로젝트' 추진
 - * 국내 AI 선도기업으로 구성된 정예팀을 선정하여 최대 3년간 GPU, 학습용 데이터, 인재 등 필요한 자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25년 추경예산 1,936억원 반영)

● 국산 LLM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 AI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외에도 활용촉진 및 산업확산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수적

- WBL 프로젝트로 확보된 국산 LLM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막대한 추산비용은 국산 LLM 활용촉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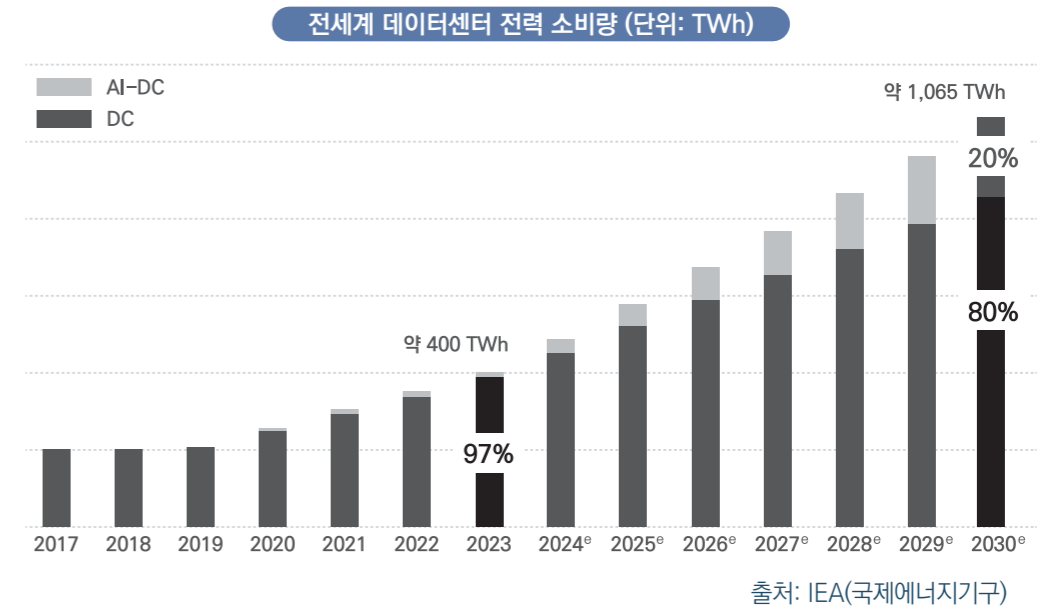
정책제안

- **국가대표 LLM 개발을 위해 국내 역량을 총결집할 수 있는 협력의 장 마련 필요**
 - 각 기업이 보유한 기반기술과 이의 강·약점이 서로 다르므로 협력 시 상호 보완 가능성 존재
- **한국형 LLM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분야 Use Case 확대 방안 마련**
 - 민원, 행정 등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부터 시작하여 고령화, 환경문제 등 사회적 이슈 관련한 서비스에 적용 방안 적극 모색
 - 이러한 수요 창출을 통해 AI 시장의 초기 불확실성을 경감하는 효과도 기대 가능
- **장기적으로 민간 AI 모델 고도화와 Vertical 모델로의 진화 지원**
 - 한국형 LLM 모델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혁신의 성과 개방 확산 → 오픈소스화 및 AI 모델 개발 경험 공유 커뮤니티 확대 등 산업 특화 Vertical 모델 개발 지원
 - 모델 개발 고도화의 제반 여건 조성 및 인프라 비용 지원 → AI 인프라 접근 바우처 제공, 데이터 정책 지원 등
- **LLM 모델에 국산 AI 반도체를 사용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추론 인프라 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대할 필요**
 - AI 반도체 산업의 내수 기반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 기대

1-7 AI 인프라에 대한 에너지의 효율적 공급

현실진단

- **대규모 전력의 효율적 공급문제가 AI 시장 활성화의 최대 병목으로 부상**
 - 전 세계 AIDC 전력 소비량은 '23년 약 400 TWh에서 '30년 1,065 TWh로 약 3배 증가 전망 (한국 연간 전력 총소비량의 2배 수준)
 - '29년까지 국내 신규 DC 소요 전력량은 1GW급 원전 53기 추가 건설 수준



- **각국은 AIDC 전력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전력망의 확충, 다양한 재생/대체에너지원 개발 등 적극적 정책 추진**
 - 美 트럼프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25.1)”: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목표, AI Plant 건설 승인 간소화 의지 표명
 - 美, SMR 개발 전폭 지원(트럼프 공약사항)
 - 中, 동수서산(東數西算)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 2GW급 태양광발전소 구축 지원
- **우리나라도 기간 전력망 특별법 등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 공급 노력중이나 정책 실행이 중요**
 - 예컨대, 강한 전력계통영향평가 규제 및 경쟁국 대비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AIDC 투자 및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
 - * 통상 AIDC는 대규모 수전이 필요한데, 현재 규정상 10MW 이상 전력사용자에 대해 전기 흐름 품질 등 영향 사전평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로 인해 최대 6개월 정도의 시간 소요
 - 송전망 확충, 분산 전원 등 전력 공급 효율화 정책 방안, AIDC 신재생 에너지 수요 대응 등 AI 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안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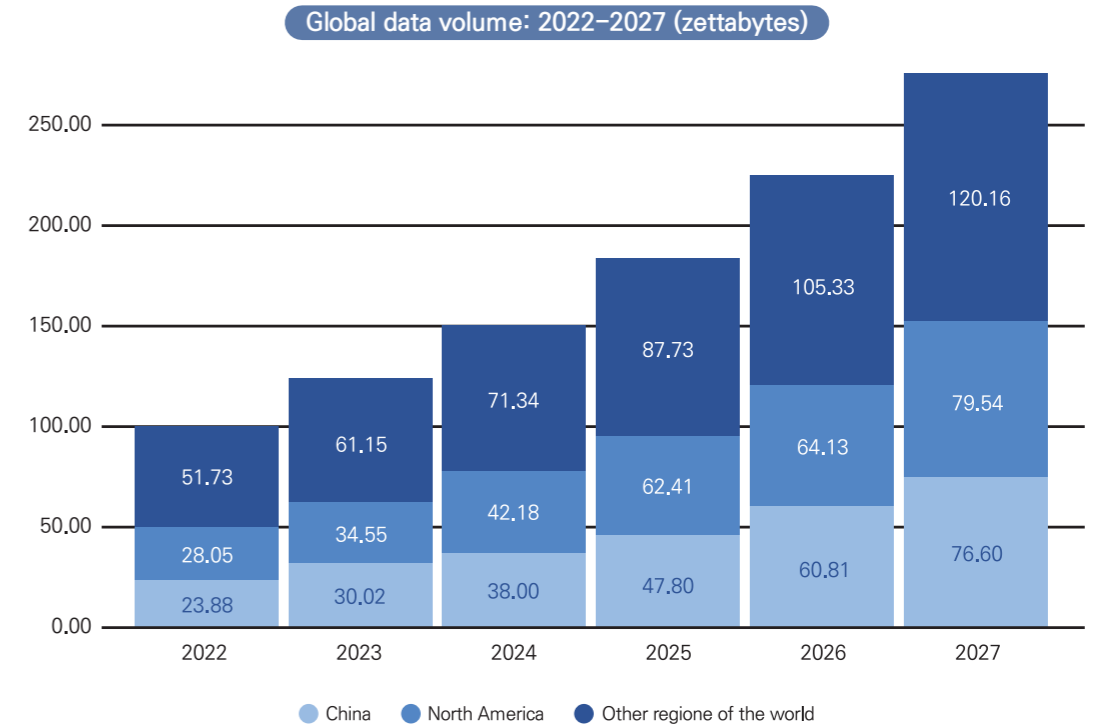
정책제안

- **K-AIDC 수요를 반영한 전력망 확충**
 - 비수도권 AIDC 대상 송전망 확충
 - AIDC와 재생에너지 발전시간 송전망 확충 지원
- **지역 거점 AI 특구를 지정해, 에너지 규제 특례 추진**
 - AIDC 구축시 전력·용수 공급 Fast-track 지원체계 마련
 - 전력계통 영향평가 유예 또는 타임아웃제(신속처리) 적용
 - AIDC 전용 전력공급 체계와 요금제 마련할 필요(지역, 시간, 사용패턴 고려)
- **AI 특구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연계해, 다양한 분산에너지 활용과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예를 들어 AIDC 제공 목적의 경우 발전사-수요 기업 간 직접계약 허용, 특구 내 자가 발전소의 전력공급 관련 규제 완화 등
 - AI 데이터센터 대체 전력원으로서 SMR 등 신규 에너지원 개발 위한 제도 개선
- **AI 특구에서 AIDC 솔루션(차세대 칩, 냉각솔루션, ESS 등) 기술을 개발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제반 제도적 환경 조성**

1-8 AI 데이터의 확충 및 활용 촉진 방안

현실진단

- **학습-추론용 데이터의 양과 질은 AI 모델의 성능과 경쟁력의 결정적 요소이자, AI 생태계 선순환 루프를 돌리는 핵심적인 엔진 역할**
 - 더 좋은 성능의 AI 모델 및 더 나은 품질의 AI 서비스를 위해 더욱더 많은 개인·기업·공공 데이터 투입이 필요
- **주요국은 이미 사활을 건 데이터 확보 전략을 추진 중이며, AI 데이터 확보 시장은 이미 디지털 생태계를 지배하는 빅테크 골리앗과의 전쟁터**
 - '25년 전 세계 Data Volume 188 Zettabytes 중에서, 북미 28%, 중국 25%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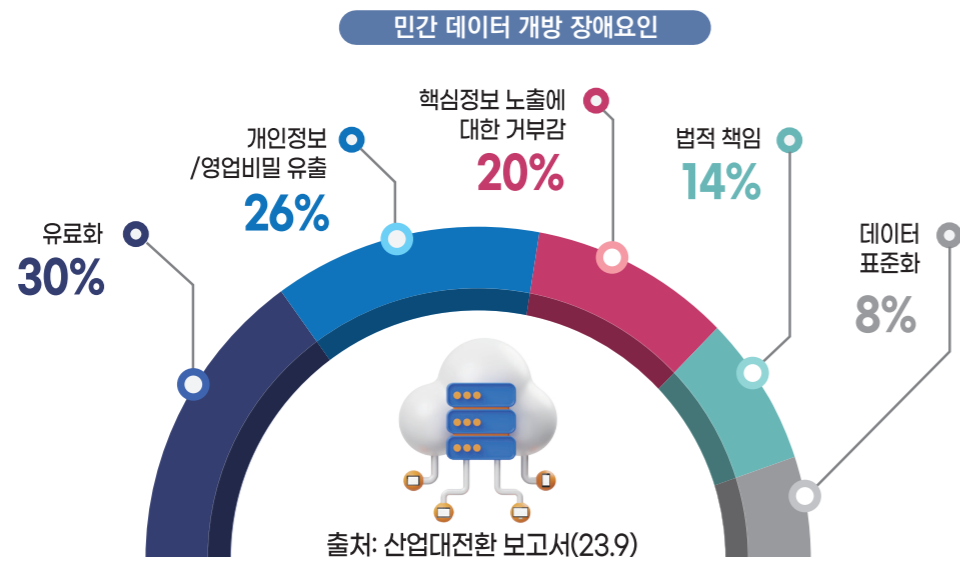


출처: WEF(2025.1), "Blueprint to Action: China's Path to AI-Powered Industry Transformation"

- 이에 따라 주요국의 데이터 정책은 규제보다는 혁신 촉진에 무게중심을 두는 추세
 - * [Common European Data Spaces] EU 역내 데이터 단일시장 형성과 Data Sharing 환경 조성 프로젝트로 데이터 주권보호 전략차원에서 EU 국가 간에만 공유
 - * [AI 액션 서밋('25.2, Paris)] 혁신지향(Pro-innovation) 데이터 거버넌스 강조
 - * [韓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칙 중심(Principle-based) 규율체계 (예: 사전적정성 검토)

- LLM 학습 데이터의 고갈 우려 속에서 빅테크들은 Data 확보에 사활 건 투자 단행
 - * **Open AI** Whisper 개발, 언론사와 라이선스 계약, 유튜브 데이터 수집, 레딧 지분 활용
 - * **구글** Privacy 규정 변경해 학습·챗봇에 활용, 레딧과 라이선스 계약 (6천만 달러)
 - * **메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데이터, 인터넷 서적·에세이 크롤링, 출판사 인수추진 등
 - * **xAI** 트위터 데이터 활용

- **한국은 국민의 디지털 활용 역량이 높아 공공/민간 데이터 축적 기반은 보유했으나 한국어 기반 고품질 학습데이터, 산업별 특화 데이터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한 상태**
 - 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되는 특화 데이터의 경우, 우리산업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인데 영업비밀 유출우려, 데이터 표준화 미비 등 이슈 산적



정책제안

● Common Korea Data Space 구축

- 정부 주도로 K-Data 공용 허브 사업 확대(예: 기존 AI Hub에 도서, 논문 등 고품질 데이터 확충)
- 활용도 높은 공공 분야의 비정형데이터 축적, 개방 확대
- 산업별 AI 특화 데이터 구축-개방 확대(지역특화 제조 AI센터 추진과 연계해 시너지 확보)

● AI 데이터 산업 육성

- 데이터 큐레이션업, 마이데이터(융합-분석-활용) 유통 플랫폼 도입 검토

● 학습·추론용 데이터 접근권 강화

- TDM(Text Data Mining)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허용
- 원본 데이터의 활용 특례 규정의 신속한 추진

● '원칙 중심' 개인정보 규율체계 강화

- 혁신 촉진 기초 유지, AI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R&D 강화
- AI 데이터 규제샌드박스 확대(예: 바이오 연구, 가명 데이터 목적 외 활용 규제 샌드박스 허용)
- AI 분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민간 자율규제 준수 유인 확대

1-9 고급 AI 인재 양성-확보-활용 방안

현실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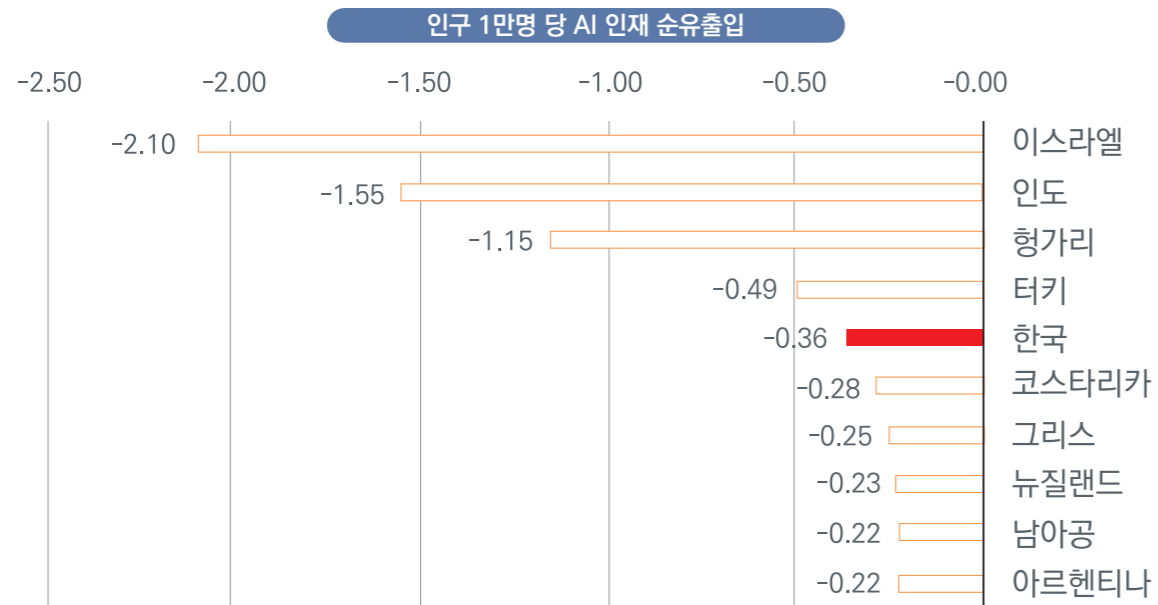
● 최근 AI 인재 양성-확보 정책이 붓물 터지듯 쏟아져 나옴

한국 AI 인재 육성 정책

- AI등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지원('25년 2,010억원) 및 석/박사급 인재 양성
- 인공지능 스타 펠로우십 지원('25년 4개 과제 60억원)
-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구축·운영('25년 100억원) → 프랑스/UAE와도 Lab 확대 추진
- BrainPool 사업 연계한 해외 우수 AI 인재 유치
- 국회, AI 인재 병역특례 제도화 법안 발의('25.3월)
- 기업-대학 공동 AX 대학원 설립 지원

● 과학기술 인재 정책은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한국은 여전히 인재 유출국 지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

- OECD는 한국을 AI 인재 유출국으로 분류(1만 명당 0.3명 순 유출), 스탠퍼드대 HAI의 'AI 인덱스 2025'도 한국이 이스라엘, 인도, 헝가리, 터키에 이어 다섯번째로 AI 인재 유출이 심한 국가로 나타남



* 출처 : AI 인덱스 2025

● 인재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고급 AI 인재들의 Needs의 본질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인재들이 원하는 건 활력있는 AI 시장/연구 커뮤니티가 존재하여 다양한 실험/시도가 가능한 환경과 능력에 걸맞은 성과와 가치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는 것임



● 한국은 AI 관련 노동 정책부문에서 미흡하며, 고급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늘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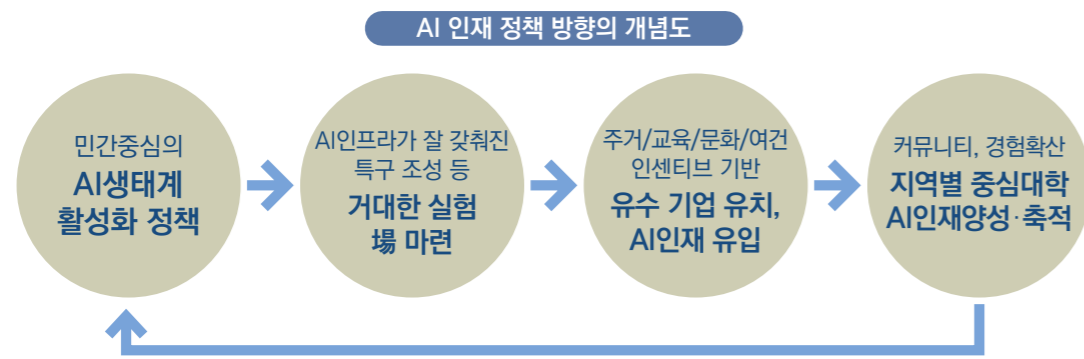
- IMF에서 조사한 165개국 AI준비지수(AIPI)에서 혁신 및 경제통합 분야는 3위, 디지털 인프라는 18위를 기록했으나 인적자본 및 노동시장 정책 부문이 24위에 그치며 다른 지수 대비 부진한 상황.
- IMD에서 발간하는 세계인재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고숙련 인재가 느끼는 기업 환경 만족도'에서 한국은 2023년 기준 47위로 2015년 37위보다 하락
- 배출되는 이공계 박사 인력 대비 박사급 일자리 배수*가 하락하며 양질의 일자리 수도 줄어든 실정

* '91~'95년 : 2.6배, '16~'20년 : 0.54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제안

● **인재 정책 방향의 재정립**

- AI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 AI 특구에 거대한 실험의 장을 조성, AI 고급인재가 유입·정착·성장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환경 설계·실행하고
- 이 경험이 AI 연구 커뮤니티로 확산되며, 전국 AI 중심대학의 인재 양성·축적으로 이어지도록 정책 추진



● **AI 인재 양성·확보 중장기 로드맵 전략 마련**

- 정부의 책임 관할부처 주관으로, AI 인재 정책들의 체계적 Map을 수립해 중장기 플랜으로 추진

AI 인재 정책 방안 제언

인재 Map 구축	AI 인재 현황 조사 잠재적 리크루팅 대상 Global Talent 시스템 구축
해외 인재 유치	AI 우수인재 레드카펫 정책 (특별비자우대) 정주 여건 인프라 조성 시범사업(특화 주거단지 등) 추진
국내 인재 양성	AI핵심 대학의 교수 그룹에 대한 파격적 보상 지원 확대 예) 정부-민간 합동펀드 조성 및 프로젝트 기반 지원

● **단기적으로 AI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확보 어려운 만큼 노동관련 규제 완화**

- AI 분야 선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연구개발'도 반도체 업종 연구개발과 같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연구개발 영역에 추가되도록 고용노동부 지침 개정

1-10 한국형 AI 규제 프레임워크 방안

현실진단

● **AI의 영향은 광범위하고 그 혜택과 위험이 어디에서 발생할지 불확실성이 커서, 기존 규범 질서에 큰 도전**

- AI 기술은 변화가 급격하고, 영향이 광범위하여, 규제 지체 이슈 발생 가능성
- AI는 그 영향의 불확실성이 크므로, 과소/과잉 규제 위험이 항상 존재
- 개인과 사회의 행위가 물리적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디지털 공간으로까지 확장됨에 따라, 기존의 경쟁 관념이나 시장지배력의 개념에 변화 야기

● **AI 시대에 '혁신 촉진 vs. 새로운 위험 통제' 간에 긴장 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모든 국가의 고민 사항**

- AI 시대의 특성에 적합한 규제요소를 고려, 새로운 규제체계를 설계해 실행 필요
- 주요국들은 대체로 엄격한 규제보다는 혁신 친화적인 Light-touch 규제 기조를 견지
- 우리나라는 AI 기본법제정('26.1월 발효)에도, 아직 국가 AI 거버넌스의 원칙과 방향성이 불확실한 상태로, 자칫 강한 규제에 귀결될 우려 존재
- * 고영향 AI 안전관리 기준, 사실조사 등 구체화 시 강한 포지티브 리스트 규제 우려 등

주요국의 AI 규제 현황



● **한편, 현재 국제사회의 AI 거버넌스는 주요국의 이해관계와 가치 체계에 따라 분화되어 있으며, 국제 논의 주도권 경쟁으로 당분간 글로벌 표준 규범에 도달 어려움**

- 이러한 AI 거버넌스의 다극화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어 복잡한 규제 대응 비용과 절차적 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 특히, 의료·금융·교통·국방 등 고위험 분야의 AI 기술과 제품은 안전성, 보안성 등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 체계가 국가별로 다르며 상호인증 체계가 부재한 상황

💡 정책제안

- **AI 육성정책과의 일관성을 고려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 AI 국가전략의 일관된 설계·실행 : “AI 육성 따로, AI 규제 따로”의 접근법은 시장 플레이어들에게 혼란을 주게 됨
 - K-AI 산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축과 경제성장 동력화가 AI 국가전략의 최우선 순위

- **우리나라 AI 규제의 준칙 천명과 이행**
 - (네거티브 규제) AI 기술/서비스 혁신과 실험, 시행착오의 자유도를 높여주는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방식 전면 도입
 - (규제 일출제도) AI는 모델 개발 단계에는 잠재적 위험 정보 불확실하므로, 예방적 사전규제보다는 현실적 위험 발생 시 금지하는 규정 마련
 - (민간 자율규제 촉진) AI 개발-제공-사용에 관한 표준 행동강령 마련

- **AI 기본법 후속 조치의 조속한 마련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
 - 개별 규제와 정합성 확보로 중복규제 위험 해소
 - 고영향 AI의 기준과 범위, 책무 등 시행령 제정시 네거티브 규제 원칙 견지
 - 안전성/투명성 가이드라인, AI 영향 평가기준 마련시 민간 자율규제 적극 도입·활용

- **범부처 차원의 글로벌 AI 거버넌스 대응 체계 강화 필요**
 - 대통령 직속 AI 거버넌스 조직을 중심으로 AI 주무부처의 기술 전문성, 외교·산업 주무부처의 외교통상 역량 등을 종합한 글로벌 AI 규제 선도 전략 수립/실행


- **주요국과의 양자·다자 협상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 특성과 산업 현실을 반영한 상호인증체계 구축 논의 등 국내 AI 산업 진흥 관점의 협상 전략 마련 필요**
 - 글로벌 AI 표준화 기구, 국제 AI 안전연구소 등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의 기술 강점과 환경을 반영한 AI 안전/보안 상호인증 체계 구축


21대 대선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2 성장을 촉진할 동력 - 규제혁신

- 1 통합 솔루션 '메가 샌드박스' 추진
- 2 지역혁신 위한 광역지자체 재정·권한 확대
- 3 네거티브 전환을 통한 규제시스템 혁신
- 4 국민배심원제 통한 규제갈등 해소
- 5 입법영향평가 도입
- 6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체계 마련

 대한상공회의소

 KEF 한국경영자총협회

 FKI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현장의 목소리

움츠러든 성장동력, 묶여있는 규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묶인 규제는 과감히 끊고, 산업이 숨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화에 열린 자세가 경제를 다시 뛰게 합니다.”

40대 주부

“포지티브 형식의 규제를 도입해 ‘되는 것’ 외에는 모두 ‘안 되는 것’으로 제한하는
상황에서 신산업 발전이 어렵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산업을 육성하되,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30대 직장인

“현행 규제 체계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비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40대 직장인

규제를 풀 수 있는 묘책이 있을까요?

“신산업 창업에 특화된 원스톱 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담 대응팀을 상시 운영해주세요.”

60대 CEO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업 규모에 따른 연구개발 세액공제 축소, 사업 다각화 제한은
중견·대기업의 확장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30대 직장인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 현장 소통 플랫폼’을 활성화해주세요.”

60대 직장인

2-1 통합 솔루션 '메가 샌드박스' 추진

현실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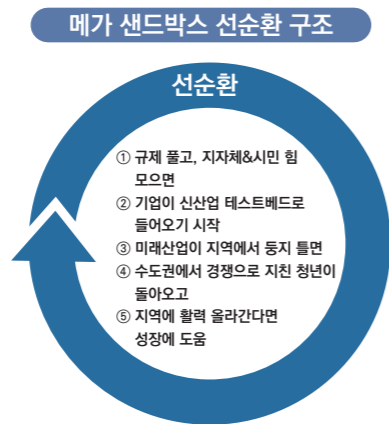
- '메가 샌드박스'는 복합 솔루션으로서 지역, 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
 - 규제 해소, 신산업 육성, 지역 격차, 저성장, 교육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석 多조' 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메가 샌드박스'가 필요
 - 메가 샌드박스의 컨셉은 광역지자체 단위로 미래산업·기술을 지정하고, 인센티브 제공, 규제 완화, 정주여건 조성, 인프라 구축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

- 해외 경쟁국의 경우 파격적인 기업 유인책을 제공하며 글로벌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음

미국 州 정부의 사업여건 제공		싱가포르의 사업여건 제공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정부 중심의 지역 투자 유치 - 주정부 재량 > 연방정부 재량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에서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 - 경제자유지수 1위, 비즈니스 환경 1위, AI 준비 지수 1위
Key Implication	<p>파격적 인센티브</p> <p>① 강력한 주 정부 권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 혜택, 규제 면제, 보조금 지급 여부 결정 - 주 정부 별도 입법 통해 기업 투자 유치 노력 * 텍사스주 자체 반도체법, 뉴욕주 등 <p>② 기업(수요자) 중심의 유치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비 경쟁에 가까운 해외 투자 유치전" (파이낸셜타임스) * IRA 시행 후 조지아주, 현대차공장에 18억불 인센티브 제공 	Key Implication	<p>글로벌 기업·인재 친화적 환경 조성</p> <p>① 파격적 혜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증여세 폐지, 양도세·배당세 無, 법인세·소득세 최저 - 높은 경제적 자유 → 기업 몰리고 → 인재 유입 선순환 * 20년간 인구 40% 증가: 403만('00) → 569만('20) <p>② 영어 공용어 사용 및 효과적인 교육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인재경쟁력 순위 2위 (2023 프랑스인시어드 보고서)

- 지역에 해외 경쟁국과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수준의 사업여건 조성 필요

- 선제적으로 규제특례·인센티브와 관련 인프라를 제공하면 관련 분야 첨단기업이 지역에 늘어나고, 연관 스타트업 기업도 증가해 생태계가 구축될 것



- 이를 위해서는 지역, 규제, 재정, 인력 등 다양한 정책이 통합적으로 필요하며, 따라서 여러 부처와의 광범위한 협업 및 정책 조율이 요구됨

메가 샌드박스 추진 관련 영역 및 관련 부처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가 샌드박스 관련 세제 혜택, 투자 보조금 지급 - 메가 샌드박스 기금의 편성·집행·성과 - 지역 소재 국유재산 관리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SOC의 관리 및 계획·개발 - 신도시 건설 및 주택 보급, 도시 계획 개발/관리 - 대중교통망 확충, 모빌리티 관련 산업/기술 육성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대학원의 정원 및 커리큘럼 관리 - 외국인학교·국제학교 설립 및 감독 	과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 R&D 지원, 첨단산업 인력 양성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인재 및 재외동포 관리 - 비자/영주권/국적 및 귀화 관련 정책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분권, 지방자치단체 및 낙후지역 지원 - 지방자치단체간 분쟁 조정, 행정구역 조정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조건(주52시간제, 최저임금 등) 정책 - 고용 정책(비정규직 등) 및 근로자 복지후생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투자·규제혁신 지원, 해외 투자 유치 - 기존 제조업의 고도화, 제조+서비스 신산업 창출 - 전력·에너지 공급체계 관리, 신산업 생태계 조성
문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문화시설 거점 조성, 지역 콘텐츠 창출 - AI 저작권 관련 법제도 개선, 미래 콘텐츠 육성 		

- 메가 샌드박스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

- 기존에 없었던 파격적 제도 인센티브 제공, 과감한 규제 완화 등이 가능하게 하고, 다부처의 협업과 정책 조율을 끌어내려면 그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
- 또한 메가 샌드박스 추진 과정에서 기존 법률 및 시행규칙을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아 안정적인 법 제·개정의 뒷받침이 요구됨

정책제안

- 메가 샌드박스 정책을 담당하는 별도의 컨트롤타워 구축

- 실질적으로 여러 부처를 통할하고 정책 추진력을 갖추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위원회* 또는 부처**를 신설
- * 자문위원회(현재 지방시대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인 부처 통할권을 갖는 특별행정위원회 성격이어야 함
- **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다른 부처를 통할할 수 있는 위상의 부처여야 함
- 위원회 또는 부처의 장은 기업·산업에 대한 이해가 깊은 민간 전문가로 하고, 미국의 정부효율부처럼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

2-2 지역혁신 위한 광역지자체 재정·권한 확대

현실진단

●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으로는 소멸해가는 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응 어려움

- 30여년 지역정책에도 수도권 집중도 OECD 1위
- * 인구 기준 수도권 집중도 韓 50.5%, 日 29.5%, 佛 18.2%, 英 13.1% (국회 입법조사처)
- 각 지역의 여건·역량 고려한 맞춤형 전략 필요하나 정책 수단은 중앙에 집중

●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확대 속 낮은 재정 자립도로 지역 자체 자원 확보 어려움

- 지방 재정환경 악화: 지역 인구 감소, 수도권-비수도권 GRDP 격차 확대
- * 지난 20년간 생산가능인구 전국 평균 7.2% 증가했는데,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 이동하며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심화됨 (통계청)

전국	수도권	충청권	제주권	강원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7.2%	15.9%	17.4%	29.0%	-2.3%	-8.2%	-5.8%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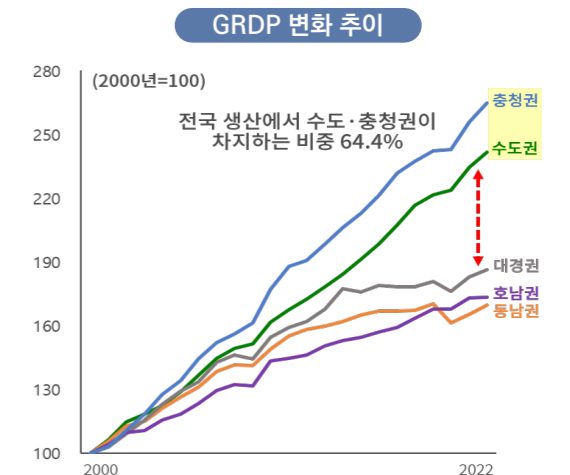
- 세입의 중앙 의존: '23년 조세 수입에서 지방세 비중 24.6%
- * '20년 조세 수입에서 지방세 비중 韓 26.3% vs 日 40.5% (국회 입법조사처)

● 광역지자체가 기업 투자 유치 관련해 기초지자체를 관할하지 못하고 있음

- 실제 기업 투자가 일어나는 기초지자체 단위에 대해 광역지자체가 통할할 권한 弱
- * 반도체 투자 관련해 송전망 이슈가 불거져도 경기도가 하남시-이천시간 갈등 조율 어려움

광역시도별 재정자립도
(단위 %, 2024년 기준, 통계청)

전국	48.6	대전	45.3	충남	37.6
서울	79.8	울산	51.7	전북	27.3
부산	51.4	세종	63.8	전남	26.9
대구	47.6	경기	62.7	경북	29.8
인천	54.9	강원	28.9	경남	39.2
광주	42.7	충북	34.3	제주	38.4



● 국회 내에 '메가 샌드박스 특위' 설치하고 특별법 제정

- 특별법 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국회 내에 별도 특위를 구성
- * 경제단체, 전문가 등도 특위에 워킹그룹으로 참여
- 컨트롤타워 구축, 파격적 제도 인센티브 제공(규제·재정·인력 등), 정주여건 조성, 인프라 제공, 지방분권 확대 등 다양한 내용 담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
- * 특히 해외 선도국가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이들보다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제정돼야 함
-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메가 샌드박스 추진과 관련된 기존 법률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담당

● 특별법에 담길 주요 내용

- (인센티브) ①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양도세/취득세 면제
- ② 지역 투자/이전 기업에 대한 상속·증여세 감면
- ③ 지역 투자 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 지급
- (인력·교육) ① 광역시·도가 지역 대학(원)의 학과 정원, 국제학교 설립 결정
- ② 첨단산업 해외 인재의 영주권 및 국적 취득 신속절차 도입
- ③ 첨단산업 분야 해외 인재의 소득세 감면
- (인프라) ① 지역 투자 기업에 공공용지 무상 제공
- ② 토지 사용료, 건물 임대료 감면
- ③ 전력/수도 우선공급 및 요금 감면
- (규제개선) ① 신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적용
- ② 기존 산업의 디지털·AI 전환시에도 신산업 기준 적용

메가 샌드박스 인센티브 예시

①	메가 샌드박스 지정된 광역시·도로 이전하거나 신규로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에 대한 지분 비율만큼 지배주주의 상속세를 감면하고,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상속공제 특례를 부여한다
②	메가 샌드박스 지정된 광역시·도로 이전하거나 신규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에 대해 최저 25%, 최대 50%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한다
③	메가 샌드박스 지정된 광역시·도로 이전/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면제/감면한다
④	메가 샌드박스 지정 산업의 기업이 고용하는 첨단산업 인재에 대해 급여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⑤	메가 샌드박스 지정 산업의 기업이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기업·대학·기관 등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연구소의 건립 및 운영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⑥	메가 샌드박스 지정 산업 기업의 R&D 투자 금액에 대해 최저 25%, 최대 50%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한다
⑦	메가 샌드박스 지정 산업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 시·도지사 직속으로 원스톱 전담 지원기관을 설치한다

💡 정책제안

- 국세 항목 중 상당 부문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의 재정 여력을 확대
 - 기업 투자 보조금 제공, 기업 필요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
 - * 미국 州정부의 경우 세제 혜택, 규제 면제, 보조금 지급 등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 바탕으로, 개별 州 여건 고려해 기업과 협상 및 투자 유치 노력 전개
- 광역 시·도에 메가 샌드박스 관련 기초지자체 관할권 부여
 - 기초지자체 간 인프라 구축 분쟁 등 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 영향력 보장 필요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 광역 연합·통합과도 연계
 - 광역지자체간 벽 허물고 인구·예산·자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2-3 네거티브 전환을 통한 규제시스템 혁신

🔍 현실진단

- 한국 규제방식이 대부분 법령에 열거된 사항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 AI 시대 새로운 분야를 수용하는데 선진국보다 뒤쳐지는 요인으로 작용
 - 모빌리티(타다), 법률서비스(로톡), 의료서비스(강남언니) 분야 혁신기업들이 기존 포지티브 규제와 이익집단 반발 등으로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투자 전환
 - 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활용해 서비스를 운영하다 택시업계 반발로 사업 무산
 - 로톡**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변협 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
 - 강남언니** 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는 대한의사협회와의 갈등으로 일본 사업에 집중
- 기존 법·제도가 기술혁신과 소비자 기호의 변화를 따르지 못함
 - 사업상의 법적 불확실성 가중, 혁신기술 개발 저해
 -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불법'으로 간주
 - * 원격의료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이나 의료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의료서비스 발전 저해
 - 포지티브 규제는 직역단체-플랫폼 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가 혁신 역량을 저해
 - 한시 적용 특례인 '규제 샌드박스'
 - 혁신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일시적 도움을 주지만 혜택이 끝나면 다시 법적 제약에 갇힘

💡 정책제안

- 행정규제기본법상 임의규정인 네거티브 원칙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
 - *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 규제샌드박스로 성과가 입증된 신기술은 기존 법률 적용 대신 신기술에 상응하는 신법을 지체없이 제정

2-4 규제혁신을 위한 '국민배심원제' 도입

현실진단

- **규제의 4가지 유형은 '소극행정', '입법미비', '규제공백', '이해갈등'**
 - 소극행정, 입법미비, 규제공백의 경우 제한된 조건 내에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대응 가능
 - 덩어리가 큰 갈등 규제의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기존 제도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존재
- **신사업 분야 생길 때마다, 시장참여자간 갈등 지속 발생**
 - 이해갈등으로 규제개선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경우 시장진출이 어려운 실정
 - * 원격진료, 공유승차, 공유숙박 등 새로운 사업모델의 시장진출 제한
 - 정부가 한걸음모델, 규제심판부 등 신사업 분야의 갈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나 실제 문제해결에는 한계
 -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심한 경우 정부주도로 단호한 규제개선이 어려움
 - *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도 갈등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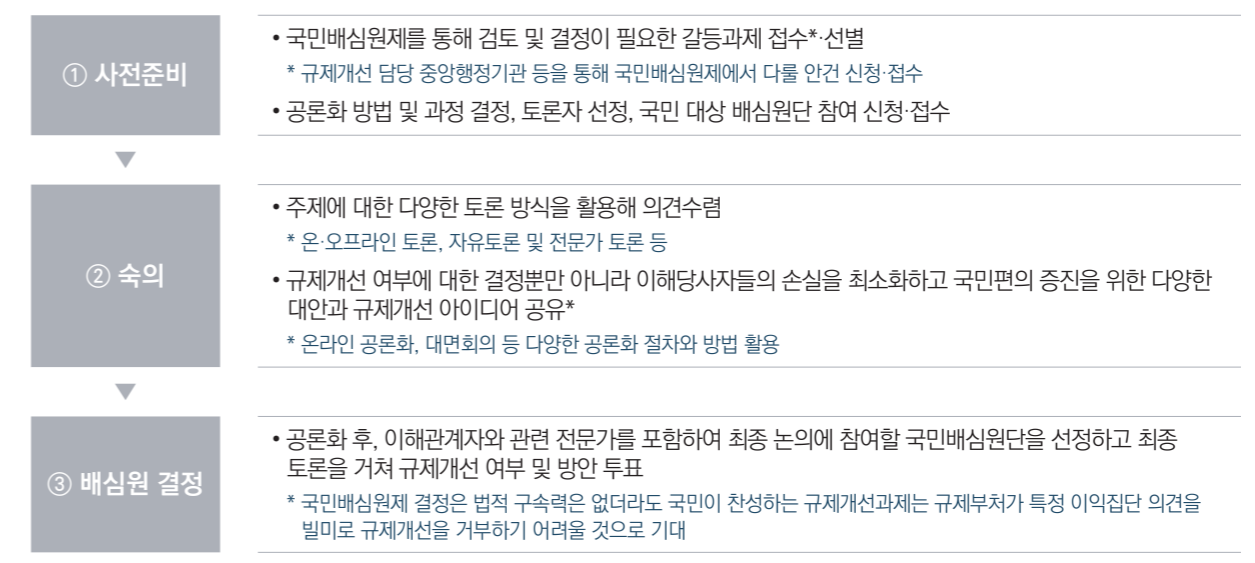
규제혁신을 위해 시도된 갈등해결 제도

구분	내용
한걸음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기재부에서 도입한 사회적 타협제도 • 주요 신사업 분야 이해관계자간 갈등조정 매커니즘
규제심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제도로 갈등규제보다는 일반적인 과제 중심 •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 또는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균형적·중립적 시각에서 개선 필요성을 판단

정책제안

- **갈등규제 해결을 위한 '국민배심원제' 도입(* 국민통합위원회 既 제안)**
 -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배심원단'의 결정을 수용하는 '국민배심원제*' 도입 및 운영
 - * 대표적 숙의제도 중 하나로, 대표성을 갖는 집단이 쟁점에 대해 숙의해 판결 또는 권고안 도출
 - 심각한 갈등 대립 전에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실효성 제고 가능
 - 중립적 관점의 시민배심원제로 합리적 규제개선 문화 정착 기대
- **국민배심원제 전담조직 구성**
 - 갈등사례를 검토·선별하고, 국민배심원제를 운영할 전담조직 신설
 - 소비자 편익에 큰 영향을 주는 규제*를 선별하므로, 위원회 형태 조직이 합리적
 - * 모든 규제개선 요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갈등이 대립하는 규제 중에서 소비자의 편익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

※ 참고: 국민배심원제 운영절차(안)



2-5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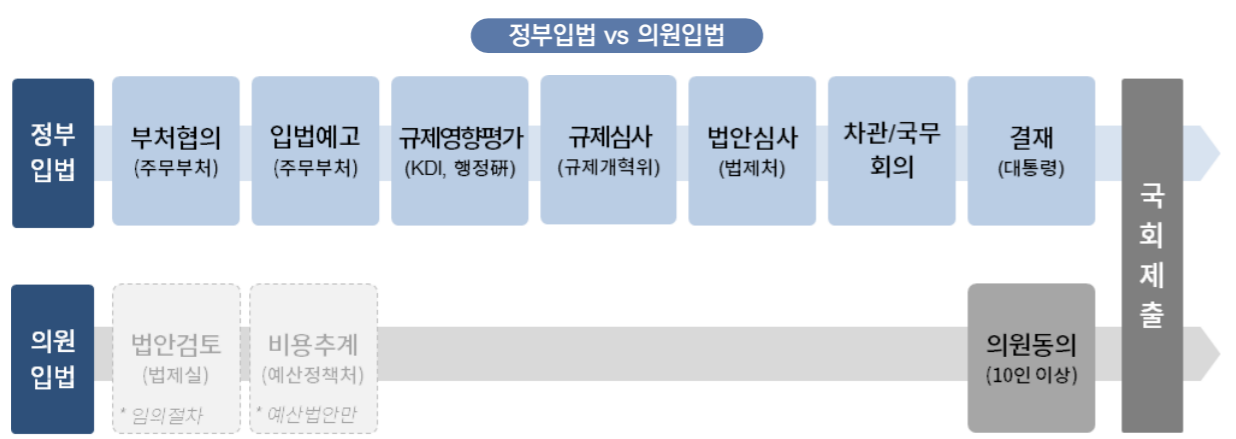
현실진단

- **국회 발의법안 급증세 지속 → 법안심사 어렵고, 법안간 충돌·중복도 우려**
 - 21대 국회 발의법안은 25,858건으로 역대 最多, 지난 16대 국회보다 10배 이상 증가.
 - 특히 의원발의법안은 지속적으로 늘어 전체 발의법안의 97%에 육박

구분		16대 ('00~'04)	17대 ('04~'08)	18대 ('08~'12)	19대 ('12~'16)	20대 ('16~'20)	21대 ('21~'24)
총계		2,507	7,489	13,913	17,822	24,141	25,858
의원 발의	건수	1,912	6,387	12,220	16,729	23,047	25,027
	(비중)	(76.3%)	(85.3%)	(87.8%)	(93.9%)	(95.5%)	(96.8%)
정부 발의	건수	595	1,102	1,693	1,093	1,094	831
	(비중)	(23.7%)	(14.7%)	(12.2%)	(6.1%)	(4.5%)	(3.2%)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 달리 ①규제영향평가 절차를 우회하고, ②법안발의 기간도 짧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
- * 정부입법은 규제영향분석을 포함한 필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5~7개월이 소요되나, 의원입법은 10인 이상 동의만 있으면 사전 규제영향분석 없이 발의 가능



- 국회 고유의 입법권을 보장하면서도 법안의 심도있는 검토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비용(법안 충돌, 중복 등)을 줄일 방안 필요

-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국회내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으나 제대로 된 논의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18대 국회부터 관련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어왔으나 임기만료 폐기 반복
 - * 관련법안 발의 현황: 18대 2건 → 19대 1건 → 20대 2건 → 21대 6건
- **의원입법 지원도구로서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필요**
 - 입법영향분석 통해 불요불급한 규제신설 억제 등 긍정적 효과 기대
 -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만 3건
 - * 22대 국회 계류법안(국회법 등): 박성준 의원안, 부승찬 의원안, 윤재욱 의원안

정책제안

- **의원입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 발의 또는 심사과정에서 입법영향분석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자료로 활용해 규제법안의 질적 제고와 입법심사 부담 경감
- **제도 운영 및 실효성 제고 위한 여건 마련**
 - 지원기관의 역량 확충 위한 인력·예산 등 확보 방안 마련
 - 입법영향분석 내용의 전문성, 객관성 확보 위한 체계적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등

2-6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체계 마련

현실진단

- 기업 규제개선 건의 채널이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비효율 초래
 - 건의채널* 선택에 혼란이 있고, 과제의 추적·처리 등에도 일관성 부족
 - * 규제개혁신문고(국조실), 투자애로접수센터(산업부), 경제규제TF(기재부) 등
-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경제단체 참여 미흡 → 체감가능한 규제개선에 한계
 - 민관이 함께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했던 과거에 비해 민관 협업구조 약화. 실제 現 규제혁신추진단은 전직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중(기업·경제단체 역할 미흡)
 - 민간이 실제 현장의 애로를 발굴하고, 정부가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하지만 민간의 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민관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움

정책제안


- 규제관련 소통·건의채널 일원화
 -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중복·누락없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채널 마련
- 민관협력 기반의 범부처 규제개혁 상설조직 마련
 -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경제단체,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고, 과제발굴부터 해결까지 전 단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주도할 수 있는 역할 부여
 - * 예: (민간) 과제발굴 → 우선순위 결정, 개선여부 심의, 이행점검, 성과평가 등 (정부) 부처간 협력·이견조정, 갈등해소, 행정지원 등 규제개선 조정 및 총괄
 - 부처간·이해관계자간 이견 조정과 협업 등 총괄할 수 있는 조직 신설(국무총리실내 또는 대통령직속)
 - 부처간 협업을 효율화하여 성과 극대화
 - * 공동대표 체제로 구성: 정부1인 + 민간1인
 - * 과거 유사사례: 참여 정부의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


21대 대선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3 성장을 촉진할 동력 - 에너지정책


- 1 전력시장 개편
- 2 다양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 3 LNG 산업의 글로벌화
- 4 차세대 원자로 건설 지원
- 5 종합 에너지 거버넌스 확립

 대한상공회의소

 KEF 한국경영자총협회

 FKI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현장의 목소리

AI·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에너지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AI 전력수요를 감당하려면 오래된 에너지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가격신호가 작동하고 경쟁원리를 도입해 전력수급을 효율화해야 합니다.”

40대 전문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계속 올려 제조기업들의 부담이 큼니다. 앞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하려면 값비싼 청정에너지 발전 비중이 더 커진다는데 전기요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건가요?”

50대 CEO

“미국은 석탄산업을 활성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각국은 안정적 에너지조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유연한 발전원인 LNG를 브릿지 전원으로 계속 활용하는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60대 CEO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기를 실어나르는 송전망이 부족해 전기가 버려진다고 하는데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송전망도 늘리고 전기를 저장해서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제도와 기술이 시급합니다.”

30대 직장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발전원의 우선순위가 바뀌며 소모적 갈등이 심합니다.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특정전원에 의존하는 것은 도리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다양한 에너지를 균형감 있게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20대 학생

“재생에너지는 좋지만 보급목표에 매몰되면 값싼 중국산 제품에 국내시장이 잠식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전환과 국내 산업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50대 직장인

3-1 전력시장 개편

현실진단

● AI·탄소중립시대, 전력수요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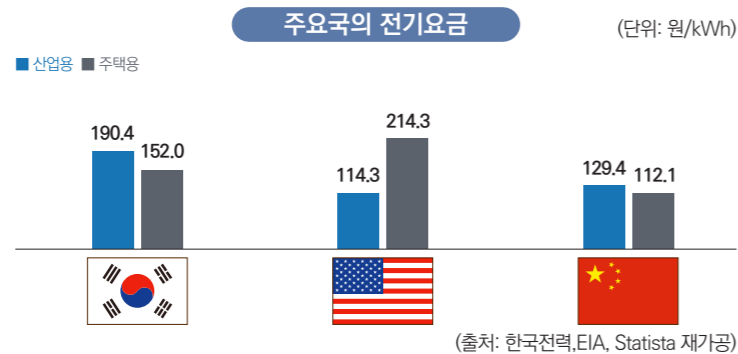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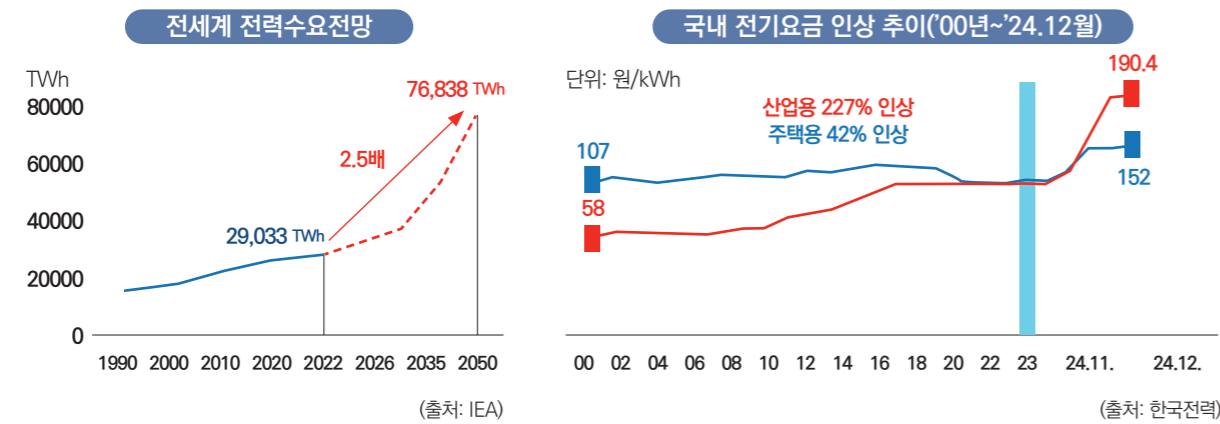
- AI확산과 탄소중립으로 인한 전기화로 전력수요 폭발적 증가 예상(IEA전망)
- * AI 데이터센터 전력소비 2배 증가 : ('22년) 460TWh → ('26년) 1000TWh 이상
- * 2050년 전력소비 2.5배 증가 : ('22년) 29,033TWh → ('50년) 76,838TWh

● 전력수요 증가하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격히 인상돼 산업경쟁력 훼손

- '00년 이후 '24년 12월까지 주택용 요금이 42% 오르는 동안 산업용 요금은 227% 인상
- 주요국은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높고 美·中 보다도 높은 수준

● 단일 시장·가격 체계로는 효율적 전력자원 배분, 에너지수급 변동성 대응에 한계

- 하루전 현황만으로 재생에너지 출력변동 대응에 한계. 실시간 적시 대응체계 필요
- 전국 단일 가격(전기요금) 적용으로 전력자원 생산과 소비의 지역적 미스매치 발생
- * 전력 생산은 비수도권(최대 자급률 216%(경북, '23년), 전력 소비는 수도권(자급률 65%)에 집중



● '전력망 특별법' 통과됐지만, 다양한 전력원을 수용할 전력망 부족

- 지난 20년간 전력수요 및 발전설비 2배 증가 대비 송전설비는 1.3배 불과
- 당장 전력망 부족문제로 신규허가 지연, 기존 발전설비도 가동중지되는 상황
- * 동해안 석탄발전소 3곳 가동 전면중단. 연간 3,000억원 손실
- *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958건 (23~24년. 발전5사 기준)
- * 기저발전원 원전까지 출력감발(23년 84,314MWh→24년 170,838MWh)

● 대규모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차질 우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전력(16GW)은 수도권 최대전력수요의 40% 규모
- 전력공급 위한 동해안 및 서해안 HVDC 건설 중이나 주민수용성 문제로 지연

● 전력망 부족으로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심화

- 전력생산량의 60%가 충남·경북·전남에 집중된 반면, 소비량은 서울경기 비중 높음
- * 지역별 전력자급률: 서울 10%, 경기 62% ↔ 충남 214%, 경북 216%, 전남 198%, 강원 213%

전력수요·발전설비 vs. 송전설비 현황

구분	전력수요 (GWh)	발전설비 (GW)	송전설비 (c-km)
2003년	293,599	61	8,402
2012년	466,593	86	9,605
2020년	509,270	134	10,837
2023년	545,966	150	11,018
증가폭('02~'23년)	1.9배	2.5배	1.3배

* 출처: 한국전력

정책제안

● 전력시스템 단계적 개편

- 실시간·예비력 시장 확대 로드맵 구체화
- 20여년간 지체된 전력시장 구조개편의 공감대 형성 및 재추진
- 기업의 전력구매 선택권 확대 및 잉여전력판매 등 양방향 거래 활성화*전기요금제 다양화, 도매전력구매 절차 간소화, 송전제약 PPA 활성화

● 전기요금 결정체계의 합리화

- 원가와 가격신호에 충실한 전기요금 결정원칙 정립
- 전기요금 인상의 모든 사용자 공동분담과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요금조정
- 독립적 전기요금 결정기구 통해 요금결정에 전문성·투명성 제고
- 전압별 요금제 시행, 24시간 생산 업종에 대한 별도요금제 시행, 고효율 설비 도입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개선(토요일 경부하제, 6월 및 11월 봄가을철 요금 적용)

● 전력망 건설 촉진

- 송전망 건설 거버넌스 개편, 민간자본 유치로 전력인프라 확충
-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 하위법령에 반영
 - * 개발이익 주민공유제 통해 실질적 소득·복지 제공,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중화 비용 지원 등
- 동북아 Super Grid, APEC국가간 Grid 구축 등 추진

● 분산에너지 활성화

- 차등요금제, AI 기반 전력망 등 분산전원시스템 기반 조성
- 분산특구 내 배전망요금 및 부가정산금 감면, 기후환경비용 면제 및 요금제 다양화 등 인센티브 마련
- AI데이터센터 전력원으로 발전원가 낮은 대형 발전소 등의 직접 전력 공급 허용 또는 대규모 LNG발전소도 분산에너지에 포함

● 첨단전력기술 개발 및 초고압 직류송전시스템(HVDC) 기술 국산화 지원

- AI 전력망, VPP(가상발전소)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미터, IoT 센서 기술개발·보급 지원
- HVDC 기술 국산화를 위한 R&D 및 설비투자 특별 지원책 마련
- GW급 HVDC 기술 국산화 실증사업을 국가과제로 지정해 정부 자금지원 및 투자자 지급보증
 - * 착수전 선금 지급(최소 10%) 및 공사 진도율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가능하도록 지급조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HVDC기술을 국가전략 기술로 추가해 세제혜택 명시화

3-2 다양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현실진단

● 에너지의 수입의존도 높은 우리나라는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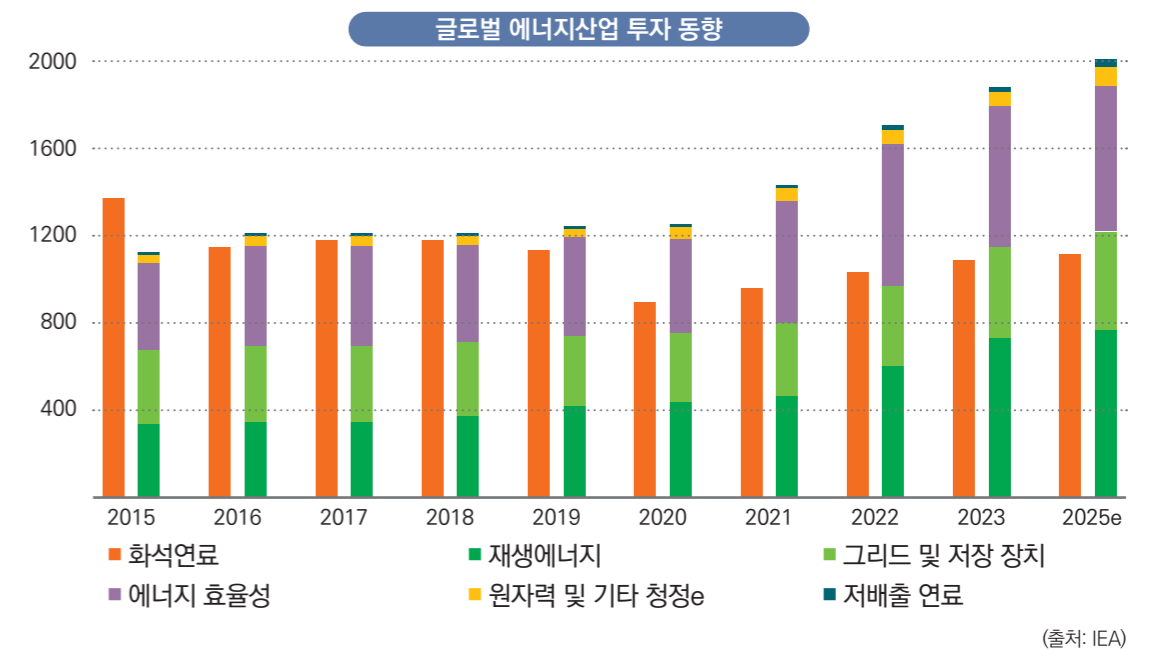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 8위국. 수입의존도 94%
- 탈탄소, 안정적 전력공급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늘려야 하나, 재생e·수소연료전지 신규설치는 부진한 상황
 - * 재생e 신규설치량: ('20년)5.3GW→('21년)4.3GW→('22년)3.7GW→('23년)4.0GW
 - * 연료전지 신규설치량: ('20년)0.16GW→('21년)0.18GW→('22년)0.12GW→('23년)0.17GW

● 다양한 에너지원 확보 위한 글로벌 투자규모는 24년 3조\$ 돌파

- 글로벌 청정에너지 투자 급증. 청정에너지 투자는 화석연료(1조\$)의 2배 수준
- * 글로벌 청정에너지 투자규모 : '15년 1.1조\$→ '20년 1.2조\$ →'24년 2조\$ (IEA)

● 정부규제와 중국산 저가공세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경쟁력 저하

- 태양광·풍력설비 부품업체수 급감으로 국내 부품 조달이 어려운 상황
- 배터리산업 소재부품의 중국의존도 심화로 공급망리스크 높음



정책제안

● 다양한 에너지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마련

- 무탄소에너지(재생e·수소·원전 등) 투자기업의 세액공제를 주요국 수준으로 상향
 - * 美 IRA적용시 세액공제율 30% vs. 韓 1% (태양광발전설비 투자 대기업 기준)
- 해외에서 조달한 재생에너지(vPPA 확보실적)도 국내실적으로 인정
 - * vPPA(Virtual PPA) : 발전소와 기업이 실제로 전력을 주고 받지 않고 기업이 발전소에 재생에너지발전요금을 지원한 댓가로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받는 방식
 - * (EU) 회원국간 가상의 재생에너지 거래 허용. (북미) 미국-캐나다간 재생e구매실적을 자국실적으로 인정
- 안정적 재생에너지공급을 위해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보급지원
-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배출관리 요구강화에 대응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 인증 및 거래제도 마련
- 대형 원전 대비 안전성 높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활용 위한 특별법 제정
 - * 비경수형 SMR 규제지침 수립, 네거티브식 규제완화 등

● 수소에너지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를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에 추가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의 수입부과금 요율 인하 또는 환급
 - * 수입부과금 요율 24.2원/kg vs. 개별소비세율 8.4원/kg (부과금이 정석조세보다 3배 높음)
-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 및 운영부담 경감
 - * 충전소 구축 지원금 상한액 상향, 이동형 수소충전소 구축시 보조금 지원, 수소충전소 연료비 지원액 상향

● 실효성 있는 국내 해상풍력 활성화 정책 설계

- 해외 선진업체 라이선스 도입해 생산시 국산제품으로 인정하는 방식 도입
 - * 국내 해상풍력 산업현실상 부품 국산화와 사업 경제성 향상의 양립 불가. 해외 선진업체 라이선스 도입 등 순차 대응 필요
 - * 해양탐사, 풍력터빈, 해저케이블 등 분야에 맞게 국내산업 보호와 해외협력분야를 나눠 정책 추진

● 국내 에너지산업 공급망 제조기업 육성

- 중국산 대비 낮은 가격경쟁력 극복을 위한 단가저감형 R&D 지속지원
- 기술추격형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배터리산업 육성을 위한 수요시장 창출, 신사업 활성화 사용후 배터리재활용, 배터리 대여 사업 등

3-3 LNG 산업의 글로벌화

현실진단

● LNG 시장은 20여년만에 Buyer's Market시대 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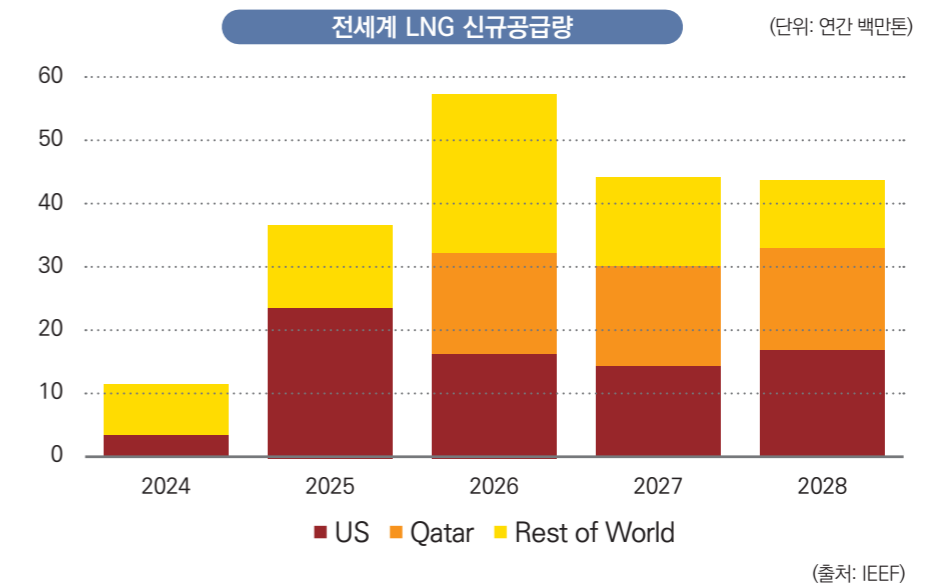
- 공급자 우위였던 LNG시장이 25년부터 신규공급 확대로 구매자 우위시장으로 전환
- 2028년 말, 전세계 공급량은 666.5 MTPA(연간 백만톤) 전망, 이는 장기수요예측량(482MTPA)을 넘는 수치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마켓 형성
 - * LNG 공급은 '23~28년까지 40% 증가 전망 → 역대 최단기간 증가(IEEF)

● LNG산업은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발전원

- LNG는 탄소중립시대로 가는 과도기의 필수 에너지원(재생e 변동성, 원전 경직성 보완)
- LNG, 중요발전원으로 중장기간 수요 지속될 전망
 - * 반도체 클러스터, AI데이터센터는 LNG발전이 필수
- 산업적으로도 LNG산업은 가스전 개발부터 판매까지 가치사슬에서 수십조원 가치창출

● 우리나라는 세계3위 LNG수입국임에도 경쟁력 낙후

- LNG선박, 대형플랜트 EPC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직적 구조(단일공기업 중심 도입, 재판매 금지 등)로 발전 미흡
-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에너지믹스 유사한 일본 정부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공급 업스트림 진출 및 트레이딩 역량 고도화에 성공



💡 정책제안

-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LNG수입국과 공동구매 협력체계 구축**
 - 공동구매 통한 바게닝 파워 제고로 가격인하 및 계약조건 개선
 - 미국·중동 등 수입선 다변화, 공급망 리스크 분산
- **LNG 트레이드 활성화**
 - 민간 LNG 직수입 확대 및 재판매 허용 통해 경쟁 촉진 및 LNG도입비용 효율화
 - 정부 주도 장기계약 중심에서 단기·현물 거래도 확대하여 수급변화 대응력 제고
 - 민간부문 LNG 공동구매 pilot project 先추진
 - * 중소형 LNG 구매업체-공급자간 JointSPA 체결방식
- **한일 에너지협력 강화**
 - LNG 공급 업스트림(ex.탐사, 액화시설 건설) 교류 확대
 - 탄소감축 위해 CCUS 기술 공동연구도 지속
 - * 과거 공동연구 추진('16~'19년)

3-4 차세대 원자로 건설 지원

🔍 현실진단

- **고준위특별법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관련 조항 부재**
 - * 원전에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연료로 사용된 후 원자로에서 인출된 핵연료
-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의 포화시점이 5년 후 도래하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우라늄 수급 문제의 대안 마련 필요**
 - 현재 원전 내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약 1.9만톤*으로 한빛 원자력발전소를 시작으로 저장공간이 포화되는 시점이 차례로 도래
 - * 사용후핵연료 연평균 3.1% 증가('19~'23년 기준), 누적 1.9만 톤('23년 기준)
 - 미국, 영국, 한국 등 다수의 국가들이 '50년까지 전 세계 원자력 발전용량을 세 배로 늘릴 것을 약속한 가운데, 글로벌 우라늄 수요가 '40년까지 두 배 증가 전망
 - * 6만 5,650 톤('23년) → 13만 톤('40년), 세계원자력협회(WNA)
- **고온 운전이 가능한 차세대(4세대) 원자로는 전력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통해 최대 350년치 전력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
 - * 차세대 원자로의 기술 동향과 정책 과제(김용희 KAIST 교수, '25.2월)

💡 정책제안

- **차세대 원자로 실증부지 확보 및 실증로 건설 지원**
 - 국내 실증부지를 조기에 확보해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도록 독려
 - 민간이 해외 정부 및 기업과 협력해 국외 실증로를 건설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대형 원전 대비 안전성 높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활용 위한 특별법 제정**

3-5 종합 에너지 거버넌스 확립

현실진단

- 국내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원별 개별 법률에 따라 제도, 요금, 인·허가 체계가 분리되어 통합적이고 연계된 에너지 정책 수립에 한계
 - 전문성·독립성 부족, 탄소중립 연계 미흡, 복합위기 대응 부재 및 통합적 에너지 전략 부재 등
 - [전문성·독립성 부족] 현행 구조는 정치적 영향에 취약하며,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조정에 한계
 - [탄소중립 연계 미흡] 에너지원별 개별 정책으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어렵고, 가스나 열 부문의 탄소 감축 기여 가능성을 활용하지 못함
 - [복합위기 대응 부재] 공급망 불안, 에너지 가격 급등과 같은 위기 발생시 전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 미비
 - [통합적 에너지 전략 부재] 현재 에너지 분야 위원회는 전기 등 특정 에너지원에만 국한
→ 통합적 에너지 정책 및 규제 거버넌스가 미비
- * [독일] 연방네트워크기구를 통해 전기·가스·열 부문 통합 전략 수립
 [일본] 전력·가스시장 감독위원회를 통해 인허가, 요금체계 등 제도 설계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를 통해 전력망과 천연가스 인프라를 통합 규제

정책제안


-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에너지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에너지산업 전체를 관장하는 정책, 요금, 규제, 인허가 등 통합 조정 역할 수행
 - [법·제도 정비] 에너지 통합 거버넌스를 위한 근거법 마련 및 기존 관련 법률(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개편 추진
 - [탄소중립 로드맵과 연계] 통합 에너지 시스템 기반으로 2050 탄소중립 전략 실현 가속화


21대 대선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4 성장을 촉진할 동력 - 탄소중립

- 1 한국판 '탄소중립 전환(GX) 추진법' 제정
- 2 탈탄소 전환금융 도입
- 3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
- 4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
- 5 탄소중립 무역장벽 대응 수출전략 추진

 대한상공회의소

 KEF 한국경영자총협회

 FKI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현장의 목소리

탄소중립, 국가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야 합니다.

“선진국은 탄소중립을 ‘규제’가 아닌 ‘기회’로 보고 기존 산업의 녹색전환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산업정책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0대 직장인

“친환경 신산업에 대한 R&D 지원과 금융 지원이 절실합니다. 특히 중소·스타트업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초기 투자와 실증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세요.” 50대 중소기업 임원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탄소중립 역량을 키워 수출산업의 그린화는 물론, 기후테크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40대 직장인

기후위기, 정부·기업·시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산업을 육성한다면, 우리 경제도 활성화되고, 청년에게는 일자리가 생기고, 기후변화도 늦출 수 있어 일석삼조가 아닐까요?” 20대 대학생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은 단순히 환경문제를 넘어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대 과제입니다. 기업 혁신을 정부가 명확한 정책목표로 뒷받침하고, 이러한 변화를 국민이 수용했을 때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50대 직장인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 친환경 제품 구입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30대 주부

4-1 한국판 '탄소중립 전환(GX) 추진법' 제정

현실진단

-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산업계의 탈탄소화가 필수적
 - 산업부문(260.5백만톤)은 국가 총 배출량(727.6백만톤)의 약 36% 차지('18년 기준)
- 주요 선진국들은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탄소중립 지원법안을 제정하고 투자비용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 실행 중
 - **일본** GX(Green Transformation) 추진법('23.5) 통해 탈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 GX 경제이행채 발행, 민관 150조 엔 투자(정부지원 20조엔)
 - * GX 법안 통해 탈탄소 전환 상용설비에 투자비 지원(대기업 1/3, 중소기업 1/2)
 - * GI 철강 예산 대폭 증액(1,935→4,499억엔, '23.9) 및 수소활용 기술 조기 실기화 결정
 - * 그린스틸 판매량 톤당 2만엔 10년간 생산 세액공제(최대 법인세의 40%)('24년 세제개정안)
 -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22.8) 통해 투자계획자금 US\$4,370억 중 US\$3,690억(84%)을 에너지·기후변화에 투입
 -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일부 축소 전망
 - **EU** 그린딜 산업계획('23.2) 통해 회원국의 저탄소 설비전환에 직접 지원 강화
 - * 저탄소 상용설비 전환 시 총투자비 20~60% 지원
 - * 그린딜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넷제로산업법 및 한시적 위기·전환 프레임워크 도입('23.3)
 - * Horizon Europe(€955억), Innovation Fund(€380억)를 통한 그린전환 R&D 분야 지원

주요국의 탄소중립 지원정책

국가	지원정책
미국	- IRA를 통해 투자금 \$4,370억 중 \$3,690억(84%)을 에너지·기후변화에 투입 * 청정수소 세액공제(생산시설 투자금 최대 30% 또는 생산시 \$3/kg-H ₂), CCS 세제혜택 규모 상향(\$50/tCO ₂ → \$85/tCO ₂) 등
EU	- 총 예산 2조 유로 중 30%(약 853조원, '21~'27)를 그린딜 실행에 배정 - EU 집행위 및 개별 회원국 차원의 다양한 펀딩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탈탄소화 지원 * 철강사 탈탄소화를 위한 투자에 보조금 지원 등 적극 지원 중(정부 지원 비중 40% 수준)
일본	- GX기금을 통해 민관 150조엔 투자(정부지원 20조엔) - 2024 세제개편안을 통해 전략물자(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SAF, 그린스틸, 그린케미칼)에 대한 법인세를 10년간 최대 40% 감면 예정 * 그린스틸은 톤당 2만엔 지원

- 정부의 탄소중립 R&D 예산 지원은 부족한 상황
 - 최근 3년간 정부의 탄소중립 R&D 예산 규모는 정체
 - * 2.35조 원('23년) → 1.97조 원('24년) → 2.23조 원('25년) (기획재정부)
 - 전체 R&D 예산 대비 탄소중립 분야 비중도 점진적으로 축소
 - * 9.5%('23년) → 9.0%('24년) → 8.99%('25년) (기획재정부)

정책제안

- 체계적인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할 '탄소중립 전환 추진법' 제정
 - 탄소배출 감축효과 큰 산업 대상 정부 투자비 직접 지원
 - * 탄소중립 관점에서의 투자촉진 지원방안 확대(철강·화학 등 제조업, 에너지, 자원순환 산업 등)
 - 탄소중립 기술개발 가속화를 위한 R&D 기금 조성 및 핵심분야 집중 지원
 - 경제성 있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청정수소, CCUS 등 인프라 확보
 - * 주요국 청정수소 생산지원 : EU 수소은행 통해 €4/kg, 미국 IRA 통해 최대 \$3/kg
 - 저탄소 생산설비 투자 조기 활성화를 위한 설비 운영비(OPEX) 지원제도 신설
 - 국가 차원의 탄소저감 수단 개발 로드맵 및 기업현장 적용 지원정책 수립

4-2 탈탄소 전환금융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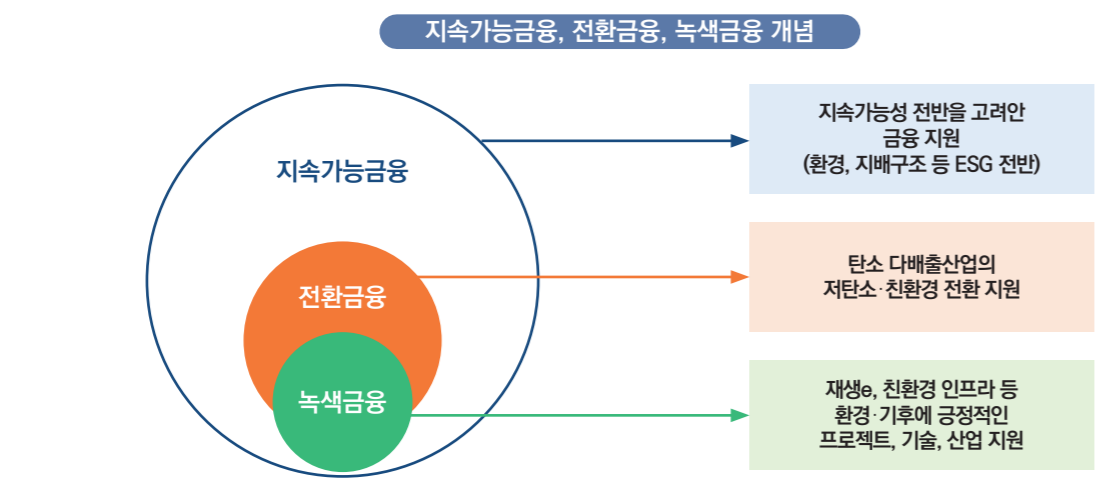
현실진단

- **녹색금융의 한계를 보완하고 탄소 多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금융의 중요성 대두**
 - 녹색금융은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따른 녹색·저탄소 활동에 초점
 -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탄소 多배출 산업에 대규모 투자와 금융지원 필수
 -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투자규모 : 2,097조원(자본시장연구원)
 - 매년 필요금액 : ('21~'25) 15~17조원, ('26~'30) 39~44조원, ('30~) 최대 163조원
- **주요 선진국들은 전환금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실행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단계**
 - **일본** 산업별 전환 로드맵 통해 전환금융의 적용기준 구체화
 - **EU** 전환 카테고리 도입, 벤치마크 개발 등 제도 기반 마련
 - **한국** 금융위 중심으로 로드맵 수립 검토, 민간금융기관의 참여유인 부족

일본 전환금융 추진 사례

구분	내용
전환금융 기본지침 (21.5)	• 전환금융 정의, 범위, 기업 거버넌스, 전환전략 평가, 투명공시 가이드라인 제시
전환금융 기본지침 (21.5)	• 기업이 전환전략을 책정하거나 금융기관이 기업의 전환전략을 검토할 때 판단기준으로 활용 * 철강, 화학, 전력, 가스, 석유, 제지, 시멘트, 자동차, 해운, 항공 분야 로드맵 마련(24.3 기준)
전환금융 기본지침 (21.5)	• 전환금융 실시 후 금융기관, 특히 채권 투자자가 대상사업의 전환전략, 목표, 진척상황 평가 시 고려할 사항 제시

출처 : 대외경제연구원(2024)



정책제안

- **탄소 多배출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도입 및 제도화**
 - 전환금융의 개념과 적용기준 명확화
 - 탈탄소 이행계획 수립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전환 분류체계' 개발
 - 전환금융 실효성 확보 위해 택소노미(Taxonomy)와 연계한 인증기준과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4-3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

현실진단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VCM(Voluntary Carbon Market)이 필수

- VCM은 기술적 한계로 인해 감축이 불가능한 탄소배출분을 상쇄하는 역할
 - * 탄소중립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정부의 정책 유연성 제고 가능
- 고비용 기후테크에 대한 시장 기반 자금 유입 경로 → 투자유치·상용화
 - * 미국, 영국 등 자국 CDR 기업 지원을 위해 VCM을 전략적으로 활용 중

주요국 전환금융 추진 사례

구분	내용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지자체,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사업을 추진해 발생한 감축실적(Credit)을 거래하는 시장 * 맥킨지, VCM 시장규모가 '21년 10억에서 '30년 500억 달러까지 성장 전망
주요국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은 VCM 도입을 공식화하고 탄소금융 허브화 추진 중 * (싱가포르) 탄소세의 5%를 자발적 탄소 크레딧으로 상쇄 허용('24~), 거래소 설립('21) 등 (美·英) 책임 있는 VCM 참여 원칙 발표 등 정부 차원의 VCM 무결성 강화 추진 중

● 탄소 크레딧에 대한 신뢰도 제고 노력 진행 중

- 일부 프로젝트 과도한 감축량 산정, 지속가능성 부족 등 그린워싱 문제 제기
 - * Verra 인증 크레딧의 90% 이상이 실제 감축성과 없는 'Phantom Credits(더 가디언, '23)
- 이에 ICVCM*, CORSIA** 등 국제 인증체계 강화 움직임
 - * ICVCM(Integrity Council for the Voluntary Carbon Market):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감독과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VCM 품질 기준으로 10대 핵심탄소원칙 마련
 - ** CORSIA(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도입한 국제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 위한 제도로 탄소 크레딧을 상쇄로 활용 가능

● 초기 시장 활성화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초기 VCM 참여 유인이 없어 민간의 탄소 감축기술 투자 위축 우려
- 시장 초기 정부의 VCM 수요자 역할(크레딧 구매 프로그램, 투자펀드 등) 필요
 - *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은 정부가 직접 VCM 시장 조성에 참여해 신뢰 형성 중
- 자발적 감축 실적을 통한 인센티브 메커니즘 구축 필요

정책제안

● VCM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정부의 자발적 탄소 크레딧 직접 구매 추진
 - * (미국) 탄소포집기술(DAC)로 발행된 크레딧 직접 구매를 통해 초기 시장 활성화 유도
- 기업이 잔여 배출량을 자발적 탄소 크레딧으로 상쇄할 수 있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도입
 - * (호주) 정부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호주 탄소크레딧, Verra, Gold Standard(GS) 크레딧 사용 허용

● 신뢰성 있는 VCM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 국제기준(파리협약 6조, ICVCM, CORSIA 등)과 정합성 확보
- 탄소 크레딧 공급, 수요, 거래시장 조성 전반에 걸쳐 무결성 제고 필요
- 기업의 자발적 감축 활동이 정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자발적 감축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 마련

- 세제 혜택, 공공조달 우대, ESG 평가 반영 등 민간 참여 유인 제공
- 자발적 크레딧 보유·활용 기업에 대한 비재무적 성과 평가 기준 정비

4-4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

현실진단

-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ESG 경영 요구 커지는 가운데, 해외 주요 국가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와 공급망실사가 시작**
 - 2019년 EU 그린딜 제정을 시작으로 EU, 일본, 중국, 호주 등 주요 교역국이 ESG 공시 도입 일정 확정
 - 한편 글로벌 공급망실사가 확산되면서 환경 및 인권 등의 분야에서 낙제점을 받은 협력사들이 글로벌 대기업 공급망에서 배제되기도
- **각 국 ESG 규제 및 글로벌 요구 대응하기 위한 산업 공급망 내 ESG 데이터 수요가 증가**
 - 지속가능성 공시 및 공급망실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청기업이 공급망 내 협력사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등의 ESG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일이 현재 빈번하게 발생
-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준비 부족하고, 산업 공급망 데이터 교환을 위한 인프라도 전무**
 - 국내외 ESG 규제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현재 우리 기업들의 대비가 충분하지 않고, 특히 인력·비용 여력이 충분치 않은 우리 중소기업들 어려움 큼
 -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공급망실사지침 등 6개 주요 ESG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수준 및 대응수준은 각각 '42점', '34점(대한상의, '24.3)
 - 기업이 개별적으로 탄소배출량 정보 교환 및 산정 수행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중복실사 및 중복보고의 비효율 해소, 공급망 내 기업들이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탄소정보 등 제품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국가단위 데이터 플랫폼 필요**

국내 수출기업의 주요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 및 대응수준

규제	인식수준				대응수준			
	전체	대	중견	중소	전체	대	중견	중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55	60	57	53	35	53	37	32
공급망실사지침(CSDDD)	44	55	47	41	35	47	41	30
지속가능성보고지침 및 공시기준(CSRD)	46	55	49	43	38	52	44	33
배터리 규제	30	42	29	30	24	29	23	23
에코디자인 규정(ESPR)	34	55	34	32	32	38	35	29
포장재법(PPWR)	41	65	36	41	38	40	38	37
6개 항목 평균(점)	42	55	42	40	34	43	36	31

정책제안

- **통상이슈 해소, 수출경쟁력 제고 위한 한국형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
 - 한국형 산업계 ESG 데이터 플랫폼 개발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EU 디지털제품여권(DPP) 규제 대비 위한 'DPP 대응 플랫폼' 개발 착수 必
 - 이후 소업종·소산업 데이터 포괄하는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으로 확대 발전
-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관련 법령·제도·표준·인력 등 기반 강화**
 -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플랫폼 담당기관 일원화, 참여 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협력사에 대한 데이터 입력 요구를 경영간섭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세이프하버 조항 마련 등
 - 공공·민간에서 플랫폼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자격제도 개발

4-5 탄소중립 무역장벽 대응 수출전략 추진

현실진단

- 최근 EU를 중심으로 ESG 규제*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는 추세 가속화
 - *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CRMA(핵심원자재법), EUDR(산림전용방지법), EU 텍소노미, CSDDD(지속가능성 실사지침), CSRD(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등
 - 이러한 규제들은 단순한 기술적 장벽을 넘어 'ESG의 무기화' 현상을 초래하며,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
 - EU는 ESPR(지속가능제품 에코디자인 규정) 규제의 핵심 실행수단으로 2027년부터 '디지털 제품 여권(DPP)'제도를 도입하여 제품 생애주기 ESG 데이터 디지털화를 의무화
- 우리나라는 분산된 행정·정보시스템과 디지털 인프라의 국제 표준화 부족으로 중소 수출기업의 글로벌 ESG 규제 대응이 어려움
 - K-ESG(한국생산성본부, 자율평가도구), 환경성적표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율적 탄소발자국 인증 제도), UNIPASS(관세청, CBAM 대상 기업 정보입력 의무) 등 글로벌 ESG 인증정보 분산
 - * K-ESG, 환경성적표지는 가점요소나 조달요건으로 활용되며, 컨설팅, 검증, 데이터 연계 등 부대비용이 발생(수백만~수천만원). UNIPASS는 CBAM 규제 대상 기업에 대해 정보 입력 의무를 별도 부과 중
 - EU DPP(제품 단위),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기업 단위) 등 바이어별로 상이한 데이터 요구로 인해 데이터간 호환성이 부족해지고, 포맷 변환 등 추가 작업이 발생하여 '고비용-저성과형'의 중복 투자 발생
 - 중소 수출기업은 ESG 자체 측정 역량과 전담 인력 부족, 시장 의무규제* 대응 관련 통합된 디지털 트래킹 시스템이나 표준화된 공급망 인증 체계가 미비한 실정
 - * DPP(제품), EU CRMA(핵심원자재), ISO 14001(경영), EUDR(산림파괴방지법, 공장/공급망) 등
- 중소기업들은 제도·재정적 한계로 금융애로를 호소
 - 중소기업의 EcoVadis* 평균 점수는 2024년 추산 평균 46점대로 EU 주요 바이어 요구 수준인 60점 이상에 한참 못 미침(BusinessWire/EcoVadis Index, 2024.8)
 - * EcoVadis :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글로벌 ESG 등급으로 EU·북미 주요 바이어가 납품 조건으로 활용
 - 현 제도하에서는 각종 탄소중립 관련 기준 충족과 인증 획득 여부 등 통합 디지털 실적이 집계되는 플랫폼이 부재하고, 해당 실적이 금리 차등이나 보증 한도 등 금융 조건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음

정책제안

- 'K-ESG Trade Passport(K-ESG 무역 여권)' 신설 통한 ESG 기반 수출역량 강화
 - 글로벌 ESG 인증, 탄소데이터, 공급망 투명성, 사회적 책임 이행정보를 국가 공공 인증서(PKI) 기반 디지털 인증서로 통합하는 'K-ESG 무역 여권' 신설
 - K-ESG 정보공시·공급망 실사 기준을 글로벌 표준과 연계하고, 수출기업이 바이어·관세청·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에게 자동 제출·활용 가능하도록 제도화
 - * [도입방식] 국가 공공 인증서(PKI) 기반의 'K-ESG 무역 여권' 시스템 구축
 - * [연계시스템] 관세청, 무역협회, KOTRA,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 등 기관과 연계하여 수출 서류 간소화 및 ESG 이력 자동 제출
 - * [활용예시] EU DPP, CBAM 등 글로벌 규제 표준(예: GRI, GHG Protocol)과의 데이터 호환성 확보, CBAM 대응용 탄소배출정보 제출 자동화, 해외 바이어·기관의 실시간 검증 및 자동 보고가 가능하도록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 'ESG형 수출금융 프로그램' 확대 통한 지속가능 무역 인센티브 강화
 - 'K-ESG 무역 여권' 제도를 활용하여 실적에 따라 일관성 있는 금리 우대, 보증한도 확대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자동 연계 적용
 - 수출보험, 보증, 환변동보험 등의 우대 조건을 부여받은 기업의 ESG 경영이 무역 경쟁력으로 작동하도록 유도
 - * [차별화 프로그램] ESG 등급 연계형 금리 및 혜택 차별 제공 (예: EcoVadis Silver 등급 이상 기업 연 0.5% 우대, 보험료 할인 등), 탄소중립, 순환경제, 친환경 소재 등 산업 간 융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우대
 - * [ESG 특화 PF 신설] '탄소 저감형 수출설비 투자'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PF 우대, ESG 전용 PF 신설, ESG 특화 대출 신설
 - * [ESG 특화 심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ESG리스크 심사체계' 도입 및 신용등급 가점 반영
- 탄소중립 지향점을 '규제' 중심에서 성장 지향형 '지원' 정책으로 전환
 -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접근으로 정책 지향점을 전환하고 이를 지원하는 종합 법령 도입과 기업의 탄소중립 실적 기반 통합 지원체계를 수립
 - 산업간 제품·서비스 융복합을 위한 기후 테크 예산 대폭 확대, 탄소저감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금융 지원 우대 등 기업 인센티브 강화
 - * 2025년 기후변화대응 R&D 예산 : 2.6조원

5


성장을 촉진할 동력 - 기업가정신

- 1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도입
- 2 중소·중견기업 기업승계 지원 강화
- 3 증여 활성화를 통한 기업승계 환경 조성
- 4 기업공익법인 활성화
- 5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를 통한 기업가정신 제고
- 6 경제인 배임죄 개선
- 7 기업인 형사처벌 규정을 행정제재로 전환
- 8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 확보
- 9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 10 사회적 가치 창출 확산 위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
- 11 사회문제 해결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

FKI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KEF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현장의 목소리

선진국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기업가정신이 꼭 필요합니다.

“80년대 경제개발 시기에 도입된 동일인(총수) 제도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과 국가 대 국가로 경쟁하는 시대인데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지 않을지..”

40대 직장인

“최근 기부 참여가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부문화는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기업이 공익법인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부문화도 활성화되도록 과감하게 공익법인 규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50대 공익법인 사무국장

안정적인 기업승계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뒷받침하는 힘입니다.

“자식들이 상속세로 절반이나 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하니, 결국 회사를 매각하게 되는 건 아닐지 염려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수십 년 동안 저를 믿고 함께해 온 직원들은 물론, 제가 쌓아온 경영 노하우와 인적 자산도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70대 기업인

“기업들의 상속세를 감면해서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30대 주부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 현장 소통 플랫폼’을 활성화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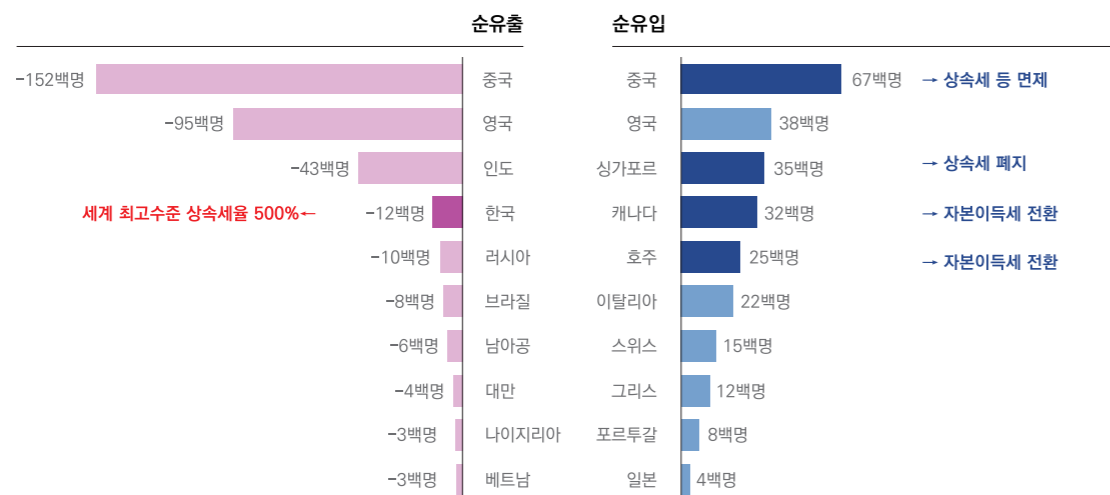
30대 직장인

5-1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도입

현실진단

- 기업 경영권 주식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20%)을 포함하여 최대 60% 수준
 - 상속세 납부를 위해 경영권 주식을 처분할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 및 해외 투기세력의 공격에 노출돼 경영권 상실 위험이 커지며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위협
 - * 상속세 60% 부과시 최대주주 지분율 변화: 1세대 100% → 2세대 40% → 3세대 16%
 - '00년 최고세율이 45%에서 50%로 인상된 후 상속세 과세대상 및 징수액 급증
 - * 상속세 과세대상(징수액) 변화: '13년 6,275명(1.6조원) → '23년 19,944명(9.6조원)
- 상속세 부담이 낮은 국가로의 자산가 이민 증가 中 → 인재 및 국부 유출 우려
 - 우리나라 고액자산가 순유출 규모는 1,200명 육박, 인구 대비 영국 다음 세계 2위
 - * '24년 100만달러 이상 순자산 보유자 국적 순유출 규모: 1위 중국(15,200명), 2위 영국(9,500명), 3위 인도(4,300명), 4위 한국(1,200명)
 - 상속세가 없거나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 도입한 국가는 고액자산가의 유입이 뚜렷
 - * '24년 100만달러 이상 순자산 보유자 국적 순유입 규모: 1위 UAE(6,700명), 2위 미국(3,800명), 3위 싱가포르(3,500명), 4위 캐나다(3,200명)

2024년 고액자산가 순이동(순유출:순유입) 상위 10개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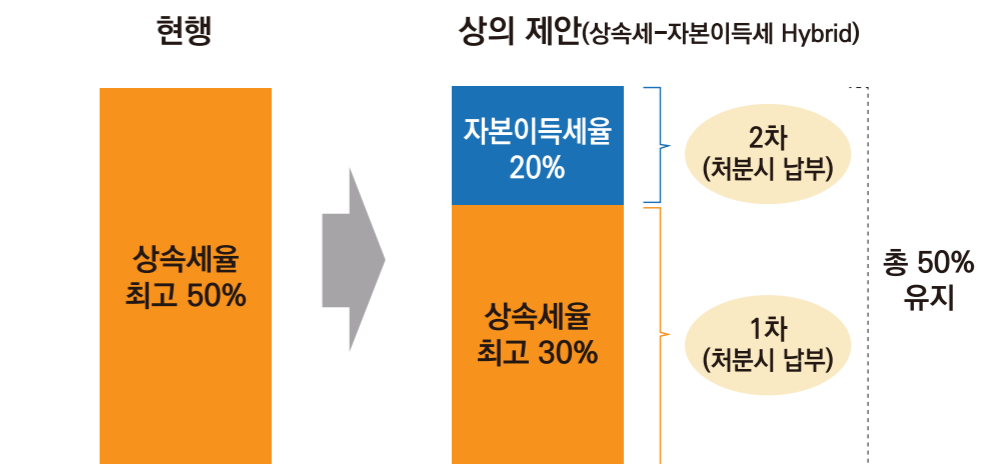


출처: Henley & Partners, "The Henley Private Wealth Migration Report 2024"

정책제안

- (1안) 기업 단절을 초래하는 상속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20%) 폐지
 - OECD 국가들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약 26% 수준이며,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지분율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상속세를 가산 부과하는 사례는 한국이 유일함
- (2안) 기업 지속을 위해 경영권 주식에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방식 도입
 - 기업 경영권 주식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처분하기 곤란하며, 특히 비상장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현금화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함
 - 이에 기업 경영권 주식의 상속세를 자본이득세와 결합하는 3가지 방식 제안
 - ① 납부시점별 방식: 피상속인 사망시점에 상속세 최대 30%, 주식 처분시점에 자본이득세 20%
 - ② 과세대상별 방식: 부동산 등 경영권 무관 재산은 상속세, 경영권 유관 주식은 자본이득세
 - ③ 상속가액별 방식: 총 상속재산 600억원 이하분은 상속세, 600억원 초과분은 자본이득세

경영권 주식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방안(①납부시점별 방식)



5-2 중소·중견기업 기업승계 지원 강화

현실진단

-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상속공제제도*가 있으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 불과해 활용 저조**
 - 30여년 지역정책에도 수도권 집중도 OECD 1위
 - * (공제한도) 업력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 기업상속공제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는 독일은 대상기업 규모를 제한하지 않는 반면, 한국은 중소·중견기업 중에서도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기업에 한해 지원
 - *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의 기업가치는 약 5,200억 원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을 30%로 가정해도 상속 규모가 1,560억 원에 달해 기업상속공제 활용 없이 원활한 승계가 어려움

한국-독일 기업상속공제 활용 현황 비교

구분		'17	'18	'19	'20	'21	'22	평균
한국	기업상속공제 건수(개)	91	103	88	106	110	147	107
	기업상속공제 금액(억원)	2,226	2,344	2,363	4,210	3,475	3,430	3,008
독일	기업상속공제 건수(개)	9,260	8,773	9,263	12,043	11,874	11,391	10,308
	기업상속공제 금액(백만유로)	20,387	11,634	12,022	7,688	24,759	6,790	13,880

* 국세통계연보, Finanzen und Steuern

- **우량 중소·중견기업이 승계를 통해 백년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상속공제 지원 대상 및 한도 확대 필요**
 - 안정적인 승계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 투자 확대 가능
 - *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기업당 212.6명을 고용하는 데 반해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은 기업당 1,315명을 고용('23년도 결산 기준 중견기업 기본통계 가공)
-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 유지조건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대응에 맞지 않음**
 - 과도한 업종 변경 제한은 경제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신산업 진출 및 사업재편 등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기업의 성장을 저해

- **기업상속공제제도 대상 업종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
 - 현행 포지티브 방식은 오랜 기간 기업을 영위해더라도 기업상속공제 적용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업상속 제도 활용이 불가능
 - 특히 서비스업은 동종 유사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표준산업분류 코드 또는 개별법률 규정에 따라 기업상속공제 대상 인정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에 대한 문제 발생

제조업-서비스업 관련 기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예시

광업 (05~08)	제조업 (10~33)	건설업 (41~4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교육서비스업(85)
전체	전체	전체	연구개발업(70),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등 5개 업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75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등 7개 업종	유아 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 등 4개 업종

정책제안

- **기업상속공제 지원대상 중견기업 확대**
 -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
- **기업상속공제 지원 한도 확대**
 - 최대 600억 원 → 1천억 원까지 확대
- **사후관리요건 중 업종 유지 요건 폐지**
- **기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기업상속공제 적용 제외 업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만 별도 명시

5-3 증여 활성화를 통한 기업승계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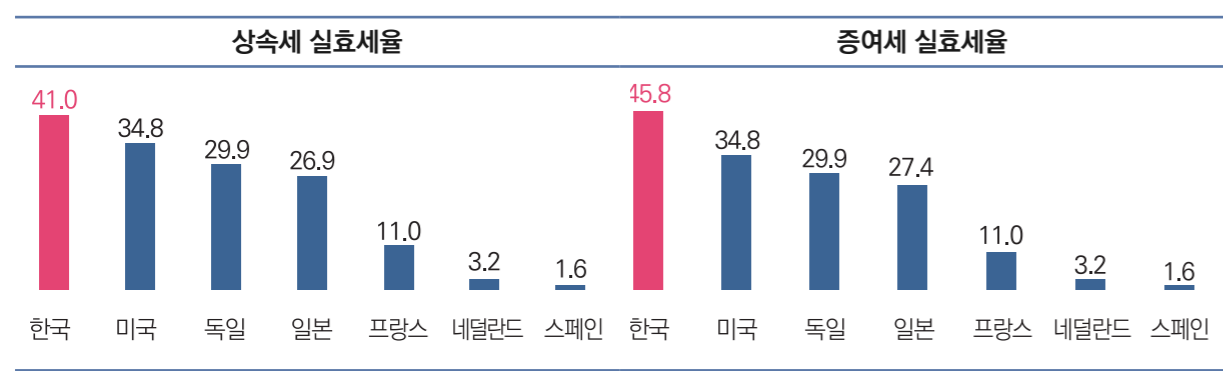
현실진단

-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되는 기업상속공제와 달리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한도까지 10~20%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어 승계에 부담으로 작용

* 기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일반 상속 대비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
 : 10억 원 이하 0%(공제), 10억 원 ~ 120억 원 이하 10%, 120억 원 ~ 600억 원 이하 20%, 600억 원 초과 50%

- '22년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상향(100억 원→600억 원)되었으나, 공제·감면 적용 후 증여세 실효세율이 상속 대비 높고 주요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

OECD 주요국 상속·증여세 실효세율



* KPMG, Global family business tax monitor 2023

- 자산의 세대간 이전이라는 유사성을 감안해 상속과 증여 간의 차등을 해소할 필요
 - 적용방식 뿐만 아니라 연부연납기간도 기업상속공제가 20년인 것에 반해 증여세 과세특례는 15년으로 짧고 거치도 불가해 재원 마련이 용이치 않은 상황끝내내려면 그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

기업상속공제 및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비교

기업상속공제	구분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대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최대 600억 원	한도	최대 600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	적용방식	10억 원 공제 후 저율과세(10~20%)
~600억 원 이내: 공제	(30년 이상 기업) 세율 적용	~10억 원: 공제, 10억 원~120억 원: 10%, 120억 원~600억 원: 20%
중소기업에 한해 선택 가능	납부유예	중소기업에 한해 선택 가능
20년(10년 거치 10년 분할납부)	연부연납	15년(분할납부)

- 안정적 승계 기반 마련을 위해 상속보다 증여를 활성화 할 필요
 - 경영자 다수가 기업가정신의 원활한 전수 및 경영권 분쟁 방지를 위해 사후 상속보다 생전 증여를 선호
 - * 주된 기업승계 방식 (중견기업연합회, 2024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 일부 증여 후 상속 44.1%, 증여 28.0%, 상속 10.2%, 기타(미정) 17.8%

정책제안

-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 확대
 - 증여세 저율과세에서 기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공제 방식으로 전환
 - 저율과세 한도 과세표준 600억 원까지 10%로 확대
-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완화
 - 기업상속공제 연부연납 기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상속-증여 간 과세형평 도모

5-4 기업 공익법인 활성화

현실진단

●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상증세법 및 공정거래법상 규제 과도

-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증여재산 원칙적 비과세, 예외적 과세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경우 면세한도 5% (일반 공익법인 면세한도는 10%, 의결권 미행사할 경우 20%)

현행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주식 면세한도

적용 대상		한도	과세
일반 공익법인	일반적인 경우	출연하는 내국법인 주식 10%	초과분에 상증세 부과
	의결권 미행사 &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출연하는 내국법인 주식 2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	출연하는 내국법인 주식 5%	

-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는 원칙 금지-예외 허용 中
 - * (예외 허용) 계열사 주식 100% 소유 or 상장 계열사 주총 결의시 15% 내(임원 선·해임, 합병 등)

● 최근 10여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는 위축되는 추세





- 세계순위, 참여율, 기부의향 등 지표에서 하락
 - * [세계 기부문화 순위] 인니 1위, 미국 5위, 한국 79위
 - * [참여율] 36.4%(11년) → 21.6%(21년), [기부의향] 45.8%(11년) → 37.2%(21년)
- 민간기부의 경우 규모 면에서 실질적 정체 상태
 - * [GDP 대비 민간기부 비중] 0.79%(11년) → 0.75%(21년)

● 기업 공익법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행할 수 있는 통로이나 상증세법상 주식 면세한도 및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규제로 인해 기부에 제약

- 공익법인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하는 것으로 기부 활성화를 위해 폭 넓은 세제지원 필요
 - 기부 여력과 재원이 큰 기업의 공익활동 장려 위해 적극 완화

- 주요국 대비 보유주식 면세한도 제한이 과도한 수준, 의결권 제한은 한국이 유일
 - 주식보유 면세한도 낮아 공익법인 설립·기부 유인은 상대적으로 부족
 - * 韓 5%이내 vs. 美 20%·35%, 日·EU 제한 없음

현행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주식 면세한도

			
[의결권 없는 주식] 허용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미행사 20% - 일반 10% - 상출집단 등 5%	[의결권 없는 주식] 허용 [의결권 있는 주식] - 실질지배시 20% - 제3자 지배시 35%	X	X

정책제안

- [면세한도] 공익법인 주식 등 출연 상증세 면세한도 폐지 or 상향*
 - * 20% 또는 의결권 행사하지 않는 경우 35%(미국사례)
- [의결권 규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폐지

5-5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를 통한 기업가정신 제고

현실진단

- 기업인의 경영판단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과 책임이 엄격
→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신산업 진출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
 - * 경영판단 원칙 :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의의무를 다했을 경우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 한국은 경영판단 원칙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법원도 소극적으로 인용
 - 한국 법원은 경영판단 원칙 인용에 소극적이고 입증 책임도 이사가 부담하나, 미국 법원은 경영판단 추정 원칙을 통해 기업인의 경영 판단을 존중
 - * 한국 대법원은 '04년 처음 경영판단 원칙이 인용되었으나, 이후 '15년까지 경영판단 관련 배임죄 판결 35건 중 18건만 이 원칙을 고려
 - * 미국 법원은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해, 충분한 정보와 선의, 그리고 회사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정직한 신뢰 위에서 행한 것이라고 추정
 - 미국은 판례법에 명문화, 독일은 주식법 제93조에 명문으로 규정
 - * 미국은 1988년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례로 처음 원칙이 수립된 이래, 법원에서 이사의 경영책임을 판단하는 일관된 기준으로 작용
- 고도의 경영적 판단이 요구되는 전문경영인의 의사결정을 법원이 사후적으로 판단
→ 법원이 경영 일선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
-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만 있어도 행위를 처벌하는 배임죄 규정 때문에 기업인들은 모험적인 투자를 기피하고 보수적인 경영에만 주력

정책제안

- 기업가정신 제고와 균형있는 사법적 판단을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에 명문화

5-6 경제인 배임죄 개선

현실진단

-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해 ① 광범위한 배임죄 적용, ② 임무 위배라는 막연한 죄목, ③ 쉬운 고발 등으로 빈번한 기소 발생
- 한국은 배임죄 형벌 규정과 형량 등이 과도
 - G5 등 주요국들은 배임죄 처벌규정이 없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사기죄로 대응
 - G5와 한국 중 (일반)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특별배임죄가 모두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한국의 특경법상 형량은 살인죄와 동일

한국 및 G5 배임죄 법제 비교

구분	한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형법 일반배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제355조 제2항>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	3년 구금형 또는 375,000 유로 벌금형	20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	10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
형법 업무상 배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56조>	x	x	7년 구금형 또는 750,000 유로 벌금	x	x
회사법 특별배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상법 제622조>	x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 벌금	5년 금고 또는 375,000 유로 벌금	x	x
특경법	50억 이상 무기나 5년 이상 징역 5억~50억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	x	x	x	x	x

 정책제안

- 기업인들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배임죄 요건 개선
 - 임무 위배라는 막연한 죄목 대신, 형법상 배임죄 구성요건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하여 기업인들의 경영판단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을 제고
- 배임죄 관련법 정비를 통해 기업인 경영활동의 과잉범죄화 문제 해소
 - 민사상 불법 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이사에 대한 유지청구권, 주주대표소송,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한 자율 규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
 - 상법상의 배임죄는 폐지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가중처벌 조항과 양형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정비

5-7 기업인 형사처벌 규정을 행정제재로 전환

 현실진단

- 총 5,886개의 경제형벌 규정 존재 → 기업인의 리스크 과도
 - 기업인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과의 책임은 물론,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형사처벌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
- 과도한 형사책임이 기업인이 투자·고용 등 경영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하고, 외국 기업이 국내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 외투기업 前 CEO에 대한 불법파견 유죄판결(징역형)에 대해 '외투기업 투자시 한국 특유의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38.8%)', '한국 내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져 기존 외투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30.8%)'고 주한 외투기업들이 (복수)응답(경총, 2023. 3.)
 - 노동, 산업안전, 환경 등 각종 법령에서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기 어려우며, 장기간 이어지는 조사 과정에서 경영진의 경영활동 제약과 기업 브랜드 타격 등도 발생
-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 대부분에 형벌 규정 존재 → 해외 주요국에 비해 매우 과도한 수준
 - 해외 주요국은 형벌규정이 없거나, 담합·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해서만 형벌 규정

경제 형벌규정 개선 관련 동향

구분	내용
개선과제 발굴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등을 통해 총 4차례에 걸쳐 총 205개의 개선과제 발굴
입법	21대 국회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등 7개 법안 발의 → 임기만료 폐기
	22대 국회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등 9개 법안 발의, 계류 중

 정책제안

- 현재 계류 중인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 신속 처리
- 그 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경제 형벌규정도 지속 개선
- 공정거래법상 처벌 규정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나 시장지배력 남용을 제외한 다른 위반행위는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행정제재로 전환

5-8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 확보

 현실진단

- G7 등 주요국이 보유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한국에는 없음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G7 국가들은 자국 기업들에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수단을 보장
 - * 포이즌필 : 적대적 M&A 상황 시 공격자를 제외한 주주들에게 저가의 주식매입 권리를 부여해 공격자 지분을 대폭 하락시킬 수 있고 평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구조나 지배권 왜곡도 발생하지 않음
 - * 차등의결권 : '1株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서, 경영권 보유 대주주에게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 부여 (한국은 '23.7월부터 벤처기업 창업주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 미국은 이사회가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로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이 가능
 - * (美) 모범회사법 및 델라웨어주 회사법(DGCL § 157 및 RBMCA § 6.24)
 - 일본·프랑스 등 그 외 G7 국가들은 회사법에 명문 규정을 두거나 해석 상 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등의 도입을 인정
 - * (日) 회사법 제2조 제21호, (佛) 프랑스 상법 232-32 II

경영권 방어수단 주요국 입법례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신주인수선택권	X	O	O	O	O	O	O	O
차등의결권	벤처限	O	O	O	O	O	X	O

- 국내외 헤지펀드에 의한 경영권 공격이나 적대적 M&A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한국 기업만 경영권 방어수단이 엄격히 제한
 -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 시 한국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 불균형에 따른 역차별을 겪는 상황
 - * 과거 대기업들의 상호-순환출자 문제 때문에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이 엄격히 금지되었으나, 현재는 순환출자 고리가 거의 해소된 상태
 - 정부는 '10년 상법 개정 과정에서 신주인수선택권제도(포이즌필)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
 - * '10년 정부안은 신주인수선택권제도 남용 소지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도 마련 (ex. 경영진의 자의적 발동 제한, 방어수단 공시 의무화, 현저한 불이익 발생에 대비한 소송근거 마련 등)

5-9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현실진단

-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는 기업집단 규제의 출발점**
 - 동일인 지정 → 기업집단 범위 확정 → 기업집단 규제* 적용
 - * ①상호·순환출자 금지, ②공익법인·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③내부거래 규제
- **現 동일인 지정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시대변화와 맞지 않아 기업 경쟁력 저해**
 - 동일인 지정제도는 전 세계 유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
 - 40년 전 경제개발 초기 도입된 제도로 선진국과 경쟁하는 현재와 괴리
- **비영리법인 임원·사외이사의 지배회사 파악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 존재**
 - 역량과 경험 갖춘 명망 있는 인재 영입하는 데 어려움
 - * 실제 다수 기업에서 계열사 편입 문제로 비영리법인 임원·사외이사 영입 직전 포기
- **동일인이 특수관계인 현황을 모두 파악하는 데 한계**
 - 동일인이 직접 계열사 지분율, 실질 지배력 등 명확히 파악하기 곤란
 - 특히 강제조사권 없어 특수관계인(친족 등) 관련 현황 파악에 애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의 문제점

구분	조문	문제점
비영리법인 임원 / 사외이사	영 4조 2항	임원 후보의 보유회사가 계열사 포함 → 인재영입에 애로
지정자료 제출의무자	법 31조 4항	법상 의무자는 회사 또는 특관인 → 공정위는 동일인에게 의무 부과
자료제출의무 위반시 제재	법 125조 1호	특관인(친족)의 비협조시 동일인 처벌 → 책임주의 위배 소지

정책제안

- **동일인 지정제도의 합리적 개선**
 - [계열 제외] 비영리법인 임원·사외이사의 독립경영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
 - [제출 의무]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자를 '회사'로 명시
 - [제재 수준]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시 제재 수준 완화(형벌 → 과태료)

- 주식시장 확대를 개미투자자가 늘고 공적연금·기관투자자·사모펀드 등의 지분도 증가세가 있어, 대주주의 안정적 지분 확보가 어려운 상황
- * '11년 대비 '21년 자산 100대 기업 지분 변화 : 사모펀드 지분 7.2%p 증가(14.4 → 21.6), 국민연금 지분 1.3%p 증가(7.4 → 8.7), 오너지분 0.4%p 감소(43.2 → 42.8)

정책제안

- **주요국에서 널리 활용하는 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도입을 통해 경영권 공격수단과 방어수단 간 제도적 균형 필요**
 - 한국 기업들은 경영권 공격에 대비해 자사주를 취득·보유하거나 현금을 사내에 유보하는 방식 밖에는 방어수단이 없는 상황
 - 자사주 매입 등 경영권 보호를 위해 사용되었던 자금을 투자 등 생산적인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은 적극적 투자 환경 조성에 긍정적
 - * 미국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도 2004년 보고서를 통해, 경영권 방어수단을 잘 갖춘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 대비 3년, 5년, 10년의 기간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도 주가상승률이 높고 수익성, 배당성향, 재무운영 등이 충실하다고 발표

5-10 사회적 가치 창출 확산 위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

현실진단

● 기업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사회적 역할 실천하기 위해 노력 중

- 과거의 경제적 역할(경제성과 일자리 창출) 넘어, 사회적 역할(친환경경영, 지역사회 상생, 기업문화 개선, 윤리경영 등)에 대한 국민 기대 증가
- 우리기업 사회적 가치 창출 위해 자원 투입·노력 지속 확대
 - * 주요 기업 200개사 연간 사회공헌 비용 2.6조('20) → 2.9조('21) → 3.5조('22, 한경협)
 - * 사회문제 해결에 공동참여하는 기업협의회 '신기업가정신협의회(대한상의, '22 출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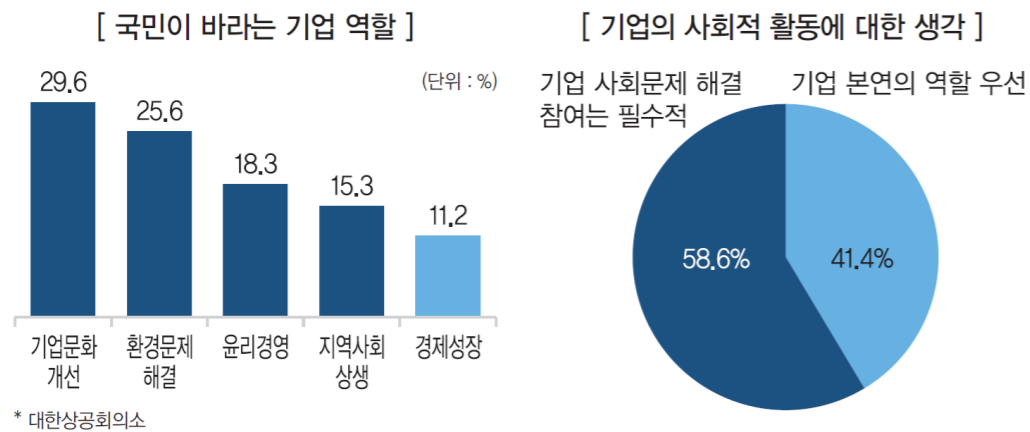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Entrepreneurship Roundtable)

(목적) 기업 고유의 기술·역량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에 공동 기여하는 기업 협의체
(과제) 5대 실천명제(경제적 가치, 윤리적 가치, 기업문화, 친환경, 지역사회) 경영전반에 실천
(현황) 전국 73개 상의·1,832개사 참여,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워드ERT 등 실천사업 진행

● 그러나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인센티브 주는 통합 체계 결여

- 사회적 가치 측정 관련 여러 지표 혼재 → 성과 정량화·측정할 기준체계 부재
 - * 고용부 사회적가치지표(SVI), 행안부 사회성과연계보상사업(SIB), SK 사회성과크레딧(SPC) 등
- 정부 인센티브는 기부금 세액공제, 정부포상, 인정제에 한정. 정책지원도 중소기업·사회적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도입 위주

기업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국민 기대 증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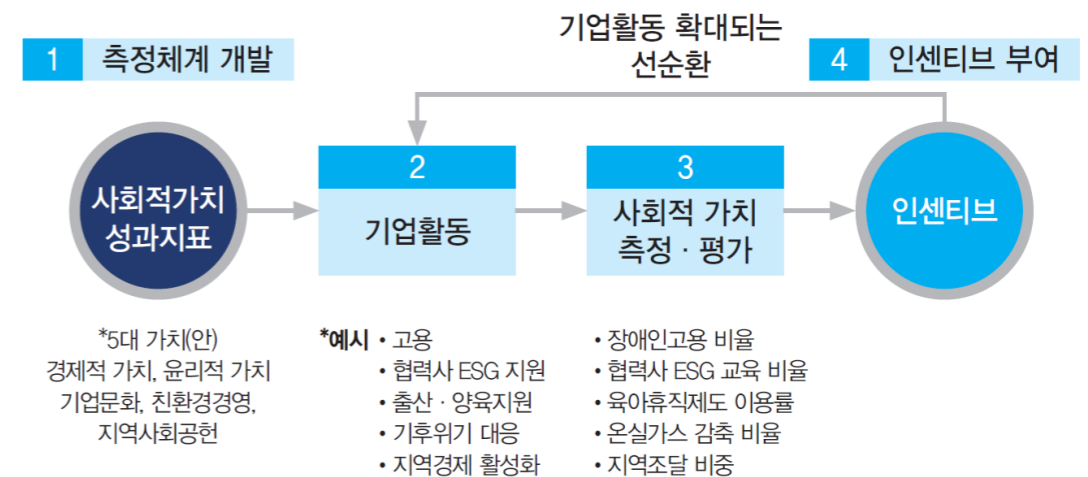
구분	주관	이름	기준
세액공제	기재부	기부금 세액공제	법인 소득 50% 내 전액 소득공제 대상
포상	산업부, 중기부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	적극적 사회적책임 경영(CSR) 활동
포상	산업위	지속가능경영 유공포상	지속가능경영
포상	통합위	아름다운 동행상	지역사회공헌, 사회적 약자 지원
인정제	복지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비영리단체 협업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문체부	문화예술후원 인증제	문화예술 후원

정책제안

●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인센티브 매커니즘 구축

- 사회·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자원 투입과 성과를 측정하는 통합체계 마련
 - ① 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지표 설정, ② 이해관계자 수용 위한 합의 도출
- 측정된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에 비례하여, 정부 차원의 통합된 실질 인센티브 도입
 - *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확대, 정부조달 우대, 저금리 대출 지원, 관련 평가지수 우대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인센티브 매커니즘



5-11 사회문제 해결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

현실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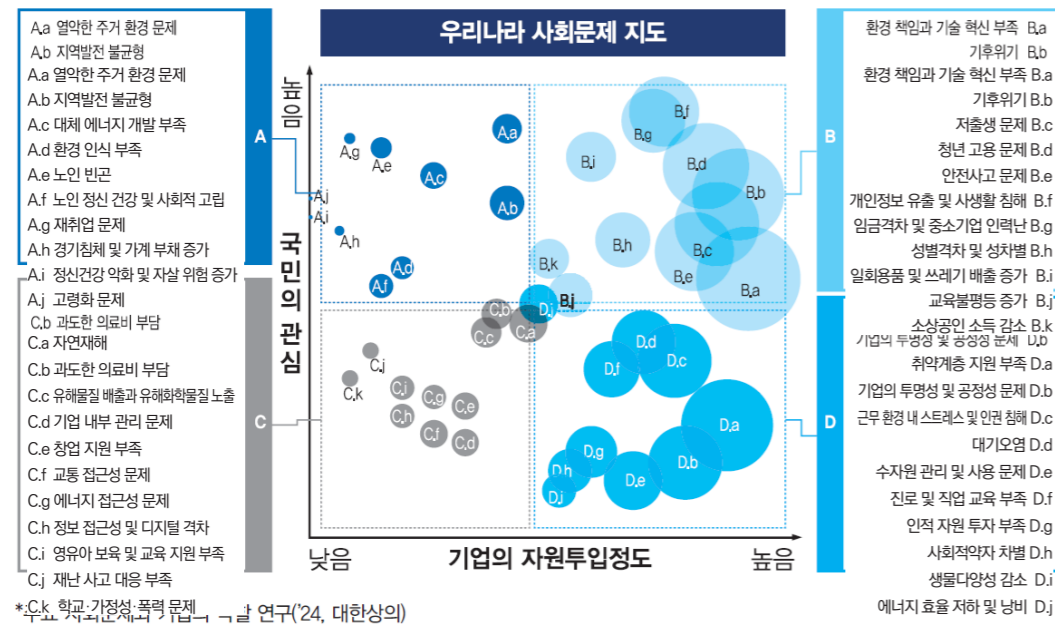
●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에 많은 자원 투입하지만 분야 중첩, 체계적인 접근 부족

- 특정 사회문제 분야에 자원과 노력 편중되고 개별 효과에 그치는 결과

* 우리나라 주요 사회문제 42개 중 11개 사회문제에 기업 자원 50%가 집중(대한상의, '24)

우리나라 사회문제 지도(기업의 자원투입 편중)

- 국민의 관심(Y), 기업의 자원투입정도(X)를 기준으로 42개 주요 사회문제 분류



●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소통·협력 채널 부족

- 해결 시급한 핵심 아젠다 도출하고, 자원배분 조정 및 협업 촉진할 중심 조직 부재

* 민간 주도로 이해관계자간 소통·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24년부터 사회적가치페스타를추진하고 있지만 장기적 비전 공유·주도할 공식 협의체 부재

- 국민·정부·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노력 분산 → 효과적인 사회문제 해결 저해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

(목적) 사회문제 해결 위한 이해관계자의 노력·성과 공유, 협업 논의 (포럼, 전시부스 등)

(실적) 기업, 학계, SE생태계 등 이해관계자 6천여명 참석('24년 행사 기준)

정책제안

● 대통령 직속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

- (목적)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의 장 마련해 사회문제 해결 위한 협업과 확산 지원

- (구성)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대표 당연직 참여

- (역할) ① 핵심 사회문제 아젠다 논의

② 이해관계자 협업프로젝트 시행

③ 사회적 가치 측정·보상 체계 논의


21대 대선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6 새로운 산업의 이식 - 신산업

- 1 고부가가치 미래산업, 항공우주산업 육성
- 2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3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 ① 바이오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확대 지정
 - ② 글로벌 보건기구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강화
- 4 미래형 친환경 선박 지원 확대
- 5 방산, CCUS 국가전략기술 지정
- 6 첨단전략산업 직접환급, 제3자 양도 허용
- 7 첨단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 8 첨단전략산업 보조금 및 인프라 지원
- 9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기술개발 지원

FKI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KEF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현장의 목소리

신산업 육성은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핵심 전략입니다.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핵심 전략으로 신산업에 대한 정부 주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바이오 등 전략기술에 R&D 투자와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30대 직장인

“자율주행, 드론,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련 인프라 구축, 실증사업, 표준화 작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40대 직장인

신산업을 육성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바이오헬스,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탄소중립 기술 등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해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50대 전문직

“디지털 전환과 녹색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인프라 확충 정책도 병행해야 합니다.” 30대 직장인

“지역별 산업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창업 초기기업에는 투자세액공제와 함께 고용 연계 인센티브를 부여해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30대 직장인

“신산업을 키우려면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같은 유망한 분야에 정부가 연구개발 자금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규제도 획기적으로 풀어줘야 해요.” 20대 자영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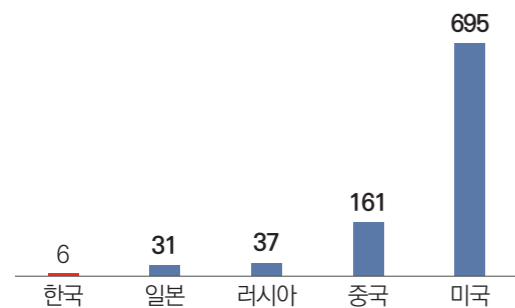
6-1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 '항공·우주산업' 육성

현실진단

- **정부, 우주항공청 설립('24.5) →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 사업 추진**
 - 민간 중심 우주항공경제 가속화, 국민과 함께 누리는 우주항공 문화 조성, 글로벌 선도 미래선제기술 확보 등을 위해 7대 핵심과제 선정
 - * ① 우주항공 혁신 기반 마련, ② 우주항공경제 생태계 조성, ③ 민간주도 우주수송으로 전환, ④ 첨단위성 개발·발사로 우주산업 기회 확대, ⑤ 글로벌 우주과학탐사 본격화, ⑥ 항공 전략기술 확보, ⑦ 국제협력 주도·다변화로 글로벌 진출 지원
- **우주예산 규모 작고 위성·발사체 관련 기술 낙후 → 글로벌 우주경쟁 참여 불가**
 - 한국 우주예산은 미국의 0.86%, 중국의 3.7%, 러시아의 16.2%, 일본의 19.4%
 - * 우주예산 : 한국(6억\$), 미국(695억\$), 중국(161억\$), 러시아(37억\$), 일본(31억\$)
 - 발사체 핵심기술인 대형엔진, 우주관측센싱 기술이 우주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
 - * 대형엔진 기술(미국 100% 기준) : 중국(86%), 일본(82.5%), EU(80.0%), 한국(55.0%)
 - * 우주관측센싱 기술(미국 100% 기준) : EU(92.5%), 일본(81.0%), 중국(80.0%), 한국(65.0%)

주요 국가 우주예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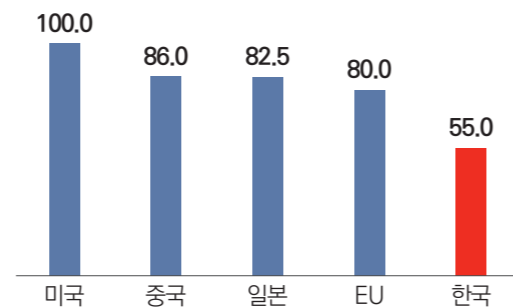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자료 : 우주산업실태조사(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23년)

발사체 대형 엔진 기술 수준(미국 100% 기준)

(단위 : %)



자료 : 기술수준평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2년)

정책제안

- **(전략) 위성통신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
 - IT제조 강국의 역량을 바탕으로 우주산업에서 7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지상장비, 위성통신 서비스 등 위성통신 산업에 집중 투자 필요
- **(예산) 글로벌 우주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 예산 투자 필요**
 - 경제력의 한계로 많은 예산을 당장 투입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27년까지 정부 계획대로 최소한 연 1.5조 원의 우주 예산 확보 추진
- **(사업 방식) 민간 주도 우주개발 추진**
 - 국책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민간으로 파격적으로 이전하고, 우주개발을 국책연구소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
- **(지원 방안) 우주 관련 정보 민간 공개 및 관련 기술 개발 지원 강화**
 - 안보와 관련 없는 정부·공공 위성 영상을 민간에 대폭 공개하고, 위성·발사체·AAM(Advanced Air Mobility)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지원

6-2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현실진단

- **글로벌 로봇산업은 급속하게 성장중**
 -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 로봇 수요 증가에 따라 '26년에는 시장규모가 741억 달러(약 10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하나금융연구소, '23)
 - 특히, AI 기술혁신에 따라 휴머노이드 로봇이 단기간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요 기업들이 로봇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
- **로봇산업은 국가경제 전반에 혁신을 촉진하는 1석 3조의 미래산업**
 - ① 제조현장 생산혁신 및 서비스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② 생산인구 감소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산업재해 감소, ③ 국가첨단전략산업과 융복합 시너지 효과
- **우리나라 로봇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실정**
 - 제조용 로봇산업 종합 경쟁력, 주요 6개국 중 5위 수준(산업연구원 '21)
 - * 일본(96.8점) > 독일(91.6) > 스위스(84.4) > 미국(79.9) > 한국(73.8) > 중국(73.3)
 - 제조용 로봇산업 기술 경쟁력, 주요 6개국 중 6위 수준(산업부, '24)
 - * 일본(97점) > 독일(94.8) > 스위스(87.2) > 미국(80.6) > 중국(73.6) > 한국(67.2)
 - 우리나라 로봇산업 부품 국산화율은 44% 수준에 불과하고, 로봇 핵심부품인 감속기 등 구동부의 수입 비중은 80.4% 수준(산업부, '24)
- **중국은 정부의 로봇산업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급성장**
 - '27년 세계 최고 기술력 달성을 목표로 정부, 대학,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국가 로봇 생태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보조금 지급 등 전방위 지원
 -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 전세계 100여개 상장사 중 56%의 기업이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실정
- **중국, 일본이 국내 로봇시장 잠식 : 중국(서비스 로봇 및 산업용 로봇), 일본(산업용 로봇)**
 - 중국 기업들은 저가를 앞세워 국내 청소·서빙 서비스로봇 시장을 빠르게 장악
 - * "한국 내 서빙 로봇의 70%가량이 중국산 추정"(Financial Times, '23.8.27)
 - 자동차·전자제품 공장 등 제조에 투입되는 산업용 로봇은 소수 글로벌 기업이 과점
 - * 스위스의 ABB(21%), 일본의 가와사키(9%), 화낙(8%), 야스카와(5%), 중국(독일 기업 인수)의 쿠카(9%) 등 5개 기업이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의 52% 차지

- **우리나라 로봇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M&A 활성화 필요**
 - 해외 유망 로봇 관련 기업 인수를 통해 국내 로봇산업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해외의 우수한 기술과 인재 확보 가능

정책제안

- **공공 부분 국산 로봇 보급 확대**
 - 공공병원의 재활 로봇, 우체국의 택배 로봇, 지자체 쓰레기 수거 로봇 등 국산 로봇을 우선 도입해 초기 수요 창출
- **中 우회수출 방지 제도 보완 및 저가 수입 로봇 규제 수단 마련**
 - 중국·일본 업체들의 저가 공세를 모니터링하고, 반덤핑 조사·관세 인상·보안성 검사 등 방어조치 적극 추진
- **국산 첨단로봇 핵심 기술·부품 실증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
 - 특정 산업단지나 연구단지를 휴머노이드 특구로 지정하고, 국산 부품·SW를 장착한 로봇 운행과 데이터 수집을 임시 허가하여 실증 기회 확대
-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로봇 관련 기업 인수시 세제지원 필요**
 - 국내 기업이 인수 또는 지분투자한 해외 로봇 관련 기업(피합병법인)의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해당 산업연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허용
 - * 기술가치 금액 :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확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등(조특법 시행령 제11조의3)
 - * 유사 제도(기술혁신형 합병 세액공제) : 기업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한 경우 해당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조특법 제12조의3)

6-3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1 바이오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확대 지정

현실진단

- 바이오산업은 보건 안보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신약 개발 성공 시 신시장 창출, 기술수출 등 막대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 유망 신산업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에 제약·바이오 분야는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이 지정되어 있으나, '합성의약품' 분야는 미지정('21.7월 백신 지정, '23.7월 바이오의약품 지정)
 - 의약품은 제조방식을 기준으로 '바이오의약품'과 '합성의약품'으로 분류
 - * ① 바이오의약품 :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 생물체에서 유래된 단백질을 원료·재료로 제조(인슐린, 성장호르몬 등)
 - ※ 백신은 바이오의약품의 한 분류로 특정 질병에 대한 면역을 부여하는 의약품
 - ② 합성(화학)의약품 : 화학합성에 의해 화학물질로 제조하는 의약품(아스피린, 타이레놀 등)
- 최근 유전자·세포치료제와 같은 바이오의약품 분야가 각광받고 있지만, '합성의약품' 분야는 국내 신약 파이프라인의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신약 개발 치료 접근법(Modality)
 - * '23년 국내 혁신신약 파이프라인(국가신약개발사업단) 총 1,650개 중 △합성신약(665개) △바이오신약(728개)이며,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는 전체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30%에 불과('21년 전체 1.4조 달러 중 0.4조 달러 수준)
- 글로벌 빅파마들도 합성의약품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및 다각화에 적극적인 상황. 국내 기업은 꾸준한 합성신약 개발 노력을 통해 글로벌 기술수출(L/O) 성과를 창출 중
 - * ('23.11월 종근당) 노바티스에 신약 후보물질 CKD-510, 13.5억 달러 규모 기술수출 계약 체결 ('24.1월 LG화학) 리듬파마슈티컬스에 비만치료제 신약 후보물질, 3억 500만달러 규모 기술수출 계약 체결

정책제안

- '백신', '바이오의약품'으로 한정된 국가전략기술을 '합성의약품' 분야까지 확대 지정
 - * 예시 : '백신', '바이오의약품' 및 '합성의약품'을 포괄하여 '의약품' 분야 기술로 지정
- 합성의약품 분야 R&D 세제지원 강화를 통해 관련 신약 개발 역량 및 산업경쟁력 강화
 - * 하나의 신약 개발되기까지 많은 R&D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약 개발 경험 부족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R&D 세제지원 강화 필요
 - ▶(신약개발 기간) 10~15년, ▶(신약개발 비용) 1조원~2조원, ▶(성공확률) 1만개 후보물질당 1개

2 글로벌 보건기구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강화

현실진단

- '25년 외교부 예산 약 4조 3,000억 원 중 ODA 비중은 2조 8,492억 원으로 '24년 대비 약 2% 증가한 반면, 글로벌 보건기구 ODA 예산은 감소
 - 개도국 질병 예방 및 글로벌 보건기구 지원을 위해 조성된 '국제질병퇴치기금'이 '25.1월 폐지되었고, 글로벌 국제 질병 퇴치 사업의 대체재원으로 마련된 '국제기구사업분담금' 내 글로벌 보건기여 예산도 감소
 - * 글로벌 보건기여 예산: ('24) 598억 원→ ('25) 481억 원
-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종감염병 팬데믹 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글로벌 보건기구 지원 금액 감소는 해당 기구-백신·바이오 기업의 협력 체계 구축에 부정적 영향
 - 최근 국내 신종감염병 발생주기가 짧아지는 추세로, 전문가들은 넥스트 팬데믹이 조기에 발생할 가능성 전망
 - * 발생주기: ('03)사스 → 6년후 ('09)신종플루 → 6년후 ('15)메르스 → 4년후 ('19)코로나19
 - 신속한 백신·치료제 개발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글로벌 보건기구 협력 시 타 선진국 대비 韓이 후순위 배정될 가능성 존재
- 글로벌 보건기구 ODA 증대를 통한 韓 기업 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백신 주권 강화 및 팬데믹 대응 역량 향상 견인
 - 글로벌 보건기구와의 협력은 기업의 선진 R&D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바, 해당 기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긍정적 관계 형성 기대
 - 또한, ODA 중 보건 영역 예산 증대는 백신의 안정적 수요 확보를 통해 국내 바이오 산업 육성에도 큰 기여

정책제안

- 넥스트 팬데믹 대비 신속한 백신·치료제 개발 협력 위해 우리 정부의 글로벌 보건기구 대상 ODA 증액 요청
 - 특히, 보건의료 R&D 기반 구축 강화 활동을 하는 글로벌 보건기구에 대한 ODA 예산(국제기구사업분담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원할 필요
 - * 감염병혁신연합(CEPI)은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 韓기업·기관에 총 약 \$4억 지원하였으나, 우리 정부의 CEPI 지원액은 '23년 \$2,400만→ '24년 \$1,800만→ '25년 약 \$900만에 불과
 - * 반면,日정부, CEPI 대상 다년도('22~'26년) 편당 공약(총 \$3억)

6-4 미래형 친환경 선박 지원 확대

현실진단

- 친환경 선박 기술을 선도하는 미주·유럽을 추격하고 중국과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의 육상 실증을 통해 기술력과 품질을 검증할 필요
 - (유럽) 전기추진 선박 상용화 완료('15년~)
 - * 노르웨이, 세계 최초 전기추진 카페리선 운항('15년), 전기추진 자율운항 벌크선 운항('20년)
 - * 유럽 조선소(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33년까지 6만 GT 이상 대형 전기추진 크루즈선 37척 인도 예정
 - (중국) 국영조선소 주도, 전기추진 기자재·패키지 연구 및 실증 진행 중
 - * 세계 최초 전기추진 대형 여객선 및 소형 컨테이너선 인도('22년), 세계 최초 순수 배터리 추진 컨테이너선 인도('23년)
 - * 한·중간 친환경 기술격차 경과 : 6.8년('12년) → 3.2년('16년) → 1년 미만('23년)
- 정부 주도의 암모니아 벙커링선 발주 및 전기추진 실증센터 구축(목포 외 4개) 등이 있지만, 전기추진 체계의 향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실증센터 추가 구축 필요
 - * (구축중) 목포시 친환경 전주기 혁신기술 사업 : 배전부·추진부에 한정된 실증센터
 - (추진중) 울산광역시 전기추진 체계 실증센터 : 목포시 사업과 달리 발전부·배전부·추진부를 검증할 수 있는 통합센터로 구성 계획하고 있으나 예산 미확보
- 숙련공 부족 및 인건비 상승 등 조선업 인력난이 지속되어 국내 조선소 디지털화, AI 기술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
 - * 조선업 인력규모 : 약 20만 명('14년), 10만 명 미만('22년)
-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국 조선소에 국내 선사들의 선박 발주가 지속적으로 증가
 - * 국내 선사 對중국 선박 발주 현황 : 연평균 3~4척('20~'22년), 벌크선 12척, PCTC 7척(이상 '23년), PC선 10척('24년)
 - 향후 국내 선사들의 고부가가치 선박(LNG, DF추진선 등) 경쟁국 발주가 증가할 경우, 국내 조선사 기술 경쟁력 약화 예상

정책제안

- 미래 친환경 전기추진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한 실증센터 구축
 - 대형 화물선의 전기추진 체계 적용을 고려해 수십 MW급 규모의 발전부·배전부·추진부를 검증할 수 있는 통합 실증센터 구축 필요
 - 국내에서 개발 중인 연료전지와 통합된 전기추진 선박 적용을 위해 중소형 연안 선박 대상 실증선 신조 사업선 추진 필요, 향후 대형 선박 적용 조기 달성
- 인건비 절감을 위한 무인 자율운영 조선소 구축 재정 지원
 - LNG 화물창 레이저용접 기술, 선행도장 무인 자동화 기술 등 무인자율운영 조선소 관련 정부 주도 투자 및 국책과제 시행
 - * '30년 기준 필요 인력의 22.6% 감축 가능(고속선 노동자 대체)
- 스마트 물류 시스템 및 창고 개발·개조 비용 지원
 - GPS 및 로봇 기반의 자동 물류 시스템을 통해 야간에도 자재를 자동으로 분류, 운송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 구축
 - * 야간 운반 가능 및 배송 자동화로 매출 상승, 사고 경감, 인건비 및 탄소배출 절감 등 효과
- 3D 스캐너를 통한 가상 환경의 연구시설 조성
 - 인력이 필요한 시운전 대신 3D 스캐너를 통해 선박 외부 모델링 및 엔진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지원
 - * 선박 인도 기간 단축, 인건비 및 탄소배출 저감 등 통해 글로벌 경쟁국 대비 기술 격차 확보
- 친환경선박법* 내 국적선 구입 시 추가 지원 조항 추가
 - * 환경친화적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6-5 방산, CCUS 분야 국가전략기술 지정

현실진단

- 방산,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등 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지원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한계
 - 방산, CCUS 기술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의 하위 단계인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4조)
 - * 국가전략기술은 일반 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R&D 및 시설투자에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 (ex. R&D 세액공제율 : 대기업 기준(일반 기술) 0~2%, (신성장·원천기술) 20~30%, (국가전략기술) 30~40%)
-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시장 선도를 위해서 보다 과감한 정부 지원 필요
 - (방산) 추진체계, 군사위성 등 방산기술은 전 세계에서 일부 국가만 보유한 핵심기술로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육성이 긴요
 - *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첨단기술 미확보 시 기술 경쟁력 하락, 수출통제 등으로 자주 국방력 강화와 방산 수출 제약 가능성

첨단 항공엔진 기술분야 사례

- 우리나라는 4.5세대 전투기 시험비행에 성공
-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 참여), 인도(25년 시제기 출시 목표), 스웨덴 등은 5세대 전투기 개발 중
- 일본(영국, 이탈리아 참여)은 '35년까지, 독일(프랑스, 스페인 참여)은 '29년 첫 시험비행을 목표로, 미국은 '30년 F-22 대체를 목표로 6세대 전투기 개발 진행 중

- (CCUS) 기술의 중요성은 높으나, 국내 기술 수준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기업의 R&D 참여 및 사업화 실적은 미미
 - *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이 낮고 탄소 저장 부문 원천기술 확보가 미흡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대비 80%, 기술격차는 5년('21년, KISTEP)

해외 주요국 CCUS 관련 세제지원

- (美) '08년부터 CCUS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45Q tax credit 제도 시행, '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을 통해 CCUS 관련 인센티브 부여
- (캐나다) '22년 2030 ERP(Emission Reduction Plan) 발표 이후 세액공제를 통한 정부의 CCUS 전폭 지원 → (세금 공제율) DAC(공기 중 직접 포집) 60%, (DAC 제외 탄소 포집 프로젝트) 50%, (수송, 저장, 이용) 37.5% 등

-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9대 분야*)은 R&D 및 시설투자에 일반 기술·시설보다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
 -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미래형 운송수단, 인공지능
-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은 세액공제 방식으로서, 당해 적자 발생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없을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 적용 불가

정책제안

- 미래 안보와 기술 주권 확립, 미래 시장 대비를 위해 2개 분야 및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6-6 첨단전략산업 직접환급, 제3자 양도 허용

현실진단

-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투자시 당해 연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첨단 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제도 실효성 미흡
 - 첨단산업은 대규모 초기 투자와 지속적인 R&D가 필요해 단기간 영업이익 내기 힘든 구조로, 이익이 없어 법인세 발생하지 않은 기업은 당해 세액공제 불가능
 - 공제금액 최대 10년까지 이월 가능하지만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기에 실질적 혜택이 절실
- 미국·프랑스·캐나다 등 주요국은 각국 상황에 맞게 세액공제 직접 환급, 제3자 양도 규정, 생산세액공제 등 첨단산업 육성 지원책 시행 중
 - (미국) IRA 세액공제 : 미국내 배터리 및 관련 핵심 광물 생산기업에 생산량 기반해 세액공제 금액 직접 환급 또는 다른 납세자 양도 가능
 - (프랑스) 녹색산업 투자세액공제 : 태양광, 이차전지 등 친환경 사업 생산설비 투자액에 대해 법인세 상쇄 후 초과된 세액공제액 현금 지급
 - (캐나다) 청정기술 투자세액공제 : 청정기술 관련 투자시 세액공제액(투자액의 최대 30%)에 대해 현금 환급

정책제안

- 국가전략기술 투자 직접환급제 및 제3자 양도·판매 허용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액 중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직접환급(Direct Pay)해주는 방식으로 개정
 - 미공제금액을 제3자에게 양도·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업간 세액공제 거래 활성화하고 투자 재원 확보의 유연성 제고
- 국가전략기술 분야 이월공제 유예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국가적 '百年大計' 산업 발전 위한 투자 독려 강화 필요
 - 이차전지, 반도체,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은 상업화 시점까지 10년 이상 소요됨
 - * ① 투자유치 ② 개발 ③ 허가(임상 등) ④ 상업화(유통) ⑤ 수출 후 매출 발생하며, 백신의 경우 식약처 임상-허가-출하까지 평균 12년 소요
 - 반면 조특법(144조) 상 모든 세액공제 관련 조항은 이월공제를 10년으로 명시하여, 정부의 투자 독려 의지에 따른 정책 혜택을 온전히 받고 있지 못함
 - 따라서 이월공제 유예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하여 투자 독려 강화 필요

6-7 첨단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현실진단

- 글로벌 경쟁국들(미국·일본 등)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자국 기업을 지원 중이나, 한국은 관련 지원 부재로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에 한계

첨단산업 생산 세액공제 사례

- 미국 :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 ▶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및 관련 핵심 광물 생산기업의 생산량에 기반한 세액공제 제공
 - [배터리 셀] : 35달러/1kWh, [배터리 모듈] : 10달러/1kWh, [핵심광물] : 생산비용의 10%
 - 2030년까지 100% 제공 후 단계적 축소(2032년 종료)
 - 납세자가 세액공제 금액만큼 직접 환급받거나, 다른 납세자에게 양도 가능
- 일본 : 전략분야 국내생산 촉진세제(일본판 IRA)
 - ▶ 전기차·이차전지, 반도체, SAF(지속가능항공유), 그린 케미칼(화학), 그린 스틸(철강) 등 5개 분야에 대해 일본 내 생산량에 비례하여 반도체는 법인세의 20%, 나머지 4개 분야는 40%까지 공제
 - [SAF] : 30엔/리터, [그린 스틸] : 2만엔/톤, [전기 자동차] : 40만엔/대

- 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앞세워 자국 내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중
- 우리나라 첨단산업 기업들의 기술력은 높은 수준이나,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가격 등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
 - *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투자를 지연하거나, 해외 진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자본과 일자리 유출로 이어질 우려
- 국내 첨단산업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원가 경쟁력 격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 도입 필요

 정책제안

- 적자 기업에 대한 해당 세액공제의 현금 환급 허용
 - (공제 대상) 국내에서 생산하여 내수 및 수출에 활용되는 제품
 - (공제율) 제품 생산비용×(국가전략기술) 15%, (신성장·원천기술) 10%
 - (공제 한도) 당해연도 법인세×(국가전략기술) 10%, (신성장·원천기술) 5%
 - (일몰 기한) '30년까지 적용

6-8 첨단전략산업 보조금 및 인프라 지원

 현실진단

- 반도체 분야의 경우 경제적 영향은 물론 국가 안보에도 직결되어 美·日·유럽 등 경쟁국은 정부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지원 中
 - 美 CHIPS Act 527억 불, EU CHIPS Act 430억 유로 지원 예정, 日, 보조금 법률을 제정해 자국 내 시설투자의 최대 50% 지원
- [투자보조금] 글로벌 주요 경쟁국은 반도체 산업 자국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 보조금을 늘리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지원 전무
 - 직접 보조금 수혜는 원가경쟁력에 직결되는 바 국내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
 - * 1개 라인 건설에 골조, 인프라 등 약 45조 원 이상 투자 및 파일 착공부터 양산까지 3년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되며, 연간 투자의 85% 이상이 국내에서 발생

주요국 반도체 보조금 지원 정책

미국	중국	일본	EU	대만	한국
68조 원 (527억 달러)	101조 원 (5,428억 위안)	매년 10~20조 원 (1~2조 엔)	62조 원 (430억 유로)	-	-

- [인프라 지원] 전력·용수·폐수·도로 등 필수 인프라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예산 투입 및 구축 절실
 -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구축해 적기에 공급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 *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프라 시설이 적기에 조성되지 않을 경우, 생산시설 가동 지연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 저하 우려

주요국 반도체 인프라 관련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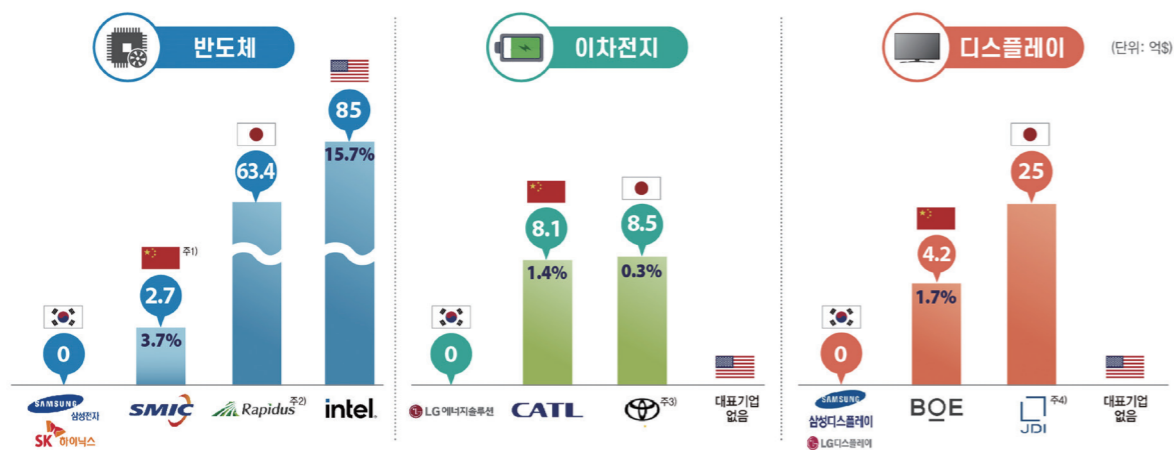
미국	중국	일본	EU	대만	한국
○ 전력/용수 정부가 구축·제공	○ 전력/용수 정부가 구축·제공	-	-	○ 전력/용수/통신 정부가 구축·제공	-

정책제안

●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경쟁국 수준의 보조금·인프라 지원 긴급요

- **반도체** 美 CHIPS Act 527억 불, EU CHIPS Act 430억 유로 지원 예정, 日, 보조금 법률을 제정해 자국 내 시설투자의 최대 50% 지원
- **디스플레이** 韓 보조금 0원, LCD에 이어 OLED 시장까지 주도권 상실 위기
 - * 한국은 현재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OLED 부문에서 중국 대비 미세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과 투자 앞에 위태로운 상황
- **이차전지** 美 진출기업 혜택 제공 통한 생산 벨류체인 확보·中 보조금 등 장기 지원·日 연구개발 보조금 투입, 韓 보조금 0원·시장 점유율 하락추세

국가 산업별 대표기업 자국 보조금 규모 및 매출액 대비 보조금 비율('23년 기준)



주1) 정부·국영기업(SMIC 지분율 31.1%, CATL 39.2%, BOE 20.2%)을 통해 공식 보조금 외 생산시설 증축 및 R&D 예산 등을 우회적으로 지급받고 있음(중국투자공사와 같이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가 국영 기업이거나 지방정부, 공산당 간부인 경우에도 정부 지분으로 계산)

주2) '22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매출이 없음

주3) 파나소닉이 일본 대표 이차전지 제조업체이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사례가 없으며, 도요타 배터리(이차전지) R&D 부문이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음

주4) 日정부 주도로 소니 도시바 히타치의 LCD 부문 통합('12년)
 합작 당시 민관펀드인 산업혁신기구(INCJ) 2,000억엔(당시 환율 기준 25억\$) 출연
 환율 : 연평균 환율('23년)
 자료 : 기업별 결산보고서 및 국가별 정책발표 종합('23년)

6-9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기술개발 지원

현실진단

●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생분해 플라스틱의 퇴비화 기술 미포함

- * 신성장·원천기술 포함 시, 일반 기술에 비해 R&D·시설투자에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
 ex. R&D 세액공제율 : 대기업 기준(일반기술) 0~2%, vs. (신성장·원천기술) 20~30%
- 현재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생분해 플라스틱 퇴비화 기술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고성장이 예상되는 생분해 플라스틱 퇴비화에 대한 국제적 지원 트렌드와 달리 한국은 관련 인센티브 미비로 기술 개발 및 퇴비화시설 설립 난항

-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 능력('22년 86.4만 톤)은 '28년에는 460.5만 톤으로 '22년 比 5.3배 성장 전망('22~'28년 연평균 성장률 32.2%), 시장규모 약 30조원 전망('26년 기준)
- 플라스틱의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 대체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생분해 플라스틱이 대체품으로 고려되고 있는 상황
 - * 유엔환경계획(UNEP)은 국제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 제정을 목표로 '플라스틱 오염 감축을 위한 범정부 협상 위원회(INC)' 구성('22.3월)
 - * 美 연방 상원은 플라스틱 재활용 및 퇴비화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을 수립·평가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24.3월)
- 생분해 플라스틱의 고유 목적을 고려할 때 소각이 아닌 매립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이 요구되나, 매립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비화시설 설립 난항

정책제안

● 생분해 플라스틱의 퇴비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

- 해당 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 부여

● 퇴비화 시스템 마련 등 인프라 구축 및 환경표지 인증기준 세분화 필요


21대 대선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7

새로운 산업의 이식 - 서비스산업


- 1 서비스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
- 2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전략
- 3 혁신성장 연계 MICE산업 육성
- 4 수출입 물류 디지털화 추진
- 5 물류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 ① 시장 친화적 화물 운임 시스템 마련
 - ② 부산항 컨테이너 반입 허용기간 확대
 - ③ 물류·화물운송 업계 역량 강화 지원
- 6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지원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KEF 한국경영자총협회

 FKI 한국경제인협회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현장의 목소리

서비스 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가 필요합니다.

“K-Pop, K-Cosmetic, K-Drama, K-Food 등 전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 국가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관광이나 수출 산업을 개발, 지원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30대 직장인

“고용흡수력이 높은 지식기반 산업, 사회서비스 산업 등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40대 직장인

물류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MICE산업도 육성해야 합니다.

“스마트 물류 허브를 조성하면 어떨까요? 디지털 트윈 기술 등을 활용한 국제물류 단지 가상화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20대 학생

“물류 및 제조 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0대 직장인

“MICE 산업은 관광, 서비스 산업 등 다른 산업과 연계 효과가 높습니다. 경쟁력 높은 MICE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30대 직장인

7-1 서비스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

현실진단

-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기반 미비
 -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진입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
-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70% 이상이나, 한국은 60% 내외 수준으로 주요국 대비 저조
 - *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22년, 세계은행) : 美77.6%, 英72.2%, 日71.4% vs. 韓58%
 - 서비스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2배로, 제조업-수출에 편중된 한국경제 구조 개선과 질적 도약을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음
 - * 부가가치유발계수('20년, 한국은행) : 서비스업 0.89 vs. 제조업 0.67
고용유발계수(명/10억 원, '20년, 한국은행) : 서비스업 8.62 vs. 제조업 4.74
- 역대 정부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표방하였으나,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실패
 - 서비스산업 발전은 장기비전 下 지속적·체계적 접근을 통해 달성가능

정책제안

- 서비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조속 제정
 - 경제 선진국일수록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및 고용 비중이 확대되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 중
 - * 서비스업 고용 비중('21년, 통계청) : 英 81%, 美 79.2%, 佛 78% vs. 韓 70%
 - 의료·보건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민감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 분야에 우선 적용하는 방향으로 신속 통과 필요. 이를 통해 중장기 로드맵 설정, 세제 혜택, 자금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산업 지원책 가능

7-2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전략

현실진단

- 상품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분야 수출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 상태
 - 최근 10년간 세계 경제에서 서비스 수출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
 - * 수출액 연평균증가율(% , '13년~'23년) : 서비스(5.0), 상품(2.3)
 - * 세계 GDP 대비 수출 비중 변화(% , '13년~'23년) : 서비스(6.2 → 7.4), 상품(24.4 → 22.4)
 - 독일·일본 등 우리와 같은 제조업 강국들은 서비스 수출을 빠르게 확대하는 데 반해, 우리 서비스 수출은 답보 상태이며 서비스 수출 순위는 세계 18위에 불과

주요국 서비스 수출경쟁력 비교

구분	한국		독일		일본		중국	
	'13년	'23년	'13년	'23년	'13년	'23년	'13년	'23년
서비스 수출 비중(%)*	15.5	16.5	15.6	20.1	15.6	22.0	8.5	10.1
서비스 수출 순위	16위	18위	3위	3위	9위	10위	5위	5위

주 : 해당국 총수출 대비 서비스 수출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 WTO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

- 제조업과의 연계를 통한 제조-서비스 융합 수출도 부진한 상황
 - 전체 서비스 수출 중, 제조업 연계 서비스의 수출* 비중은 주요국 중 최하위
 - * 유지보수·지식재산권·ICT·가공·R&D 등 5개 서비스 수출 비중(% , '23년) : 중국(37.4) > 일본(34.3) > 독일(33.3) > 한국(21.1)
 - 제조기업들의 디지털 서비스(AI·ICT 등) 수출 또한 미진
 - * 제조업 수출 중 디지털 서비스 비율(% , '18년) : 네덜란드(93.0) > 독일(67.0) > 중국(60.0) > 일본(55.0) · 한국(55.0)
- 우리 서비스 산업은 ①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부재, ②수출에 대한 인센티브 미비, ③높은 규제 수준 등의 과제에 직면
 - (법적 기반) 서비스 산업 육성 및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의 법적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1년 최초 발의되었으나, 여전히 계류 중
 - (인센티브) 서비스 수출에 대한 R&D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가 부족, 이에 서비스 기업들의 수출은 물론 제조 기업들의 서비스 융합 수출 또한 미진한 상황
 -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율 구간은 기업 규모 (중소·중견기업 등) 및 기술 유형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일반 등) 기준으로만 설정

7-3 혁신성장 연계 MICE 산업 육성

- (제도) 신규 사업자의 경우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상 2년마다 규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서비스분야의 규제 수준은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편
 - *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1에 가까울수록 규제 강도 높음, '24년) : 한국(0.228) > 중국(0.225) > OECD 평균(0.190) > 독일(0.153) > 일본(0.112)

정책제안

● [인센티브 확충] 서비스 수출기업 대상 R&D 세액공제 확대

- R&D를 통해 서비스를 수출하고 해당 용역/무체물 수출 실적을 제출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서비스 수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방안으로 법령 개정 검토 필요(조세특례제한법)
 - * 현행 세액공제율(일반 연구개발비 기준) :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등
- 중소·중견기업의 R&D 투자 확대 유도 및 세제 부담 경감이 기대되며, 제조업 등 이종 산업과의 융합 수출을 통한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 수출 트랙레코드 축적을 통한 데이터 확보 등 가능

● [제도 개선]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한 실증특례 최초 유효기간 연장

- 데이터 확보 및 신기술 실증, 관련 법령 정비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규제 샌드박스」 제도상 실증특례 최초 유효기간을 현행 2년 → 4년으로 일괄 연장 제안
 - * 현행법상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에 대해서만 최초 4년 부여, 그 외에는 최초 2년만 부여 후 규제 심의 결과에 따라 연장
- 2년 단위 규제 심의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와 행정부담 경감이 기대되고, 실증 데이터 확보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전과정에 걸친 사업방향 모색 가능

● [제조-서비스 연계 수출] 소프트파워 활용한 융합 로드맵 마련 및 제도화

- 제조기업의 서비스 투입률 제고, 서비스 생산 및 수출 확대 등 구체적인 목표가 담긴 중장기 청사진 마련 필요
-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에 K-Culture 등 소프트파워를 융합한 제조업 연계 서비스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 육성할 필요

현실진단

● 국가 무역규모 대비 MICE 산업 규모가 작고, 해외 전시회로의 유출 가속화

- 한국의 무역 규모(세계 8위)에 비해 국내 전시산업 규모는 미미
 - * '21년 한국 GDP 2,060조원, MICE 산업 4조원, 비중 0.2% (한국은행)
 - * '24년 국내 전시면적 10만㎡ 이상의 국제 인증 전시회는 2개뿐
- MICE산업은 내수 진작, 수출촉진,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관광진흥 효과 시현
 - * 독일은 연간 100여건의 글로벌 전시회로 연간 23만개 일자리 창출과 19.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전시 선진국에 비해 양적·질적 개취규모 미미

글로벌 MICE산업 현황

- (산업 규모) 전세계 1,200여개 전시장에서 연간 약 32,000건의 전시회가 개최되며, 약 450만개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 ('23, 세계전시협회(UFI))
- (매출 규모) 전세계 전시산업의 매출은 '23년 기준 약 1,410억USD(약 200조원)으로 유럽기업의 전통적 강세와 함께 전시 주최사업자가 산업 내 주요 매출을 견인
 - * 북미 610억불(84조원), 유럽 448억불(62조원), 아태 287억불(39조원) 순
 - * '23년 세계 전시사업자 매출액 순위 : (1위) 인포마켓(주최, 영국) 약 2.8조원, (2위) GL Events(주최, 영국) 약 2.1조원, (3위) RX(주최, 영국) 약 1.9조원, (4위) Messe Frankfurt(전시장, 독일) 순

● 산업혁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미미

- CES, MWC 등 글로벌 리딩 전시회들은 기술파급과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는 혁신창구로 변모하며 트렌드를 선도
- 글로벌 탑 전시회들은 다수의 제조자와 개발자, 수요자, 투자자 간 시장·기술·정보의 교류를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
 - * 독일 '하노버메세'는 전통 제조업과 정보통신 산업 및 시기술 등의 융합을 통해 스마트공장 등 '인더스트리 4.0'의 발전을 견인
- 국내 전시회는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산업협회·업종별 단체가 주도하여 개최하는 프로그램과 참가업체들의 부스 출품 유치에 치중하여 글로벌 경쟁력 열위

 정책제안

● 글로벌 Top 전시회 개최 기반 조성

① 전시육성 정책과 산업정책과의 연계 강화

- 자율주행, AI 등 시장이 미성숙한 초기 단계의 신성장 유망산업 전시회는 연관산업 이해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산업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그 안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장으로 활용

② 국내 첨단전략산업(AI, 배터리, 미래형자동차 등) 전시회가 글로벌 Top 전시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시회별 맞춤형 집중 지원

- 전시회별 맞춤형 전략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 수립
- 세계 수준의 컨퍼런스 동시 개최, 국민행사 및 해외 경제협력 사절단과 연계한 B2B 프로그램 운영 등 전시회 대형화 및 국제화 지원 확대

③ 지역경제 및 도시발전 연계 MICE산업 전략 수립

- 지자체의 산업정책 및 도시 브랜드 강화 사업과 연계한 MICE 클러스터 조성 및 전략적 행사 유치 지원
- '전시장 내 수출상담 → 산업 현장 방문 → K-컬처 체험'과 같이 비즈니스-산업-문화가 융합된 종합 전시 프로그램 도입 및 확산 지원

● 신성장 산업과 연계한 MICE산업의 역량 강화

- 전시산업발전법 상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실무 참여기관으로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를 포함하여 산업전시회 및 전시산업의 국가 수출 촉진 역할 강화 필요
- 전시회가 국내 산업의 혁신과 수출 확산을 촉진하는 핵심 비즈니스 플랫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실질적 비즈니스 성과 창출 지원
* 신성장유망분야 스타트업, 영세기업의 전시장 인프라 비용 및 활용 지원
- 전시산업의 디지털 전환(DX) 및 서비스 고도화 지원 확대
* 전시장 및 주최자가 관람객·참가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인프라 (플랫폼, AI 서비스 등) 구축을 위한 국가지원 신설 검토

7-4 수출입 물류 디지털화 추진

 현실진단

●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수출입 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

- 실시간 화물 운송 현황 정보를 제공하거나 물류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디지털 물류 서비스 등장
* 미국 Flexport社は 공급망플랫폼(The Supply Chain Logistics Platform)을 통해 최적 운송 서비스 매칭 및 실시간 화물 운송 현황 정보 제공
- 독일,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 국가들은 물류 인프라 전체의 연계 효율화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면서 물류비용 감소와 부가가치 창출에 성공
*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은 선박-항만-육상 물류 데이터가 실시간 공유되는 항만 커뮤니티 시스템(Port Community System)을 통해 연간 약 3,20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

싱가포르 NTP 사례

- 명칭 : Next-Generation Trade & Logistics Platform
- 목표 : 2025년까지 모든 무역 거래의 디지털 처리율 100% 달성을 목표
- 내용 : 통관, 선적, 보험, 금융 등 약 25개 이상의 무역 관련 문서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전자적으로 처리 가능
- 특징 : 화주, 포워더, 세관, 은행 등 40개 이상 기관이 실시간 연동
- 장점 : 업무시간 60% 단축 등 수출기업은 비용/시간 모두 절감

●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무역 강국임에도 수출입 물류 경쟁력은 17위에 불과

-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류 경쟁력은 2018년 25위에서 2023년 17위로 상승하였으나, 물류 분야의 디지털화 정도가 낮아 개선 대책이 시급
*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KMI)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표 항만인 부산항조차 세계 최고 수준에 비해 디지털화 정도가 절반 수준으로 평가(2017)
- 수출입 물류 인프라 간의 연계 역할과 축적된 데이터 활용이 미흡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불확실성 증대 속에서 예측가능한 디지털 물류 시스템 구축은 우리나라 수출입 경쟁력 제고에 긴요

정책제안

- **수출입 통합 디지털 물류 플랫폼 구축**
 - 공공 및 민간 물류데이터 공유를 통해 선박-항만-육상 물류 데이터를 통합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
- **중소기업의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운송 시스템 도입**
 - 운송 정보의 실시간 공유, 자동화된 물류 관리 등 디지털 기반 공동운송 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물류 효율 극대화
 - 국적 선사를 활용한 중소기업 전용 선박 지원 시스템 도입
- **글로벌 디지털 공동물류센터 및 물류망 구축**
 - 미주·유럽·동남아 등 주요 수출 거점에 실시간 재고관리, 출고 자동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디지털화된 공동물류센터 구축
 - 중소기업 공동 입점 및 수출 공급망 공유 프로그램으로 물류비 절감
- **디지털 물류 인력 및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 수립**
 - 항만·공항 등에 IT 전문 인력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디지털 물류 인력 양성
 - 창업 아이템 개발에서 판로구축까지 디지털 물류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 구축

7-5 물류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1 시장 친화적 화물 운임 시스템 마련

현실진단

- **안전운임제는 제도 일몰 이후 재도입 논의 중이나 시장의 근본적 우려 지속**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매년 화물운임을 고시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과해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던 제도로 '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일몰됨
 - 정부가 적절한 사회적 합의 없이 시장 가격에 개입하여 운임을 강제하는 방식은 시장경제 원칙에 과도하게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됨
 - 제도 시행 당시 적용 품목인 컨테이너 운송 요금은 최대 42.6% 인상되었고, 중복 할증 등으로 인해 수출입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

안전운임제 시행 당시 컨테이너 운임 인상 결과

구분 (직선거리)	단거리 (0~50km)	중단거리 (51~170km)	중장거리 (171~250km)	장거리 (251~350km)	물동량 비중 가중평균
40ft인상률	+40.2%	+19.5%	+31.9%	+19.0%	+27.2%
20ft인상률	+42.6%	+16.3%	+20.4%	-3.3%	+25.4%
물량 비중	49.6%	18.7%	6.9%	7.1%	

※ 제도 시행 전 '17년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값과 '22년 4월 안전운임 비교

- '24년 8월 무역협회 설문 결과, 수출기업 중 72.7%가 안전운임제 재도입이 수출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며 관련 우려가 지속되는 중
- * 안전운임제 시행이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조사
매우 부정적(20.3%), 부정적(52.4%) > 긍정적 5.2%, 매우 긍정적 0.4% (영향없음 21.7%)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로 인해 수출 경쟁력 저하 우려**
 - OECD 38개 회원국 중 화물 운임을 정부가 직접 고시해 강제하는 국가는 없음
 -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은 높은 운임 수준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 운행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여건 중심의 제도 운영을 택함
 - 이처럼, 한국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고립된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경우,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 정책제안

● 시장 친화적 운임 제도 도입

-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운임 보장과 교통안전 확보라는 안전운임제의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시장 현실을 반영한 표준운임제 형태로 전환
- 특히 화주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보다는, 운수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차주운임(위탁운임) 보장을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

● 운송 시장 구조 개선 병행 추진

- 지입제,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실질적인 화물차주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인 시장 구조 개선을 병행

● 화물 운송 시장 이해관계자 간 협의 기반 강화

-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방적 강제가 아닌, 산업계 전반의 의견이 반영되는 협의 기반의 운임 조정 시스템 마련이 중요
- 제도 설계 과정에 화주, 운수사, 차주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교통안전과 운임제 논의 분리

- 운임제도는 화물차주의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한 장치로, 교통안전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음
- 따라서, 교통안전은 운행시간 관리, 차주 휴식 보장, 차량 점검 강화 등 별도 정책 수단을 통해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2 부산항 컨테이너 반입 허용기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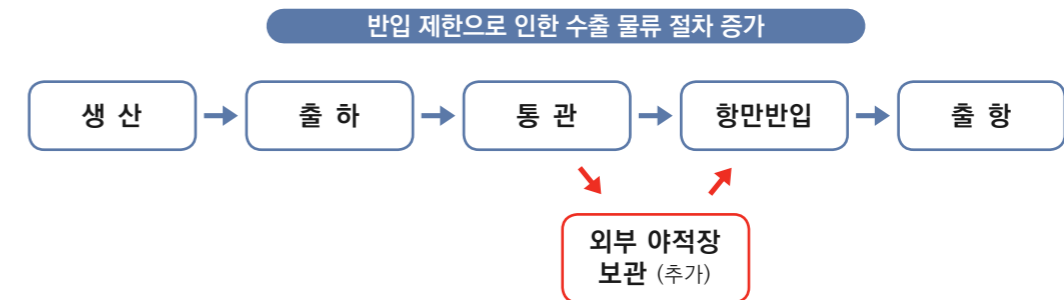
🔍 현실진단

● 부산항은 전국 항만 중 유일하게 컨테이너 반입 허용기간을 제한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부두 내 혼잡 해소 등을 이유로 수출 컨테이너 반입 허용기간을 '선박 접안일 기준 10일 전'에서 현재 '3일 전'까지 축소
- 수출 컨테이너 반입 허용기간이 짧을수록 컨테이너를 항만에 늦게 반입해야 하므로, 사전 물류 준비에 제약이 생기고 별도의 외부 보관비용이 발생함

● 물류 절차 복잡화 및 비용 가중

- 반입일 제한으로 인해, 수출 물류 프로세스 상 '외부 야적장' 보관 절차가 추가되어 수출기업은 야적장 보관료 및 추가 운송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
- 현재 통관 완료 후 외부 야적장에서의 평균 대기일수는 약 7일에 이르며, 물류 절차가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복잡화됨



● 서류 작성의 정확성 저하 및 행정 반복 문제 발생

- 선사에 제출하는 선적지시서(SI)와 총중량 확인서(VGM) 등 필수 서류 마감일이 컨테이너 반입 허용일보다 빨라, 수출 신고 진행 시 부정확한 추정값을 기재
- 그 결과, 수출 신고 정정에 따른 관계기관 행정부담이 증가하고 현장에서 불필요한 업무 반복이 발생하고 있음

💡 정책제안

● 부산항 수출 컨테이너 반입 허용기간 확대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일까지 줄어든 현재 부산항의 수출 컨테이너 반입 허용 기간을 '선박 접안일 기준 7일'로 정상화
- 美 관세 부과 조치 이후 4월 수출이 5.2%, 대미 수출이 14.3% 감소한 상황에서, 수출 물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크게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관세 부과로 인해 향후 중국발 환적 화물이 줄면 항만 내 적치율이 낮아져, 수출 컨테이너 반입 허용기간을 늘리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 반입 허용기간에 대한 기준 단일화

- 수출 화물 컨테이너 반입 허용기간을 수입 화물과 동일하게 7일로 조정하여 수출 물류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수출입 기업 간 형평성을 제고
- 또한, 일부 항만 운영사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반입 허용기간에 차등을 두는 것을 통일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
- 충분한 반입 허용기간을 확보하면 화물 정보를 사전에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어, 수출기업은 물론 세관, 선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업무 효율성 증대
- 불필요한 서류 작업과 수출 신고 정정을 반복하는 문제를 해결해 항만 물류 프로세스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물류·화물운송 업계 역량 강화 지원

🔍 현실진단

● 물류시설 노후화 지원정책 부족 → 물류 경쟁력 저해 및 산업재해 위험 증대

- 전국 물류창고 중 약 36.3%가 2000년 이전 준공(20년 이상 경과) → 노후화 심각
 - * KOTI(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도 도입 방안 발표자료('20.11.27)
- E-커머스 성장, 풀필먼트 수요 확대 등으로 '물류 인프라 첨단화'가 필수이나, 노후 창고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국가 물류경쟁력 저하
- 자동화 미비로 노동강도 과중, 열악한 작업환경 → 산업재해 위험 증가
- 물류시설 인프라 개선의 경우 정책지원 사각지대에 있어 업계 투자여력 한계

● 영세 화물차 운전자 지원 부족 → 화물운송시장 경쟁력 약화 우려

- 연료비 등 운송비 부담 지속 상승 → 영세 화물차 운전자 혜택 저하
- 기존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의 경우 낮은 할인율로 야간운행 유인 부족
 - 제도 도입 취지인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효과' 미비

● 해외 진출 국제물류 업계 정책지원 부족 →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저하

- 우리나라 물류시장은 미국·유럽 등에 비해 성숙도가 낮고, 국제 물류 분야 글로벌 경쟁력 미흡
 - * 세계은행,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 한국 17위 ('23년)
 - * A&A 글로벌 3PL 기업 순위, CJ대한통운 20위, LX판토스 25위 ('24년)
 - * 1PL : 제조·판매기업 자체 물류 수행 / 2PL : 제조·판매기업 자회사 물류 수행 / 3PL : 제조·판매기업 → 전문 물류기업 물류 업무 위탁 수행
- 글로벌 해운시장의 과점화 심화로 국제운임 변동성 확대, 민간 수출입 기업들의 단독 대응 한계 지속
 - * 상위 9개 선사가 전체 선복량 87% 점유(국적선사 HMM 3.9% 불과) → 과점 심화
-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대형 3자물류(3PL) 기업 기반으로 해운사 협상력 강화 및 복합운송 기반 종합물류체계 구축 확대

💡 정책제안

● 노후 물류창고 첨단화 지원사업 신설 →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노동환경 개선

- 화물 분류장비(휠소터, 자동 화물 정렬기) 도입 지원 통한 자동화 확대
- 택배 화물 상·하차 보조장비 도입 지원 → 물류센터 노동자 노동강도 완화

● 화물운송업계 지원 위한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 할인율 확대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개정
- (참고) 제도 확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의견(국토해양팀, '25.3.13.)
 - 화물연대 중심, 화물운송시장의 지입제 중심 경영구조와 다단계 알선·거래구조에 대한 정부 대책을 지속 요구한 것이 제도 도입의 직접적 배경
 - 교통물류 정책보다는 영세 화물차 운전자 소득지원·소득분배 정책 성격이 강함.
 - 제도 시행 후 주간 교통량 감소 및 혼잡 완화에 일부 기여했으며, 교통량 기준 심야시간대 사고율도 감소해 제도 확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국제물류산업 정책지원 확대 통한 수출입 공급망 안정성 강화

- 글로벌 물류전문 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투자 활성화 유도
- 3자물류(3PL) 기반 기업 육성 위한 업종 체계 정비 및 세제 지원방안 마련

7-6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지원

현실진단

-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경 제약 느슨한 서비스 수출 중요성 부각**
 - 현재 한국의 상품수출 중심의 경제모델 하에서는 통상 압박 불가피
 - * '23년 한국 총수출 중 상품수출 비중: 83.7%(전세계 평균 74.4%)
 - 전세계적으로도 지식재산권 등 포함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 증가 추세
 - * 글로벌 지재권 수출(천억\$): ('04) 1.38 → ('10) 2.43 → ('16) 3.37 → ('23) 4.86
- **日·獨 등 주요 제조강국은 이미 전략적으로 지식재산권 수출 비중 높이는 중**
 - 반면, 한국의 지재권 수출은 총수출 중 1.2%로 미미한 수준
 - * '23년 총수출 중 지재권 사용료 수출액 비중: 日 5.5% > 獨 2.4% > 韓 1.2%
-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지식재산권 활성화 필요**
 - 지재권 수출은 외부영향 상대적으로 적어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안전망 역할
 - * '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 글로벌 총수출 9% 감소 > 지재권 수출 3% 감소(IMF)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글로벌 총수출 10% 감소 > 지재권 수출 4% 감소(IMF)
 - 산업재산권 보유기업은 미보유 기업보다 매출 7.2%, 수출 39.6% 높음('23, 지재연)

정책제안

- **지식재산권 창출 인센티브 위한 '특허박스' 제도 도입**
 - 지재권으로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해 혁신활동 장려 및 수출 증대
 - * 영국·프랑스·네덜란드 등 25개국에서 '특허박스' 제도 운영 중('22)
- **IP 투자 활성화 통해 지식재산권 사업화 지원**
 - 전체 IP 금융(보증, 담보대출, 투자 등) 규모는 성장('21년 6조원 → '24년 10조원)하고 있지만 그 중 IP투자 비중은 약 1.7%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
 - 우수한 지식재산권 보유했지만 자금조달 어려운 겪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활용한 IP 투자로 실제 사업화 및 수출 지원


21대 대선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8 새로운 산업의 이식 - 스케일업


- 1 스타트업 M&A 활성화 기반 조성
- 2 벤처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CVC 제도 개선
- 3 중견기업 육성정책 강화
- 4 스타트업의 수출 지원 확대
- 5 오픈 이노베이션 통한 혁신성장 확산
- 6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 7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적합업종제도 합리화
- 8 내수 스케일업을 위한 장·단기 대책 추진
- 9 기업 규모별 차별 철폐
- 10 연구개발 및 투자 인센티브 확대
 - ① R&D 인센티브 확대 및 최저한세 제외
 - ② 토지·건물 투자도 세액공제 포함
 - ③ 임시투자세액공제 지원 강화
- 11 불합리한 유통규제 개선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KEF 한국경영자총협회

 FKI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현장의 목소리

혁신이 멈추지 않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절실합니다.

"스타트업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모험자본 유입을 유도하고,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20대 직장인

"스타트업의 혁신이 우리 경제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벤처캐피탈, 엔젤투자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30대 창업자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복잡한 규제와 자금 조달 어려움 등으로 인해 성장에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30대 전문직

성장의 사다리,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줄 수 없나요?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 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60대 남성

"기술력과 아이디어는 충분하지만 자금·인력·판로 부족으로 성장을 멈춘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사다리 부재는 국가 경쟁력의 구조적 한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0대 중견기업 임원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을 인수하여 10년 간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사업화에 성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출이 없는데 중견기업이라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60대 중견기업 CEO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는 우리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여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견·대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규제를 과감히 폐지해 도전과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30대 여성

8-1 스타트업 M&A 활성화 기반 조성

현실진단

-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 투자 → 성장 → 엑시트(Exit) → 재창업·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수
-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스타트업 투자는 '21년을 정점으로 큰 폭의 감소세'
 - CVC 투자규모는 국내 스타트업 투자 대비 약 30% 수준을 차지하나, 그 규모는 '21년 4조7,776원을 정점으로 하여 '24년 1조 9,697억원으로 감소

국내 스타트업 투자 및 CVC 투자 현황

(단위:억원, %)

국내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스타트업 투자	18,472	17,166	77,613	63,582	61,726	179,056	153,238	75,815	60,863
CVC (비중)	6,044 (32.7)	6,159 (35.9)	19,749 (25.4)	21,059 (33.1)	19,849 (32.2)	47,766 (26.7)	47,105 (30.7)	21,696 (28.6)	19,697 (32.4)

* CVC는 독립법인 CVC, 사내부서 CVC, 펀드출자 CVC를 포함한 것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보다 포괄적 의미 (스타트업얼라이언스, 2024 한국 CVC 현황과 투자활성화 방안)

- 경기침체로 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생태계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M&A를 통한 회수 활성화 및 다양한 투자자원 마련 필요
 -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업공개(IPO)가 어려운 상황에서 M&A를 통한 자금 회수 활성화가 현실적인 대안
 - VC는 정부주도 조성으로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아 한계가 있어, 중견·중소기업 등 민간기업 중심의 VC 조성 필요
- 중견·중소기업과 스타트업간 M&A 활성화 → 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에 기여
 - 중견·중소기업은 스타트업을 인수하여 신기술이나 인력, 노하우 등을 확보할 수 있어 신산업 진출 및 성장동력 확보 가능
 - M&A는 스타트업 투자자에게는 엑시트를 통해 재무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고, 창업자에게는 보상이나 새로운 창업 기회가 될 수 있어 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에 기여

정책제안

- 중견·중소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참여 확대를 위해 사모펀드 제도 개선
 - 일정 규모*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기관전용 사모펀드 출자자 자격 부여
 - * 자산 500억원 이상 또는 금융투자잔고 25억원(상장사 50억원) 이상
- VC 펀드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중견·중소기업의 CVC 결성 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스타트업 M&A시 피인수기업의 중소기업 유지기간 확대
 - 중견·중소기업이 스타트업 인수 후 중견기업으로 편입되어 증가하는 규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 10년으로 확대

8-2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 제도 개선

현실진단

- '20년 12월 말 공정거래법개정(시행 '21.12.30.)으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설립·운용 허용
- 국내에 CVC 제도가 허용되었으나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중견·대기업의 CVC 도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 '24년말 기준 CVC 현황(공정위) : 총 14개
(유형별 : 신기사 11개, 벤투사 3개 / 규모별 : 상호출자 7개, 공시대상 2개, 중견기업 5개)

CVC 관련 규제 현황

항 목	내 용	
설립 · 운용	유형 및 설립요건	· 신기술사업금융회사 : 납입자본금 100억원 이상 · 벤처투자회사 :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 상근전문인력(변호사, 회계사 등) 2인 이상, 투자 상담 전용공간 보유
	지분구조	일반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
	허용행위	"투자" 행위만 허용 (여신 등 타 금융업 금지)
	부채비율	CVC 자체의 차입 한도 200%로 제한
자금 조달 · 투자 등	자금조달	외부자금 펀드 조성 금액의 최대 40%로 제한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 출자 금지, 외부자금 중 특수관계인 출자 금지)
	투자금지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CVC 계열사, 특수관계인 출자 기업
	해외투자	해외투자시 CVC 총자산의 20%로 제한
	매각금지	총수익가 및 총수익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투자지분 매각 금지

- 벤처투자회사(벤처사)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의 기능이 유사함에도 설립요건이 상이하며, CVC의 대부분이 신기사인 것으로 나타남
- 창업기획자(Accelerator)*도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CVC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 * 초기창업기업의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외부자금 조달 제한 규제는 대기업 집단에 비해 자금 여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CVC 설립을 제약
- 해외투자 비율 제한은 해외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 및 협업 기회를 제한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차단 우려

정책제안

-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 관련 규제 완화
 - [CVC 소유 대상 확대] 창업기획자도 CVC 설립·운용 허용
 - [설립요건] 벤투사의 전문인력 고용의무를 폐지하고 신기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 완화(100억원 → 20억원)
 - [자금조달] CVC 외부자금 조달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
 - [해외투자 제한]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

8-3 중견기업 육성정책 강화

현실진단

● 중소→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견기업 육성정책 추진

-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4%에 불과하나, 전체 수출의 17.8%, 고용의 13.6%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주체

중견기업의 경제적 기여도

연도(결산)	중견기업 수(개)	매출액(조원)	수출액(억불)	종사자(만명)
2018년	4,635(0.7%)	767(15.7%)	982(16.3%)	141(13.8%)
2019년	5,007(0.7%)	782(15.7%)	936(17.3%)	149(14.3%)
2020년	5,526(1.4%)	770(16.1%)	931(18.2%)	158(13.8%)
2021년	5,480(1.4%)	852(15.4%)	1,109(17.3%)	159(13.1%)
2022년	5,576(1.3%)	961(14.4%)	1,239(18.2%)	158(12.8%)
2023년	5,868(1.4%)	984(15.2%)	1,124(17.8%)	170(13.6%)

* ()는 전체기업 대비 중견기업 비중 * 출처 : 중견기업 기본통계(중견연)

- 우리기업의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허리이자 성장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며, 일본 수출규제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도 든든한 버팀목 역할 수행

● 중견기업 육성정책으로 중견기업 수는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질적 성장은 정체

- 중견기업 정책은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부담 완화에 맞춰져 있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한계
 - 중견기업법상의 특례 지원제도 15개 중 기술보호, 국외 판로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8개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제한
 -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제지원 대상도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제한
- 중견기업 중 수출 1억불 이상 비중은 '20년 3.3%에서 '22년 4.3%로 증가했으나, 세계 최고수준 기술보유 비중은 5.6%에서 4.4%로 감소

●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보다는 산업생태계 관점에서 '성장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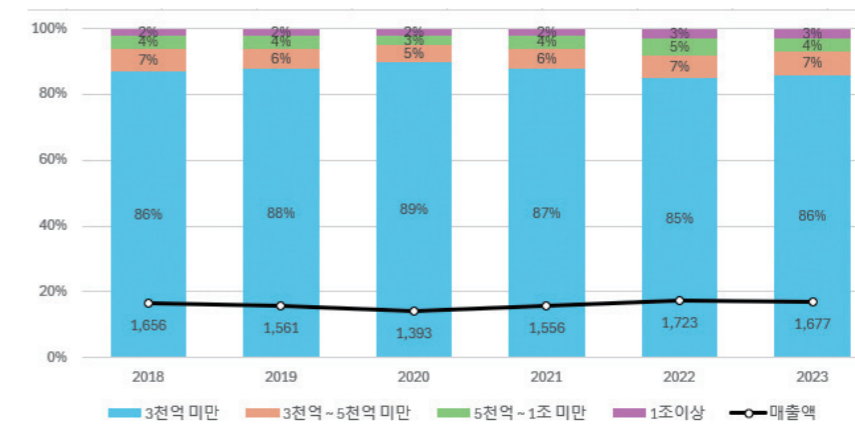
- 주요국은 최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화(DX)를 지원하고, AI, ICT 등 첨단 기술분야를 위한 정책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촉진 중

* (독) 미텔슈탄트 4.0-Digital Jetzt, (프) AI 부스터 프랑스 2030, (일)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

- 일본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

*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2024.6.)을 통해 전략적 국내투자 확대, 기술혁신 지원, 기업신진대사 활성화(지역경제 기여도 인정) 정책으로 '특정 중견기업'을 집중육성

매출액 구간별 중견기업 현황



정책제안

● 중견기업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의 연계를 통한 성장사다리 구축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검토 시 주요국 중소기업 기준과 비교해 합리적 재검토
- 산업 생태계적 접근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과 중견기업 정책의 연계 추진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견기업 정책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성장 촉진

- 중견기업 지원 특례 대상 및 세제지원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 →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 성장역량 제고를 위한 금융·인력·R&D 등 맞춤형 중견기업 지원정책 확대
-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화(DX), AI, ICT 첨단 지원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고용창출,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기업 선정·집중 지원

8-4 스타트업의 수출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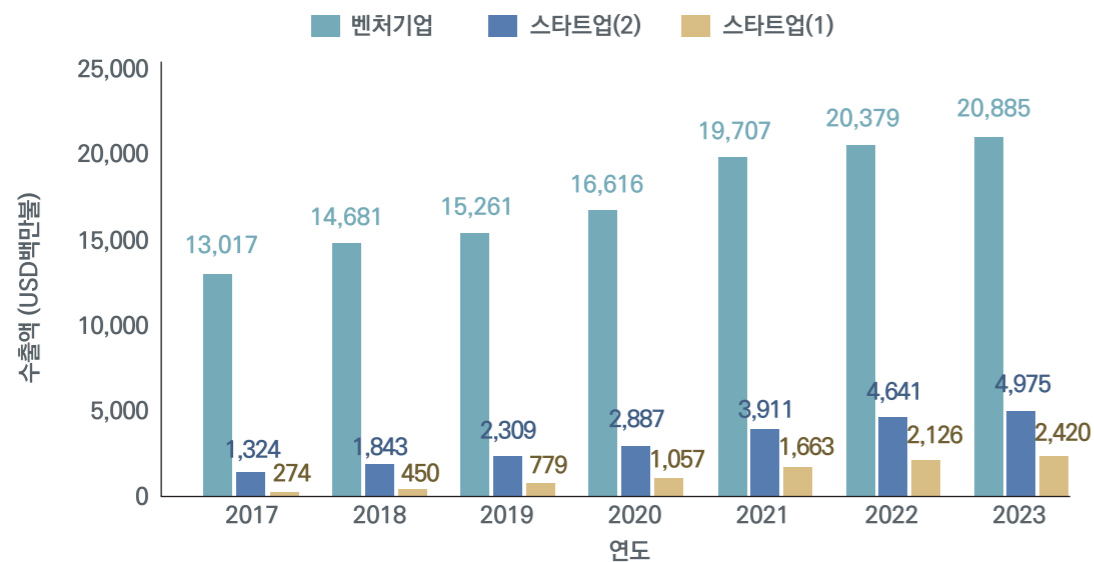
현실진단

● 스타트업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한국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수출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연평균 수출 증가율(벤처 8.1%, 스타트업 43.8%)에서 전체 한국 수출분(1.6%)을 상회
- 부가가치 및 고급 일자리 창출 등 한국 경제에서 벤처·스타트업은 높은 기여

* '23년 벤처기업 총 매출 242조원(4대 그룹과 비교시 삼성·현대에 이어 3위), 종사자 수 93.5만명(4대 그룹 전체 고용 74.6만명 대비 일자리 창출 18.9만명 상회)

벤처·스타트업의 연도별 수출 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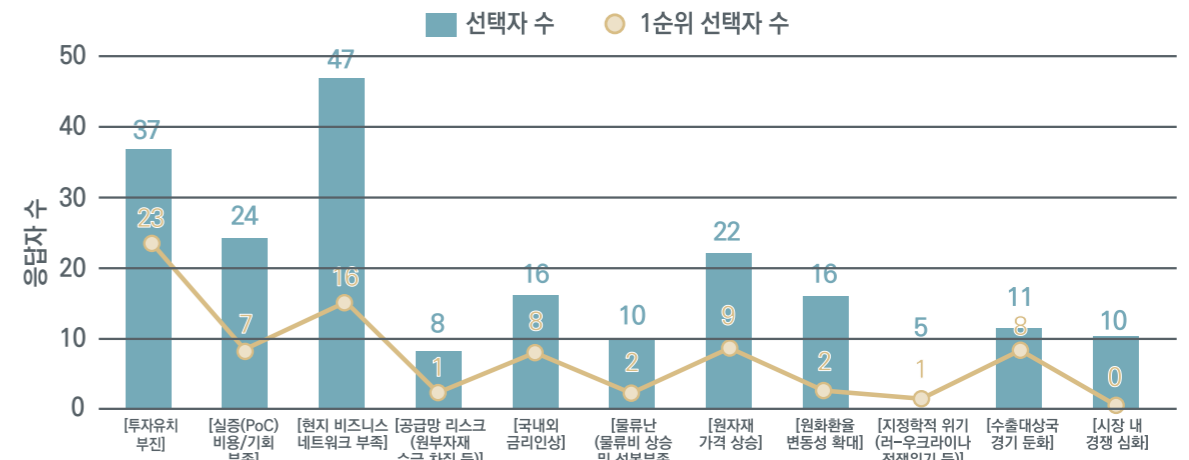
* 스타트업(1)은 창업 7년 미만 벤처확인기업이며, 스타트업(2)는 창업 10년 미만으로 구분함
출처 : 한국무역협회(2024)

● 스타트업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틈새시장을 창출하므로 성장 단계별로 기술·시장성의 검증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수출 마케팅이 가능

- 혁신 솔루션에 대해 개념검증(PoC : Proof of Concept) → 프로토타입 → 최소기능제품 등 단계별로 기술·시장성을 검증하고 소요자금의 투자를 받으며 상용화 제품 완성

● 스타트업의 주요 수출 애로는 ①현지 네트워크 부족 ②투자 부진 ③실증 기회 및 비용 부족 등으로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주요 수출 애로 (수출 1천달러 이상 스타트업 349개사 응답)



출처 : 한국무역협회(2024)

정책제안

● '테스트베드 코리아' 강점을 활용해 글로벌 대기업의 혁신 센터로 포지셔닝

- 스웨덴은 기술혁신청(VINNOVA)에서 「테스트베드 스웨덴」을 기치로 도시 전체 및 국가 전역의 테스트베드화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사례가 있음
- 한국은 글로벌 대기업들의 테스트베드로서 최적의 조건을 보유한 시장
 - * ①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② 높은 수도권 인구 밀도·단일 민족의 균일한 거대 시장 ③ 빠른 유행 변화와 높은 제품 수용성·교체율 등
- 한국에 글로벌 기업의 테스트베드가 마련되면 우리 스타트업은 국내에서 글로벌 대기업을 파이프라인으로 해외 타겟의 기술·시장성 검증 기회를 얻고, 수출의 기회를 얻게 됨
 - * BMW가 '19년 한국에서 발굴한 자율주행 스타트업 서울로보틱스(대표 이한빈)는 3년에 걸쳐 산업용 자율주행 기술을 성공적으로 테스트해 '22년 뮌헨 본사 BMW 공장에 도입하며 상장 준비 기업으로 성장했고, BMW는 '24년 세계 5번째 자체 R&D센터를 송도에 구축

● [실증기회 확보] 해외실증 바우처 등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서비스 확충

● [현지 네트워크] 글로벌 스타트업 콘퍼런스 및 현지 액셀러레이터 활용 확대

● [수출지원기반] 스타트업의 서비스수출 통계 및 맞춤형 수출지원 기반 구축

8-5 오픈 이노베이션 통한 혁신성장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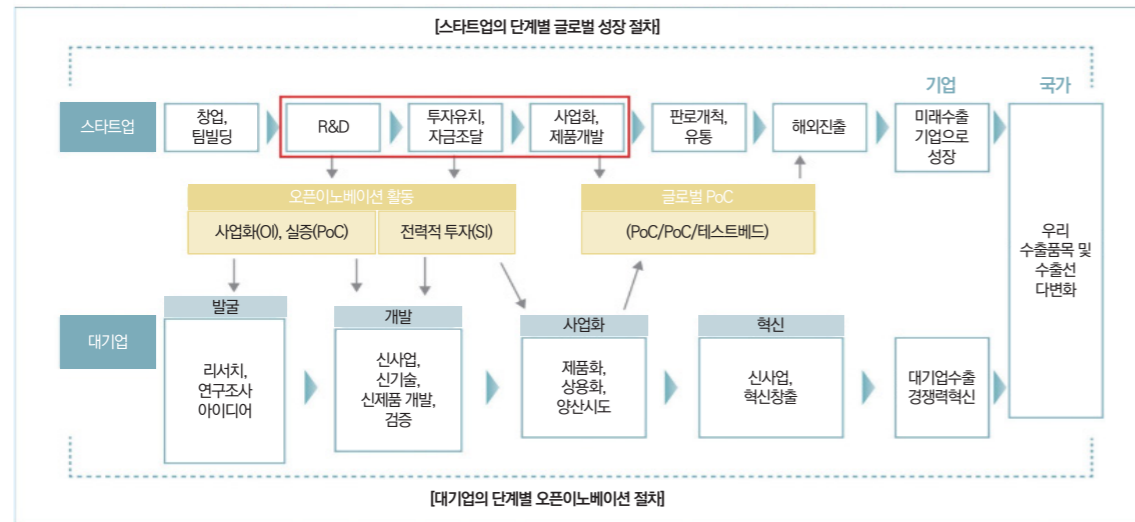
현실진단

-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스타트업은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모멘텀이 생기고, 대기업은 수출경쟁력을 혁신할 기회 창출

* 오픈이노베이션 : 기업이 조직 외부의 아이디어·기술·지식·인적자원을 활용하고, 내부 자원도 외부와 공유하며 혁신을 창출하는 방법론을 총칭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스타트업 성장 및 대기업 혁신 창출

오픈이노베이션을 매개로 한 스타트업의 성장 및 대기업의 혁신 창출 및 의의 도식



출처 : 한국무역협회(2025), H.체스브로(2003) 참고

- 한국은 2018년부터 오픈이노베이션이 본격 확산되어 최근까지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
 - 참여 대기업수는 '18년 18개社 → '23년 361개社로 증가
 - 업종 분야는 바이오·소부장 등 R&D 제조업부터 핀테크·헬스케어·e커머스·콘텐츠 등 서비스 전반까지 다양화했고, 글로벌 기업 역시 꾸준히 참여

국내 오픈이노베이션 행사 건수 및 참여 대기업 수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행사수	7건	26건	54건	70건	71건	87건
대기업 수 (글로벌기업)	18개 (0)	76개 (30개)	158개 (46개)	232개 (30개)	242개 (32개)	361개 (47개)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최근 국내의 대기업-스타트업간 오픈이노베이션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2~3년에 걸친 장기간의 지속적 노력과 다수의 시도 및 실패 속에 일정한 확률로 성공
 - 업계 설문조사 결과, 스타트업은 대기업측 투자·예산 부족을, 대기업은 눈높이에 맞는 스타트업 부족이 오픈이노베이션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
 -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상호 인식 차와 오픈이노베이션 추진상의 전문성 부족, 양자간 이해조정 등으로 많은 1대1 매칭과 실증이 실패로 돌아감
 - * 무협이 '24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타트업은 대기업들에 평균 7.2회 및업 시도 끝에 한번 매칭이 성사되고, 매칭 성사 후 기업들도 실제 성공에 도달한 사례는 20%대에 불과
 - 공공 지원사업은 대부분 1년 단위로 마감되고, 관련 지원사업은 산업부·중기부·과기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지속 성장지원에도 한계가 많고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음

- 중견·중소기업들의 오픈이노베이션 수요는 높음에도 대기업 대비 전문인력·인지도·노하우·자금 부족으로 실제 참여는 저조

* 중견련의 '24년 '중견기업 스타트업 협업 현황' 조사에 따르면, 332개 응답기업 중 협업 참여 중견기업은 3.4%에 불과하며, 스타트업 정보부족(56.0%), CEO의 내부인식 부족(33.7%) 등이 애로로 꼽힘

정책제안

- 범부처 '개방형혁신 촉진법'을 오픈이노베이션 기본법제로 정비하고, 대·중견기업·중개기관·스타트업 등 주요 참여자별 전주기 지원체제 구축
 - 각 부처에 산재한 오픈이노베이션 관련 법규를 통합하고 일원화된 통계, 관리, 성과측정, 지원 자원의 배분 및 5개년 이상 중장기적 활성화 계획 수립
 - * 일본은 '20년 기존의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격상해 오픈이노베이션 등 혁신정책과 기술정책을 통합하고 범정부기구를 통해 5년마다 과학혁신기본계획 및 연도별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을 발표하며 지원사업 및 세제혜택 등을 총괄 규율

개방형 혁신 촉진법이 다룬 오픈이노베이션 주요 참여자별 활성화 정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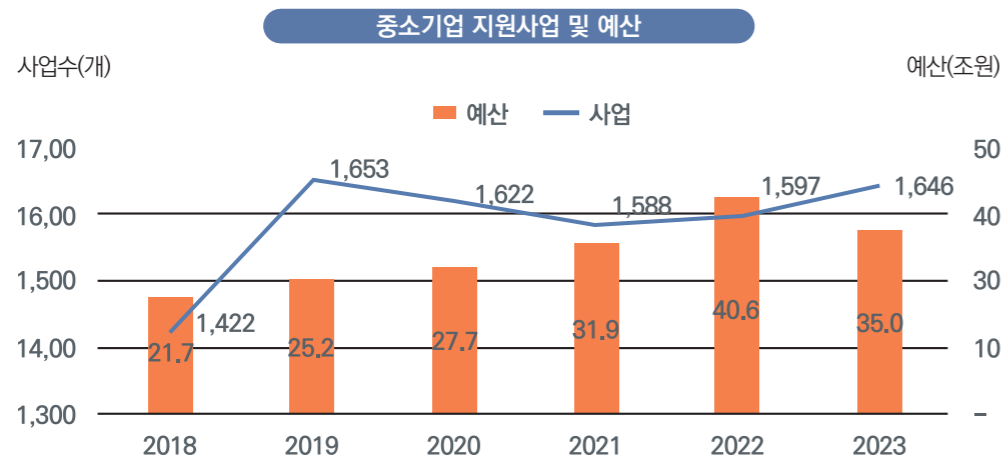
구분	주요 정책 과제
대기업	대기업 주도의 중장기적 오픈이노베이션 Top-Down 실증 지원 (EU의 유사 사업인 캐스케이딩펀드를 벤치마킹)
중소·중견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교육·컨설팅·매칭·실증 지원 종합패키지
혁신중개	오픈이노베이션의 성과 창출에 핵심동인인 전문 혁신중개자의 육성, 교육 및 전문화, 협의회 운영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전문 액셀러레이팅, 각 단계별 맞춤형 실증 바우처·중장기 지원체제 구축
글로벌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해외 스타트업 투자 규제 개선 (공정거래법 제20조의 국내 비금융 일반주회사의 해외 오픈이노베이션 투자비중 20% 제한 완화)

출처 : 한국무역협회

8-6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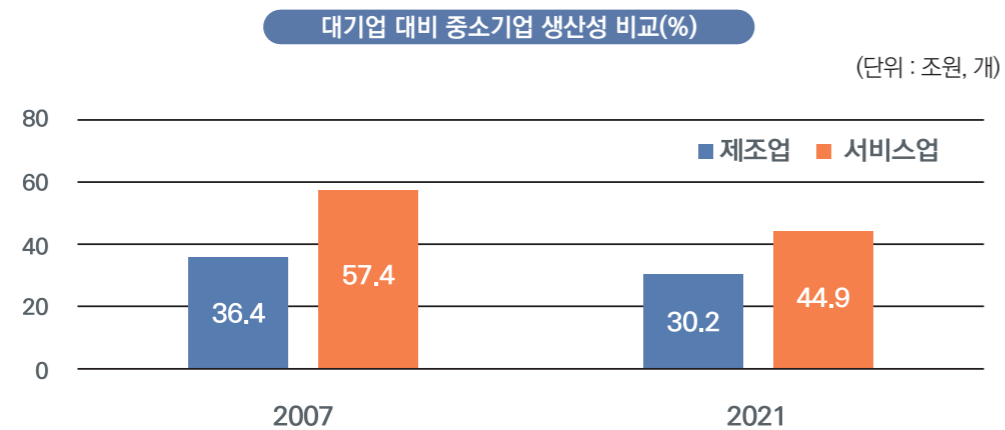
현실진단

- **지난 수십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준용하여 보호·지원하는 법령은 총 651개
 - * 법률 295개, 시행령 356개('25. 3. 24.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 지원사업·예산은 '18년 1,422개 21.7조원 → '23년 1,646개 35조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각년도

- **중소기업 보호·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심화**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은 제조업의 경우 '07년 36.4%에서 '21년 30.2%로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경우도 57.4%에서 44.9%로 격차 확대(중소벤처기업부, 2024)



-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지원은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자생적인 성장동력을 약화시켜 '피터팬 증후군' 유발 우려**

- OECD(2024)는 중소기업에 대한 관용적 지원이 대기업과 생산성 격차를 키웠으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 지원의 엄격한 관리 및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 철폐 등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환경 조성을 권고

정책제안

-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중소기업 정책기조를 '보호·지원' 위주에서 '혁신 및 성장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전환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주요국 기준과 비교해 합리적으로 재검토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비교

한국	제조업 800~1,500억원 이하	vs.	미국	800만달러(109억원)~4,700만달러(641억원),
EU	5,000만유로 (739억원)미만,		영국	5,400만파운드(941억원) 미만 <원화는 '24년 평균환율로 산정>

8-7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적합업종제도 합리화

현실진단

-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11년 시행)와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18년)를 시행 중

* 중소기업 적합업종 : 대 중견기업 사업 인수·개시·확장자제 권고(최초 3년+재지정 3년)

* 생계형 적합업종 : 대 중견기업 사업 인수·개시·확장 금지(5년),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시정명령 미이행시 매출 5%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 적합업종제도의 혜택은 영세 소상공인보다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현상 발생

- 적합업종 지정 이후 매출 증대 효과는 중소기업이 누리고, 소상공인 매출 증가율은 대부분 음(-)의 값을 보이고 있어 정책 실효성에 한계 존재

적합업종 지정 이후 매출액 증가율(%)

적합업종 지정	전체			소상공인 제외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집단	비교집단	처리효과	참여집단	비교집단	처리효과	참여집단	비교집단	처리효과
1년 후	3.80	2.53	1.14	4.03	2.62	1.20	2.59	2.19	0.37
2년 후	9.11	7.73	0.99	10.36	8.68	0.99	3.30	3.79	-0.53
3년 후	15.98	11.01	4.43	18.73	12.52	5.21	4.86	5.85	-1.07
4년 후	21.42	17.63	2.92	25.68	20.85	3.17	3.94	4.43	-0.55
5년 후	24.60	21.32	2.22	28.93	24.75	2.19	4.73	4.68	-0.01

*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2023)

- 동일한 성격의 제도 병존은 과도한 보호로 이어져 피터팬 증후군 유발 우려

- 중소기업 적합업종 종료 이후에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최소 11년에서 영구적으로 보호가 가능하게 되어 성장보다는 중소기업에 안주하려는 유인 증가

- 기업의 인수·확장 제한 등 유사한 규제가 반복되어 실질적으로 동일 보호체계 유지

- 적합업종제도는 기업의 투자 및 신산업 진출을 위축시켜 성장을 저해하고, 기업간 경쟁을 제한하여 산업경쟁력을 약화 및 소비자 선택권 침해 우려

- 기업 규모만을 기준으로 특정 업종에서 생산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는 경제 전반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저해 (KDI 적합업종제도 보고서, '22.8월)

- 신사업 진출 포기 사례도 발생

* 중견기업 A사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인수를 통해 신산업 진출을 추진했으나 적합업종 지정 논의가 진행되자 인수 및 신사업 진출 포기

- 과거 유사제도인 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저하, 산업경쟁력 약화,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등을 이유로 2006년 폐지

정책제안

-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합리화

-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졸업제 도입

-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실효성 분석 및 졸업제도 설계

-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폐지

- 신사업 진출 및 투자를 위축시키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폐지

8-8 내수 스케일업을 위한 장·단기 대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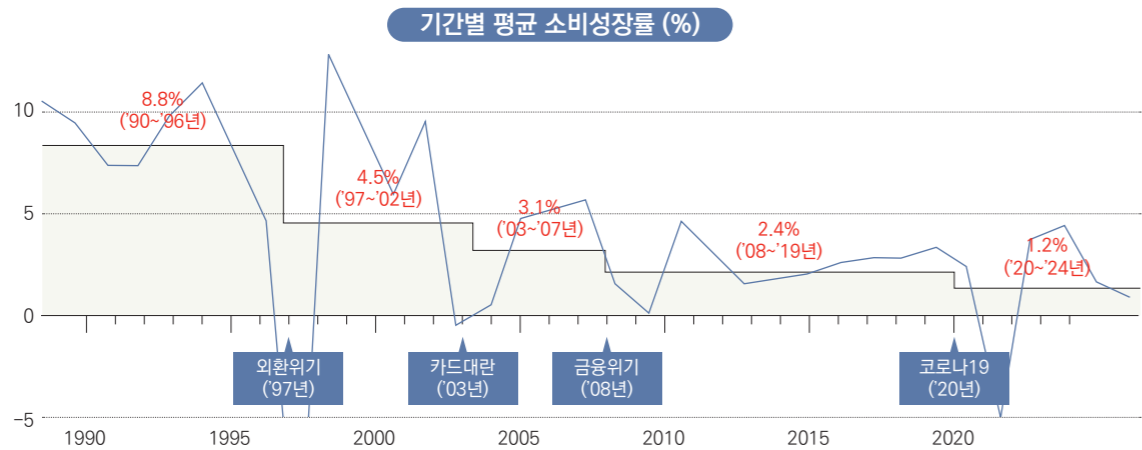
현실진단

● 내수소비는 장기 하락추세에 접어든 상황

- '90년대 말까지 성장세 유지하던 소비가 '97년 외환위기 이후 추세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카드대란, 금융위기, 코로나 등 경제위기 겪으며 한단계씩 추락

* 설비투자·수출도 위기때 성장률 하락세 보였으나 소비보다 높은 회복탄력성 보임

- 소비 촉진 위한 단기 대책들 다수 시행됐지만 소비의 하락 추세를 반등시키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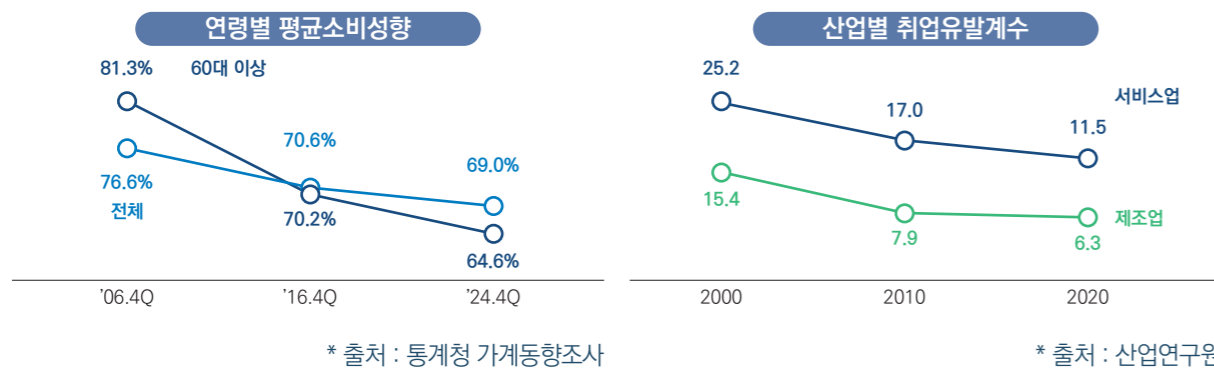


*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 코로나, 인플레이션 등 단기요인에 인구·고용·산업 등 구조적 요인까지 누적된 결과

- 고령층 인구가 2000년 이후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소비성향은 평균 이하로 급락
- 가계자산 중 부동산과 임대보증금의 비중 높아('24년 77.3%) 가계소비 제약
-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도 20년 사이 절반 이상 감소('00년 15.4 → '20년 6.3)

● 하락추세 반등 위해 단기대책과 함께 구조적 요인 해소할 장기대책도 병행 필요



*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출처 : 산업연구원

정책제안

● '공격적 경기부양책(Recession Attacking)' 통해 소비 반등 모멘텀 만들 필요

- Recession Attacking은 정부재정을 성장잠재력 높은 분야에 집중 투자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고, 동시에 미래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개념
- 1999년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사이버코리아 21'이 유사한 사례.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에 정부재정 투입해 단기 경기부양 + IT산업 육성 기반 마련
 - * 2000~2005년 GDP 연평균 5% 증가할 때 정보통신산업은 연평균 14% 증가, 정보통신 관련업 취업자는 62만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증가(166만)의 37% 차지
- IT산업 육성 위한 전력망, 데이터센터 등에 대규모 투자 필요

● 단기에 시행 가능한 소비 진작책 시행

- '한국판 이구환신' 제도 통해 효율적인 소비 유도전기차, 노후차 교체 지원 강화, 고효율가전 구입 지원 확대 등
 - * 이구환신 정책 : 중국은 24년부터 노후차, 구형 가전제품 교체 지원하며 소비 진작
 - * 고효율가전 구입지원 : 현재는 다자녀 및 출산가구(15%), 장애인, 유공자 등(30%)만 지원
- 고령층 대상 자산 유동화(사망보험금 유동화, 주택연금 등) 활성화해 소비여력 제고

● 서비스산업 육성, 업무성과 기반 임금체계 구축, 해외인구 유입 등 인구·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소비 감소 억제할 장기대책 적극 검토

- 제조업 비해 취업유발계수 높은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 특히 중간재 서비스 업종 육성해 수출 제조업과의 고용 연결고리 강화
- 업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와 계속고용 함께 도입해 고령층 일자리 안정화
 - * 韓 65세 이상의 임시직 비중이 70%로 OECD 평균인 17%에 비해 매우 높음
- 생산, 소비인구 감소 대응해 경제활동 연령대의 해외인구 유입 정책 검토

8-9 기업 규모별 차별 철폐

현실진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게 차등 적용되는 규제는 61개 법령, 총 342개('23.6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67개, 금융지주회사법 53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복합기업집단법) 39개, 상법 22개 등
 - * 자산규모별 차별규제 증가 현황(한경협, '23.6월, 개) : 4개(500억원 이상) → 19개(1,000억원 이상) → 57개(3,000억원 이상) → 183개(5,000억원 이상) → 274개(5조원 이상) → 342개(10조원 이상)
 - 내용별로는, 이사회 구성, 출자규제 등 소유·지배구조 규제, 사업 인수 금지, 지분취득 제한 등 진입·영업규제, 각종 현황 의무 공시규제 등

분야별 대기업 차별규제 현황 ('23.6월 기준)

분 류	개수(비율)	대표 규제 내용
소유·지배구조	171개(50.0%)	•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주주 의결권 제한(상법), 지주회사 관련 규제(공정거래법) 등
진입·영업규제	69개(20.2%)	• 대기업의 특정 산업 진입 등 제한(상생협력법),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유통산업발전법) 등
공시규제	38개(11.1%)	•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공정거래법) 등
고용규제	35개(10.2%)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산업안전보건법) 등
자료제출 등 기타	29개(8.5%)	•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 공정위 자료제출(공정거래법) 등

-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가 늘어나 기업의 성장 의욕 및 자율성 저하
 - (기업 성장 저해)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적용받는 규제 수가 늘어나* 성장 의욕 저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성장을 거부하는 피터팬 증후군 만연**
 - * 적용 규제 수('23)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342개 vs. (자산 1천억원) 19개
 - ** 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 축소 규제강화 체감 77%, 중소기업 회귀 고려 30.7% (대한상의, '23)
 - (경영판단 위축) 과도한 규제*로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제약되고, 신사업 투자 및 혁신적 경영전략 수립에 제약
 - * 대주주 의결권 제한 규제(상법), 출자 제한 규제(공정거래법) 등
- 지속적인 차별규제 증가에 따른 기업가정신 위축
 - 대기업 차별규제 개수*는 '19.8월 188개에서 '23.6월 342개로 71.3% 증가하며 창업, 투자, 고용 활성화를 뒷받침할 기업가정신 기반을 훼손
 - * 대기업 차별규제 추이(한경협) : 188개('19.8월) → 275개('24.5월) → 342개('23.6월)

정책제안

-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차별규제 전면 재검토 및 원칙 폐지
 - (국제기준 반영)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차별규제*는 폐지
 - *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주주 의결권 제한 규제(상법) 등
 - (사후규제 전환) 사전적 규제(진입규제·사전적 행위규제)*는 필요최소한의 경우로 축소하고 사후적 규제, 기업의 자율규제로 전환
 - * 지주회사의 출자비율 제한 등 행위규제(공정거래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4조원) 소속 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사 주식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금지 등 진입규제(신문법)

8-10 연구개발 및 투자 인센티브 확대

1 R&D 인센티브 확대 및 최저한세 제외

현실진단

● 기업의 R&D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이하 'R&D 세액공제'), 기업 규모·시설 유형별로 공제율 차등 적용

- R&D 세액공제를 포함하여, 각종 공제·감면 적용* 후의 납부할 법인세액이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만큼은 공제·감면 배제(이하 '최저한세')

*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 항목에서 제외

** 최저한세율 : 중소기업은 7%, 그 외 기업은 과세표준 구간별 10~17%(100억원 이하 10%, 100억~1천억원 12%, 1천억원 초과 17%)

R&D 세액공제율(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 외	중소기업 지위 해제 후 4~5년까지	중소기업 지위 해제 후 첫 3년간	
일반기술 ^{주1)}	0~2% ^{주2)}	8%	15%	20%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25~35%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35~45%	40~50%

* 주 : 1) 당기투자분 공제 방식 기준

2) '당기 일반 기술 R&D 투자액/매출액 × 1/2'을 공제율로 하되, 2% 한도

● 민간 R&D 투자를 견인*하는 대·중견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 민간의 글로벌 R&D 경쟁력과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

* 대·중견기업 R&D 투자는 민간 전체 R&D 투자의 78.2% 차지('23년 기준, KISTEP)

- 대·중견기업의 경우, 국가전략기술 혹은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간 R&D 세액공제율 격차가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

- 기술 융합이 빠르고, 새로운 먹거리가 다양하게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제지원에 과도한 차등을 두는 것은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부적합

- 더욱이 대기업에 대한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13년 이후 지속 축소되어 왔으며, 이는 대기업 R&D 유인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대기업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3~6%(~'13년)→2~3%(~'15~'16년)→0~2%(~'18년~현재)로 지속 하락 vs. 중소기업은 25% 지속 유지

**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이 축소되기 시작한 '14년부터 최근 '23년까지 10년간 대기업 R&D 연평균 증가율은 5.4%로, 직전 10년('04~'13년) 12.4% 대비 크게 둔화(KISTEP)

- 대·중견기업에 대한 한국의 R&D 조세지원 순위는 OECD 38개국 중 30위로, 대·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23년 기준, OECD)

* 주요 선진국 대기업들은 한국보다 높은 수준의 R&D 세제지원을 받고 있으며, 일부 국가(ex, 미국, 독일, 프랑스 등)는 기업 규모의 구분 없이 균등하게 지원

R&D 조세지원율('23년 기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대기업	3%	17%	18%	19%	36%	2%
중소기업		20%	26%			26%

* 주 : R&D 조세지원율(1-B지수)은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원 정도를 나타내며, R&D 조세지원율이 2%이면, 100만원의 R&D 투자 시 2만원 정부 지원을 받았다는 의미

* 자료 : OECD R&D Tax Incentive Indicators

● 한편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아도, 최저한세 제도로 인해 실제 공제액은 제한적

- 기업이 받는 세액공제의 대부분*이 R&D·시설투자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최저한세 제도가 기업 R&D·시설투자 유인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

* '23년 기준 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 총액(7.4조 원) 중 67%(5.0조 원)가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액(국세통계)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세액공제 상위 6개 항목('23년 기준, 억원)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	74,362.8
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148.5
2.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11,936.1
3. 일반 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10,331.7
4.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9,226.4
5. 일반 R&D 세액공제	8,908.6
6.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7,432.3

* 자료 : 국세통계

- 현재 대·중견기업의 R&D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대·중견기업도 중소기업처럼 R&D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 부여를 통해 이들 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 유도 필요

 정책제안

- 일반 R&D 세액공제율(당기투자분)을 대기업은 0~2% → 10%, 중견기업은 10% → 20%로 인상
 - 대기업도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처럼 정률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경기 변동에 따른 R&D 공제율의 불확실성을 제거시켜줄 필요

2 토지·건물 투자도 세액공제 포함

 현실진단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은 기계장치 등에 한정하며, 토지·건축물, 항공기·선박 등 (이하 '토지·건물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 단, 일부 업종에 한해 예외적으로 토지·건물 등 투자에도 공제 허용

토지·건물 등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업종

업종	통합투자세액공제 허용 자산
운수업(중소기업 限)	차량·운반구, 선박
어업	선박
건설업	건설용 기계장비(지게차, 기중기 등)
유통업	유통산업합리화시설(창고시설, 운반용 차량·장비 등)
관광·숙박업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
종합·전문휴양업	숙박·휴양 시설

- 시설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자산인 토지·건물 등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투자를 촉진한다는 제도 취지와 실효성 저해
 - 공장 신·증설을 위해 토지·건물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하여 실질적인 공제 효과가 미흡
 - *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총 시설투자 중 토지·건물 투자 비중이 30%~50%에 달함
 -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하는 토지·건물 등 자산'이 일부 업종에 한정되어, 사업 영위를 위한 필수 시설로서 생산과 관련성이 높아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

산업계 애로

- (항공운수업) 신규 투자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항공기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他 산업 대비 제도로 인한 실질적인 수혜 미미
 - * 항공 운수업은 항공기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 산업, 안전 운항 증진 및 탄소중립을 위해 국적항공사의 저탄소 첨단 항공기에 대한 적극 투자 필요
- (바이오산업) 건물 준공 시 일반 건물과 달리 특수설계*·시공이 필요하고 해당 건물은 생산과 직접 관련성이 높음 → 건축물이 본질적으로 기계장치와 유사
 - * cGMP, 무균시설 등 건축물

- 해외 주요국은 주요 전략산업에 공장 등 건물 투자에도 높은 수준의 세제지원·보조금 혜택을 제공하여 자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 중
 - * ex) 반도체의 경우, 미국은 건물을 포함한 유형자산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25%를 세액공제, 일본은 공장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

 정책제안

- 사업 영위를 위해 필수적인 토지·건물 등 자산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1안) 사업용 토지·건축물과 항공기·선박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2안) 국가전략산업과 신성장·원천기술 산업에 한해 토지·건물 등 투자에도 세액공제 허용

3 임시투자세액공제 지원 강화

현실진단

-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23년 한시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가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올해 말까지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구분	기본공제율(당기투자분)				추가공제율 (투자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위 해제 후 3년간	그 외		
일반 시설	1% (→3%)	7.5%	5% (→7%)	10% (→12%)	10%
신성장·원천기술R&D 및 사업화시설	3% (→6%)	9%	6% (→8%)	12% (→14%)	
국가전략기술 R&D 및 사업화시설	15%	20%	15%	25%	
반도체 R&D 및 사업화시설	20%	25%	20%	30%	

* 주 : 붉은색은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상향되었던 공제율이며, 중소·중견기업은 '25년까지 적용

● 제도 연장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되어 실효성 저해

- 국내 설비투자를 건인*하는 대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공제율 상향 혜택이 연장되지 않아, 투자 활성화라는 제도 취지 달성에 한계
 - * 국내 전체 설비투자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9.8%에 달함(산업은행, '24년 기준)
-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제외로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
 - 투자 재검토 및 지연으로 연결되어 경제에 부정적 영향
- 또한 대규모 투자 계획에 차질 발생 시, 관련 사업 프로젝트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 우려
- 더욱이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협력업체인 중소·중견기업들의 일감 확대 및 연쇄적인 투자를 창출하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도 대기업까지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규모가 큰 장치산업의 투자는 통상 3년 이상 장기간 소요 → 투자 기간 중 공제 상향 혜택 폐지 시, 세부담 증가로 투자 집행 여력 축소

-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기업 포함) 연장 시, 올해('25년) 기업 법인세 부담 약 1.2조 원 경감 예상(국회예산정책처)
-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주력 산업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신성장 동력 발굴과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

정책제안

- 대기업을 포함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6년까지 연장

8-11 불합리한 유통규제 개선

현실진단

- **중소유통 보호 위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영업규제를 2010년 시행**
 - 영업일수 규제(매월 이틀 공휴일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규제(자정~오전10시)
 - * 다만, 영업일수 규제 관련 이해관계자 합의를 비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
 - 최근 유통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국회 계류 중

유통산업 관련 계류 법안

구분	개정내용	대표발의 의원
의무휴업제도지정방식 개선	의무휴업 요일을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 휴업일 공휴일 원칙 폐지	강승규, 김성원
준대규모점포영업시간 제한 완화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개설비용이 50% 이하인 경우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	이종배, 김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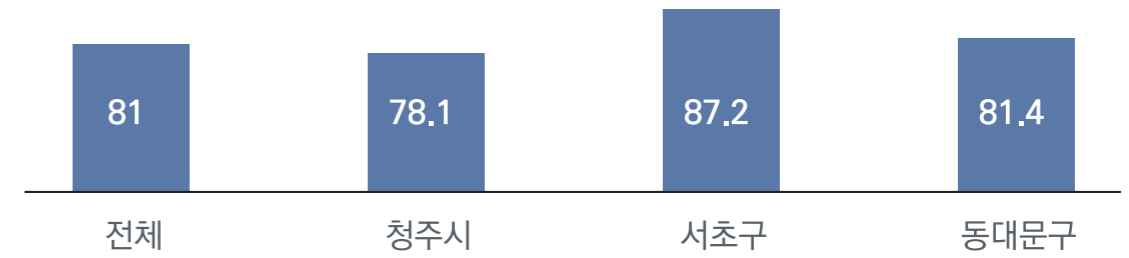
- **규제 시행 후 15년 이상이 지났지만 효과는 미미하고 부정적 결과를 초래**
 - 온라인쇼핑 급성장으로 대형마트 규제와 전통시장 보호 간 인과관계 약화
 - *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경쟁하는 관계 아니다' 57%(vs. 경쟁관계다 20%) <대한상의, '22>
 - 소비자 불편 심화, 입점 소상공인 피해, 대형마트 경영악화, 고용 감소 등 부작용
 - * 의무휴업시 '전통시장 이용' 16%(vs. he체널이용 49%, 다른 날 대형마트 이용 34%) <대한상의, '22>
- **온라인쇼핑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대형마트와 SSM만 규제하는 역차별 발생**
 - 온라인은 365일 24시간 영업을 가능한 반면, 대형마트는 영업규제 적용

대형마트와 온라인 규제 비교

구분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규제	등록제, 사업조정제도, 전통상업보전구역 출점제한,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 출점에고제 등	無(신고제)
영업규제	월 2회 공휴일 휴무, 자정~오전 10시까지 오프라인 및 온라인영업 제한	無(365일 24시간 영업)

- **일괄적인 규제 적용보다는 지역 특성, 운영주체 등을 고려한 탄력적 제도 운영 필요**
 - 현행법은 이용편의 및 지역상권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휴일 지정원칙 고수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에 만족하는 이용자 비중(%)



* 출처: 대한상의('24)

- 개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까지 의무휴업일 등 규제 적용은 과도
- * 현행법은 대기업 등의 가맹형 체인사업 점포에 대해 일괄적으로 출점 및 영업규제 적용

정책제안

-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일 지정방식 개선**
 -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의무휴업일 요일 지정(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 폐지)
- **SSM 중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 대기업 등이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중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는 준대규모점에서 제외
 - * 가맹본부의 개설비용 부담률이 50% 미만인 점포


21대 대선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9

경제영토 확장 - 통상·해외시장

-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상조치 대응
- 2 시장 개척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FTA 강화
- 3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진출전략 구체화
- 4 국가전략산업의 공급망 리스크 분산 추진
- 5 리쇼어링 및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강화
- 6 국내 산업영향을 고려한 외국기업 국내투자 유치
- 7 무역업계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력 강화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KEF 한국경영자총협회

 FKI 한국경제인협회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현장의 목소리

통상환경이 급변하는데 우리 수출기업들 관점은가요?

“심화되는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핵심 동맹국과의 경제 안보 협력 강화 및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50대 직장인

“미국이 예측하기 어려운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어 이에 대응한 경제 정책이 시급합니다.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여 관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실리적으로 충격을 완화해야 해요.” 30대 직장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글로벌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 절차 간소화, 투자 인센티브 확대, 외국인 인재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50대 중소기업 CEO

경제영토를 넓히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새로운 FTA 체결이나 기존 협정의 개선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양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 겪는 어려움을 덜 수 있게 현지 마케팅 같은 지원도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50대 직장인

“FTA를 기반으로 주요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특히 신흥 시장 개척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60대 직장인

“기존 수출 주력 산업 외에도 바이오, 반도체, 디지털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동남아·중동 등 신흥시장 개척에 힘써야 합니다.” 20대 학생

9-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상조치 대응

현실진단

-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광범위한 관세조치를 단행**
 -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며 시작된 조치는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를 거쳐 전세계 대상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로 확대
 - 관세 부과 근거로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무역확장법 232조 등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 단독 관세 부과가 가능한 수단을 활용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관세조치 현황('25.4.21. 기준)

현지 발표일	대상	근거법	대상국	관세율	최초 시행일
2월 1일	전 품목	IEEPA	캐나다, 멕시코	최대 25%	2월 4일
			중국	10%+10%	2월 4일 및 3월 2일
2월 10~11일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232조	모든 수입국	25%	3월 12일
3월 24일	전 품목 (세컨더리 관세)	IEEPA	베네수엘라산 원유·가스 수입국	25%	4월 2일
3월 26일	완성차	232조	모든 수입국	25%	4월 3일
	자동차 부품		모든 수입국	25%	5월 3일
4월 2일	보편관세	IEEPA	모든 수입국	10%	4월 5일
	상호관세		57개국	국별 차등 (한국 25%)	4월 9일 (중국 外 90일 중단)
4월 15일	핵심 광물	232조	모든 수입국		조사 개시
4월 16일	반도체·의약품	232조	모든 수입국		조사 개시

자료 : 연방관보 기반 저자 정리

- **미중간 전략적 입장 충돌로 한국과의 협력 및 수출 유망 분야 확대 전망**
 -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 시사
 - 특히 미군의 함대 현대화 계획에 따른 해군함정 MRO(유지·정비·보수) 및 군함 건조와 화석연료 생산 확대에 따른 LNG선 신조 수요 증가가 예상됨

정책제안

- **對美 통상전략 수립 및 무역시장 다변화를 통한 위기 관리**
 - 미국의 관세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협상지원체계 구축 및 고위급 정상외교와 정부 간 소통 강화
 - 기체결 FTA 활용 강화 및 제3국 통상협력 확대 통해 수출입 시장 다변화와 특정국에 대한 대외무역의존도 완화
- **유망 산업별 범정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술 개발 및 수출 확대 지원**
 - **대응체계 구축** 조선·방산 등 수출 유망 산업의 경제·통상현안 전담 창구를 개소하고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
 - **수출 기회 창출 지원** 정부의 전략 마케팅, 외교적 지원, 판로 개척 등 종합적 기회 창출 방안 마련
 - 국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방산 수출 계약 체결 위해 민관 합동 지원체계 필요

9-2 시장 개척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FTA 강화

현실진단

- 자유무역 기반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화되고, 불안정한 공급망이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위기 요인으로 작용
 - 최근 미중 갈등은 관세뿐만 아니라, 수출통제 및 기업제재로 범위를 넓혀 우리 기업에도 부정적 영향 발생
 - * [미국] 첨단 반도체 및 Si칩 수출 통제 강화, 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 232조 조사 등
 - * [중국] 핵심광물 및 희토류 수출통제,美기업 수출통제 및 신뢰할 수 없는 기업 추가 등
 - 글로벌 경제는 효율성과 경쟁을 통한 성장에서 기술·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바탕으로 한 자국 중심적 경제안보 강화로 재편 중
- 다자통상체제의 기능이 약화되고 규범의 파편화로 기존 통상질서 한계 노출
 - WTO는 분쟁해결제도 상소(2심)기구 무력화로 기능의 상당부분 마비
 - 지역주의 확산 속 미국발 상호주의 및 보호주의 조치 증가에도 다자체제를 통한 대응 불가
- 주요국들은 자유무역보다 자국 내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위한 산업 정책 추진
 -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 핵심 산업의 생산기지·기술을 자국 또는 우방 내로 유치하려는 움직임 강화
 - 국가적 지원은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교역·투자 연계되어 수출 촉진, 투자 유치, 공급망 재편 등 통상 목표와 결합된 형태로 추진됨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CEI) 목표

목표
① 통합반도체 기술을 위한 최첨단 설계 역량 구축
② 기존 파일럿라인 강화 및 새로운 파일럿라인 개발
③ 최첨단 양자 칩 개발을 위한 첨단기술 역량 구축
④ EU 전역에 역량센터 네트워크 구축
⑤ 반도체 가치사슬의 스타트업, 스케일업, 중소기업 반도체기금 등 운영

자료 : 이정아·도원빈(2024)

일본의 자국산업 보호정책

반도체 보조금	리쇼어링 지원	산업기술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 반도체 생산 보조금 지원 • 반도체 공장 건설 최대 50%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국내 복귀 비용 최대 2/3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술 해외 유출시 최대 10억엔 벌금 부과

자료 : 조의윤·김진아(2024)

정책제안

-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 거점국과 신규 협정 추진
 - 아시아** 동북아 경제 번영과 안정을 위해 한일중 3국간 FTA 협상을 재개하고, 자원부국인 몽골, 동남아 생산거점국인 태국과 협상 속행
 -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의 소비시장 관문인 케냐, 핵심광물 보유국이자 교통·물류 거점국인 모로코 등 FTA 여건 조성에 합의한 국가와 조기 협상 개시
 - 신흥시장** 협상 타결된 한-조지아 EPA의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리튬·아연 등 핵심자원 보유국 세르비아, 카리브해 거점국가 도미니카공화국과도 협상 개시 추진
 - 중동**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국내 석유제품의 원가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한-GCC FTA 및 한-UAE CEP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
 - * [한-UAE CEPA] 원유/벵커C유 수입관세(3%), 10년간 단계적 철폐
 - * [한-GCC FTA] 벵커C유 수입관세(3%), 10년간 단계적 철폐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 바탕으로 추진
- 불확실한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국으로서 다자무역질서 복원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 지속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U 등 주요국과 자유무역·다자주의 수호를 위한 연대와 소통을 강화할 필요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상 채널을 활용해 美·中·日 등 주요국과 디지털 통상규범 및 협력 기반 마련

9-3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진출전략 구체화

현실진단

- '24년 우리의 10대 수출대상국 비중은 70.8%로 편중성이 높아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
-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는 높은 경제성장률, 인구규모에 힘입어 소비시장 확대
 - * 북반구 저위도·남반구에 위치한 아시아·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신흥 개발도상국 76개국
 - 2024년 명목 GDP 기준 상위 50위 중 글로벌 사우스에 해당하는 국가는 인도,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13개국(IMF WEO)
 - 세계적인 생산인구 감소 추세 가운데에도 글로벌 사우스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향후 인구배당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
 - *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에 가속도가 붙는 현상
 - * 주요국 생산가능인구 비중 변화(World Bank, '14→'24, %p) : (인도) 3.0(멕시코) 2.1(인니) 1.3(세계) -0.1(한국) -3.1(일본) -2.0(중국) -2.7
- 글로벌 사우스는 탈중국 기조 속 차세대 생산기지로 급부상
 - 저임금, 풍부한 노동력 등의 이점으로 최근 글로벌 기업의 투자 및 진출 확대
 - * 주요국 월 최저임금(ILOSTAT, '23, \$) : (한국) 1,540(중국) 272(태국) 250(남아공) 239(브라질) 261(인도네시아) 322(인도) 56

글로벌 기업의 글로벌 사우스 투자 사례

기업명	진출국	시점	주요 내용
마이크로소프트	인도네시아	2024. 4월	클라우드 서비스와 AI 확장에 향후 4년간 17억 달러(약 2조 3,500억 원) 투자 계획 발표
구글	말레이시아	2024. 5월	20억 달러(약 2조 8천억 원) 규모의 신규 데이터센터 허브 건설 계획 발표
TSMC	인도	2024. 9월	타타그룹과 협력해 구자라트주에 110억 달러(약 14조 7,500억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설립 예정
아마존웹서비스	멕시코	2025. 1월	신규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향후 15년 동안 50억 달러(약 7조 3천억 원) 투자 계획 발표

자료 : 언론보도 종합

-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글로벌 사우스는 필수 불가결한 협력 파트너
 - 글로벌 사우스는 첨단산업 발전 및 탄소중립 실현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자원이 풍부
 - * 핵심 광물별 채굴량·매장량 순위(USGS, '24) : (니켈) 인니 1위·1위(리튬) 브라질 6위·8위(희토류) 인도 7위·3위

정책제안

- **생산거점** 인도·인니·멕시코·브라질 등 글로벌 사우스 핵심 거점국에 K-산업단지 집중 조성 및 ODA 연계형 경제협력 토대 구축
 - 기업 단위의 개별 진출에서 벗어나 국가 단위의 산업 클러스터형 진출 지원
 - * 현지 정부와 산업단지를 공동 개발하여 부품-완성품-물류-서비스 연계형 종합 진출 유도
 - 단순 위탁생산 기지를 넘어, 스마트팩토리 및 친환경 공정 등을 현지 기업이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장기적 생산 파트너십 강화
 - * 한국 기술표준 기반의 생산 협력 모델을 확산시켜 글로벌 기술표준 선점 효과 기대
 - 기술 전문대학을 설립하여 인력을 양성하는 등 ODA 연계형 경제협력 사업 개발
 - 해외투자보험 등 금융지원, 투자자금 환급 등 글로벌 사우스 진출환경 정비
- **공급망** 핵심광물 등 자원 분야 기술협력 및 다층적 파트너십 강화
 - 자원 확보 목적의 단순 협력을 넘어, '자원 채굴 → 현지 가공 → 한국의 기술이전 및 설비투자 → 제3국 공동 수출 → 재자원화'를 연계한 종합 진출 지원
 -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신규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등 양·다자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 및 포괄적 경제협력 채널 구축
 - * EPA는 FTA와 달리 관세 철폐보다 자원, 에너지 등 공급망 협력에 초점

우리나라의 對글로벌 사우스 FTA 및 EPA 추진 현황('25.4월 기준)

구분	내용
FTA	· (협상진행) 말레이시아, MERCOSUR(남미공동시장), 인도(CEPA 개선) · (여건조성) 멕시코(SECA), 이집트, PA(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칠레)
EPA	· (협상진행) 몽골 · (여건조성) 케냐, 모로코, 태국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FTA 포털

- **소비시장** 한류 연계형 소비재 수출 확대 및 통관·인증 패스트트랙 신설
 - 중산층 이상 소비자가 밀집한 대도시에 O2O* 실증 인프라를 조성하여 K-뷰티·패션·푸드 등 프리미엄 소비재의 현지 시장성 검증 및 온·오프라인 연계 지원
 - * Online to Offline : 온라인에서 고객을 유치한 뒤 실제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 상호인정약정(MRA)* 체결국을 현행 25개국에서 50개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소비재 시장 진입 장벽이 되는 통관·인증 절차 등을 간소화
 -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국가 간 인증 결과를 상호 인정해 절차를 생략하는 협정

9-4 국가전략산업의 공급망 리스크 분산 추진

현실진단

- **미-중 갈등의 심화 → 양국의 첨단기술·핵심광물 수출 통제가 강화되고 있음**
 - 미국은 AI, 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 중국*은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를 단행
 - * 텅스텐 등 5개 품목 기술·자원 수출통제('25.2),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7종 수출통제('25.4)
- **우리나라는 핵심 광물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아 중국 수출통제의 영향을 받음**
 - 중국은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중국 정부는 광물 수출을 불허할 권한을 전적으로 보유
 - 중국이 최근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핵심 광물들은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중국의 추가 수출통제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 필요**
 - 단기적으로는 비축물량을 활용해 수출통제에 대응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수출허가 지연과 관련한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

한국의 신규 수출통제 품목별 대중국 수입의존도

(단위 :백만 달러, 톤, 비중%)

소재	품목	HS Code	총 수입 규모		對중국 수입의존도	
			금액	중량	금액 기준	중량 기준
1	텅스텐	산화텅스텐	74.9	2,447	80.4	81.0
		탄화텅스텐	59.5	1,389	91.4	93.1
2	몰리브덴	몰리브덴금속(분말)	2.4	44	75.0	63.6
		몰리브덴금속(괴)	3.8	61	99.7	100.0
3	인듐	인듐인화물	3.6	84	8.1	1.3
4	텔루륨	텔루르	0.4	3	52.9	66.7
5	비스무트	비스무트(괴, 분말 등)	3.5	121	78.5	77.7
6	희토류	반도체 부분품과 부속품	4,221.0	11,124	3.4	16.4
		기타 (희토류 포함 화학 제품)	1,698.7	525,522	29.1	53.1
		기타 (희토류 화합물)	62.9	1,533	60.3	92.4
		희토류 금속	9.9	145	80.0	80.0

주 : 2024년 기준 일부 HS Code 4단위, 6단위 기준으로 실제 수치보다 과대 계산되었을 수 있음

자료 : K-Stat 한국무역통계

정책제안

- **해외 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의 항구화 및 세율 공제율의 단계적 확대**
 - 자원개발은 탐사·개발·생산까지 5~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해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상시제도로 전환할 필요
 - 현행 3% 수준의 공제율을 산업별·리스크 수준에 따라 5~10%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필요

구분	세액공제율	적용대상	비고
한국(해외자원 개발투자세액공제)	3%	해외자원개발 투자금	2024~2026년 한시적 재도입
미국(IRA법)	10%~30%	광물 생산·가공·재활용 설비 투자	2023년 제정
일본(JOGMEC)	직접 출자·용자·보증지원	고위험 해외 프로젝트	2004년 정부산하 공공 기관으로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설치

- **민관 공동 비축제도 확대 도입 및 참여 비율별 보조금 체계 구축**
 - 정부 70%, 민간 30% 비율의 민관 공동 매칭형 비축모형을 도입하여 민간 기업의 책임 분담과 실효적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 비율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 * 조달청의 민관 공동 비축 운영제도를 전략자원 중심으로 확대·체계화
- **산업단지 연계 「권역별 공동 비축기지」 구축 및 디지털 유통 플랫폼 도입**
 - 수도권·충청·영남 등 주요 산업단지와 연계한 권역별 공동 비축기지를 단계적으로 확충
 - * 정부는 2027년까지 새만금 산단 내 전략자원 전용 비축기지 준공 계획
 - 비축된 자원을 기업 간 매매·양도할 수 있는 통합 디지털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간 기업의 긴급 대응 역량 강화 지원
- **광물의 재자원화 기술·시설 전반을 국가 전략기술로 확대 지정**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용후 배터리에서 리튬·니켈 등 금속 회수기술에 한하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 적용 대상을 광물 회수 대상이 되는 모든 고품 폐기물 기반 재자원화 기술로 확대하여 세액 공제율 우대 필요
 - * 중소기업 기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의 경우 최대 25% 공제, 일반시설은 10% 공제

9-5 리쇼어링 및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강화

현실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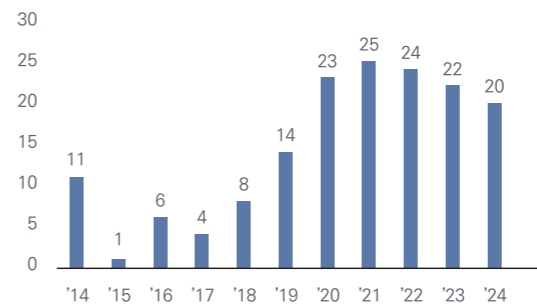
- **주요국은 핵심산업 내재화를 위해 적극적인 리쇼어링 및 기업투자 유치 정책 추진**
 - 미국, EU, 일본 등은 반도체·배터리·의약품 등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보조금, 세제혜택 등을 통해 리쇼어링 유인을 강화하고, 외국인투자를 경쟁적으로 유치

주요국 리쇼어링 및 기업투자유치 정책

국가	리쇼어링	기업투자유치
미국	- 반도체법 및 IRA 등 대규모 보조금 및 세액공제를 통해 자국 중심 전략산업 공급망 구축	- (Select USA) 정부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기업에 전방위 지원 제공
EU	- 유럽 반도체법, 핵심의약품법 등을 통해 역내 생산 장려 - 공동 기금·대규모 투자 유치	- 외국인 투자 심사 시 EU 안보 영향 평가 - 시장 접근성·예측 가능 규제를 통한 투자 기반 조성
일본	- 경제안전보장추진법('24 시행)으로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전체를 리쇼어링 대상으로 확대	-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협약회 설립(30년 FDI 100조 엔 목표) - 외국 핀테크 스타트업 금융지원(2,000만 엔) - 금융·자산운용업 특구 규제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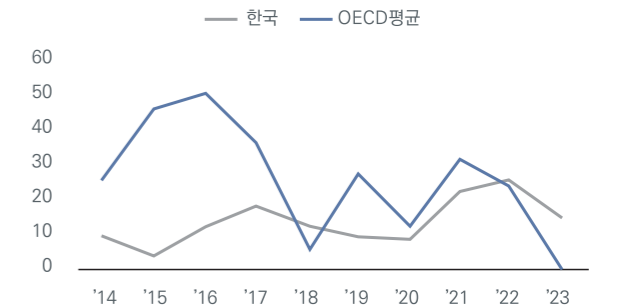
- **(리쇼어링) '유턴기업지원법' 등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 복귀기업 수는 정체**
 - 2013년부터 '유턴기업지원법'을 시행했으나 작년까지 복귀기업은 158개사에 불과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복귀기업 선정 현황' (2014~2024년) 기준
 - 2024년 보조금은 전년 대비 약 2배('23년 570억원 → '24년 1,000억원)로 대폭 확대됐으나, 유턴기업 수는 '23년 22개사에서 '24년 20개사로 오히려 감소
- **(투자유치) 관련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FDI 유입금액은 OECD 평균을 하회**
 - (절대규모) 우리나라 FDI 유입은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39.4% 감소했으며 일부 연도 제외 OECD 평균을 하회하는 양상
 - (증액투자) 우리나라 FDI 증액투자*는 2022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
* '22년 169.3억 달러 → '23년 169.0억 달러 → '24년 139.1억 달러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정책)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외국인투자 촉진 인센티브 지원 발표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한도 '25년 25%까지 상향, 수입자본재 관세 등 감면기간 확대(최대 6년→7년) 등

국내 리쇼어링 기업 현황 (단위 : 개사)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주요국 FDI 유입 현황 (단위 : 십억 달러)



주 : OECD평균은 OECD 38개국 기준
* 출처 : World Bank

정책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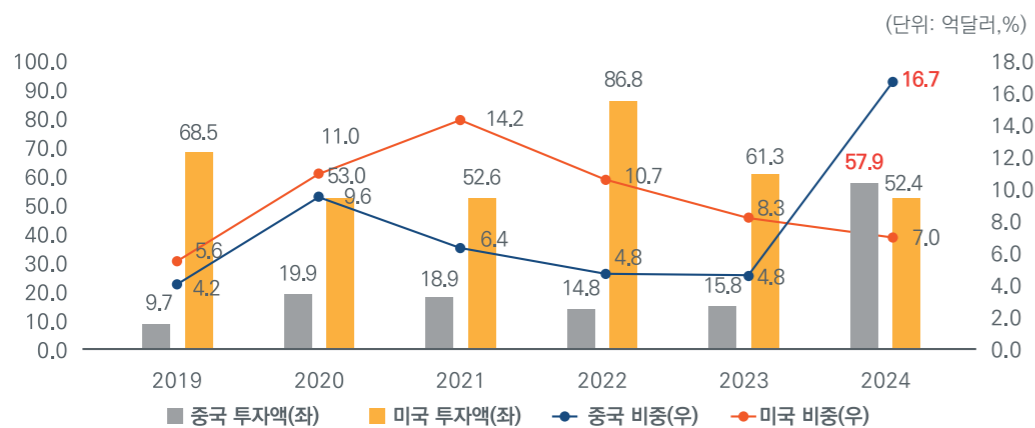
- **리쇼어링 요건 재정비를 통한 제조업 생태계 내재화**
 - (산업 생태계 유치) 동반·협력형 유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리쇼어링을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클러스터 단위의 생태계 유치 관점으로 접근
* 일본은 '22년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재정하여 전략산업을 클러스터 단위로 지원하고 있으며, 파나소닉, 캐논 등 일본 기업 뿐 아니라 대만의 TSMC, 일본 대기업 8개사의 반도체 합작회사 '라피더스' 등 유치 성과
 - (규제완화) 국내 생산품목 다변화를 위해 전 산업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요건을 완화하고, 리쇼어링 기업 인정범위를 확대
* 현재 첨단·국가전략기술 등 일부 분야에만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생산품목 다변화, 리쇼어링 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상을 전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 강화 필요
- **금융 인센티브 강화 및 예측 가능한 정책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 (증액투자 활성화) 기업의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단계별 재투자 금융·세제혜택 확대
 - (예측가능한 정책)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세제·법령·인허가 조건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규정을 명문화하여 규제 변동 위험 최소화

9-6 국내 산업영향을 고려한 외국기업 국내투자 유치

현실진단

- 외국인투자의 국내유치는 고용창출·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일반적으로 부각되며 대한민국 외국인투자 역시 지속 증가하여 지난해 346억달러에 이룸
 - 코로나19를 전후한 '19~'24년(6년 누계액) 기준 대한민국 투자는 미국-싱가포르-몰타-케이만군도-중국 순으로, 조세회피처 의심국을 제외하면 美-中이 주요 투자국
- 최근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추가관세 폭은 141%에 이르며('25.4.21 기준), 중국상품의 우회유입 가능성에 주목해 베트남 등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발표(베트남 46%, 캄보디아 49% 등)하였다가 이를 90일간 유예(4.10)
 - 트럼프 1~2기에 걸쳐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을 맡은 피터 나바로는 중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대중관세를 회피한다'고 주장(4.6)
- 이러한 상황에서 '24년 중국의 대한민국 투자가 급증하여,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발 대미수출에 대해 중국의 대미 우회수출로 의심할 가능성이 부각됨
 - 한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총액에서 중국발 투자의 비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2% 수준이었다가 지난해 16.7%로 급증, 기존 1위 투자국인 미국(7.0%)를 상회

미-중 양국의 대한민국 투자액(신고) 및 전체 투자액 중 비중('19~'24)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정책제안

- 외국인투자 심사기준에 '경제적 피해 야기' 기준을 추가, 반영할 필요
 -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및 시행령 제5조는 '국가의 안전' 등으로 심사 기준을 포괄 규정하는데, 통상마찰 등 경제적 위해(危害)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음
 - 한편 주요국은 외국인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반영하며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
 - * ①일본 : 2019년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개정을 통해 '일본경제의 원만한 운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가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 ②캐나다 : 「Investment Canada Act」을 통해 '캐나다에 대하여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외국인투자 심사기준으로 명시, ③독일 : 2020년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 심사 기준을 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대한 '실제의 심각한 위험'에서 그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으로 바꾸어 기준 강화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 '7) 기타 통상마찰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경제적 리스크에 대한 사전 조치 근거를 마련함이 바람직
- 외국인투자위원회내 외국인투자 심사 전문위원회 정례화 등 운용 강화
 - 악의적 목적의 외국인투자는 통상마찰 가능성뿐 아니라 내수시장 교란 등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미국, 네덜란드 등 주요국은 외국인투자 심사를 전담하는 상설조직을 두고, 안보·산업·통상 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심사체계를 운영
 - 한편 한국은 외국인투자를 담당하는 산업부 내에서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산재
 - * (산업부) 외국인투자위원회는 투자정책과, 통상분쟁 대응은 통상분쟁대응과, 산업피해 조사는 산업피해조사과 등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34조의2)은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두어 국가안보 위해 여부를 심의할 수 있게 하는 바, 대안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사전문위원회'를 정례 개최·적극 활용
 - * 투자담당 실장급을 전문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꾀함과 동시에 필요시 재외공관도 참여케 하여 투자희망 기업의 의도·현지 영업상황 등 정황도 파악

9-7 무역업계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력 강화

현실진단

- 우리 수출 기업의 주요 글로벌 규제에 대한 파악 및 대응 수준 미진
 - '26년도 본격 시행이 임박한 EU CBAM의 경우, '25년 4월 기준 대상 기업의 46.3%가 적용 대상임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 대부분 언론보도를 통해 제한적으로 규제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으며 제도에 대한 이해·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느낌

CBAM 무역업계 대응실태 조사결과

- 조사주체 : (사)한국무역협회
- 일 시 : 2025. 4. 3 ~ 2025. 4. 14
- 응답자 : CBAM 대상 업체 종사자 163명
- 주요내용
 - CBAM 제도 파악·대응 수준 및 규제대상 인지 여부
 - CBAM 탄소배출량 등록 여부 및 관련 애로사항, 정부 지원 요청사항 등

- EU 역외 CBAM 탄소배출량 검증에 대한 세부요건 미발표로 혼란 지속
 - 유럽계 EU-ETS 검증기관들은 자신들만이 CBAM 적격 검증기관이라고 주장
 - EU CBAM 이행규정에서는 CBAM 검증기관을 'ISO 14065' 인증 독립 검증기관으로 명시하나, 세부 요건은 '25년 하반기에 발표 예정으로 이와 관련 업계 혼란 지속
-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를 대외 환경당국에 적극 알리고, 정책을 건의하는 아웃리치 활동 부족

정책제안


- CBAM 등 주요국 환경규제와 고객사의 ESG 정보 요구가 현실화됨에 따라, 수출기업 환경규제 대응력 강화 플랫폼 구축 필요
 - 자체 대응이 어려운 중소 수출기업에 탄소발자국 점검부터 검·인증까지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플랫폼 필요
 - 글로벌 환경규제 관련 정보제공, 수도권 및 지방순회 설명회 개최, 초보기업 진단 및 교육,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컨설팅, 탄소저감 설비지원, 인증 등 수출기업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전반에 걸친 지원 확대
- 탄소배출 검·인증 관련 한-EU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및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한 아웃리치 확대
 - 탄소배출 제3자 검·인증 관련 한국과 EU 양측이 공정한 검증 프로세스에 기반하여 상호검증체계를 확보하고, 전과정평가(LCA*) 기반 탄소배출 검증 등 전 분야로 확대
 - * Life Cycle Assessment :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료채취~폐기까지 모든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환경 영향 분석
 - 환경규제 관련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EU집행위와 유럽의회 등에 적극 알리는 아웃리치 활동 강화 및 확대


21대 대선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10 경제영토 확장 - 수출지원

- 1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 강화
- 2 수출기업 해외인증 애로 해소 지원
- 3 간접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4 수출통제제도 절차 간소화 및 이행 부담 완화
- 5 경제안보 차원의 해외자원개발투자 정책 지원
- 6 외국인 해외마케팅 인력 활용을 위한 비자 완화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KEF 한국경영자총협회

 FKI 한국경제인협회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현장의 목소리

글로벌 시장에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수출 중소기업들은 현재 심각한 경영난과 경쟁력 약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판로 개척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리 융자, 보증료 지원 등 금융 지원이 필요합니다.”

50대 직장인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지원제도는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한 부분이 많고 수출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60대 직장인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 자금,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0대 중소기업 CEO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기반 확대를 위한 법·제도가 필요합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 할 때마다 통상 규제와 인증 절차, 각종 행정적 부담이 큼니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행정 간소화 및 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합니다.”

60대 중소기업 CEO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수출 기반을 확대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40대 직장인

“국내 지방 수출 중소기업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여 구인난이 심각합니다.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나 외국인 인력 채용 절차 등에 부담이 큼니다.”

30대 학생

10-1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 강화

현실진단

- 최근 한·미 기준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대출금리 인하 폭, 원자재 비용 증가, 관세 위기 등으로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 사정은 어려움
 - 수출기업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36.5%는 '현재 자금조달이 어렵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자비용이 '영업이익과 같거나 초과'한다는 응답도 43.7%에 달함
 - * 2025년도 1분기 무역업계 금융애로 실태조사(3/20~3/26, 500개사 응답)(무역협회)
 -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인하 폭은 제한적('24.9월~'25.2월 간 0.29%p 인하)이었으며, 동기간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비용 증가 등 복합적 위기 요인이 발생
-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의 마중물 역할이 필수적이나, 기업들은 금융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금리, 보증 전환, 심사 관행 등 여러 측면의 애로를 호소
 - (대출금리) 정부에서 기준금리를 낮춰도 시중은행에서 붙이는 가산금리가 그대로라, 기업들이 체감하는 금리는 쉽게 안 떨어짐(자동차부품 수출업체 G社)
 - (보증전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간 중복 보증이 불가하며, 보증기관을 바꾸려면 기보증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나 여력이 안 됨(화장품 수출업체 G社)
 - (심사관행) 은행에서 대출심사시 부동산 등 물적담보 외, 수출액, P/O(구매주문서), 계약서 등 다양한 항목을 고려해주길 희망함(자동차부품 수출업체 P社)
- 수출기업을 위한 한국은행의 저금리 무역금융 자금이 책정되어 있으나, 한도가 정체되어 있으며 가산금리로 인해 저리 공급의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의견
 - '25.2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무역금융을 포함한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1.50% → 1.25%로 인하했으나, 무역금융 한도는 '20년부터 1.5조원으로 정체
 - * 한국은행이 무역금융, 중소기업 대출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저리자금을 은행에 지원하는 제도

최근 무역금융 총액 및 한국은행 무역금융 한도·금리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2월~)
무역금융 총액	10.3조원	8.6조원	8.6조원	9.3조원	9.0조원	8.6조원	9.7조원 ¹⁾
한은 무역금융 한도 (금리)	2.5조원 (0.50%)	1.5조원 (0.25%)	1.5조원 (0.25%)	1.5조원 (1.75%)	1.5조원 (2.00%)	1.5조원 (1.50%)	1.5조원 (1.25%)

자료 : 한국은행

주1) : '25년 1월 대출금(말잔) 기준

- 기업은 최종적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무역금융 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의 가산금리로 인해 최종금리가 일반 대출금리 대비 높게 책정되기도 함

중소기업 대출금리와 무역금융 금리 비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중소기업 대출금리 ¹⁾	2.97	2.98	4.44	5.34	4.81
무역금융 금리 ²⁾	2.96	2.98	4.35	5.19	5.07

주1) : 통계청 국가정보 통계(주요기업 대출)

주2) : 무역보험공사 무역금융 금리

정책제안

- 무역금융(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 무역금융 중 한국은행 지원 한도를 현 1.5조원→3조원(+1.5조원)으로 확대, 금리를 현 1.5% → 1.0%(△0.5%p)로 인하해 수출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 완화
 - 한국은행의 저금리 자금이 늘어나면 실제 기업의 대출금리가 경감되는 효과 발생
 - * 금리감면폭 : [은행 내부 조달금리-한은 지원금리] x 지원비율(은행별 배정액/대출취급실적)
- 수출 신용보증 한도 책정 방식 다양화
 - 구매주문서 및 수출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P/O 파이낸싱(주문서 담보 대출) 등 구매확인서(P/O) 기반 정책금융 한도를 확대
 - *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초기 원재료 부담이 큰 반면, 수출대금은 사후지급되어 시차 발생
 - 보증한도 산정시 기업의 과거 매출실적 대신 지식재산권/DB 등의 미래가치 또는 기업의 성장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산출식을 고안해 정성평가 확대
- 주요 보증기금 간 전환보증 간소화 시스템 구축
 -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간 전환보증* 절차가 까다로워 대다수 기업은 이용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은행권 '대환대출플랫폼'과 같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조건 비교 후 자유롭게 보증을 이동할 수 있도록 자율 전환제도 구축
 - *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05년)으로 양 기관 간 '보증업무 특화 및 중복보증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복 보증이 금지되었으며, 대신 전환보증이 가능함
- 기업 편의 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금융 신청 체계 개편
 - 정책자금 선착순 지원 방식을 전수 접수로 개편, 정책금융 플랫폼 활성화 및 제출 서류 간소화, 과거 정책자금 신청 이력 활용해 사후 서류 제출 방식 추진 등

10-2 수출기업 해외인증 애로 해소 지원

현실진단

● 해외인증은 수출 3대 애로 중 하나로 수출기업에 있어 필수 선결과제임

- 각국은 안전·보건·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다양한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며, 정부는 복잡한 해외인증 정보와 지원사업의 원스톱 제공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을 총괄기관으로 해외인증지원단을 개소('23.4월)하여 운영 중
- * 수출 3대 애로 : 무역금융, 마케팅, 인증(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 * 해외인증 현황 : 국제공통 21개, 북미 119개, 유럽 118개, 아시아 242개, 중남미 49개, 오세아니아 28개 등 (참고 : 해외인증지원단(globalcerti.kr))



●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간 상호인정협정(MRA) 및 시험 인프라 부족

- 한국무역협회의 해외규격·인증 관련 설문조사('24.4.26~5.8)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83.1%가 규격·인증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애로사항은 ①비용 부담(77.7%)이 가장 많았고, ②복잡한 획득 절차(72.9%), ③소요기간 부담(49.4%), ④제도 파악이 어려움(48.8%) 등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인증 획득과 관련한 수출기업의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간 상호인정이 필요한데 정보통신(ICT) 관련 품목 이외에 의료기기 등 분야에서는 여전히 상호인정협정(MRA) 추진이 부족한 실정

*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 협정당사자 간에 '적합성평가 결과(인증, 시험성적서 등)'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 시험은 국내에서 실시하고 인증은 수출대상국에서 받는 1단계 MRA와 인증 취득을 포함한 전 단계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2단계 MRA로 나뉨

업종별 규격·인증 획득 평균 소요 비용 및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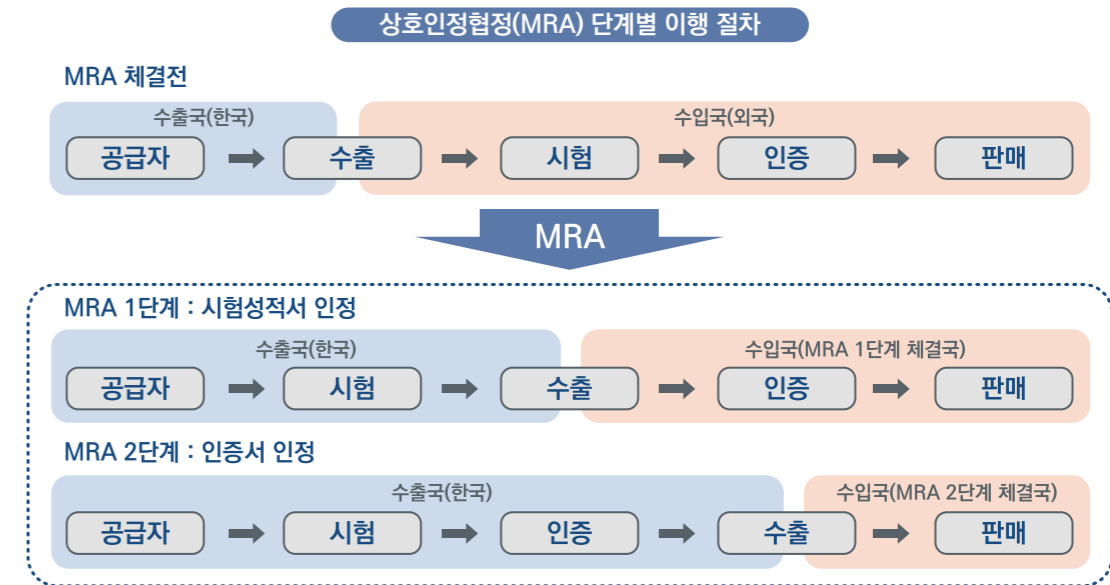
구분	개당 소요비용	개당 소요기간	개당 유효기간
전체 업종	1,131.0	6.1	17.7
IT	950.1	6.3	16.0
철강/기계/석유화학	1,455.9	5.9	17.0
식품/생활용품/서비스	488.6	4.7	18.7
바이오/화장품	1,091.1	6.7	21.0

* 자료: 한국무역협회 해외규격·인증 관련 설문조사('24.4.26~5.8)

정책제안

● 국가간·시험인증기관간 해외인증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에 따른 비용·시간 단축 및 신속한 인증 취득을 통한 신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국내 유망 수출품목에 대한 국가간·시험인증기관 간 상호인정협정(MRA) 확대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



※ 상호인정협정 1단계 : 국내에서 시험하고 해외(상대국)에서 인증 받은 후 수출 가능
 ※ 상호인정협정 2단계 : 국내에서 시험 및 인증을 받고 수출 가능

● 수출 유망산업·융복합 新기술 분야 국내 시험 인프라 확충

- 미래 수출 유망산업으로서 융복합 新기술 등 민간 시험인증기관의 진입장벽이 높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분야*의 국내 시험 인프라 구축 확대가 필요
- * 분야(예시) : 로봇, 모빌리티, 의료·바이오, 우주·항공, 수소 등
- 특히,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시험·평가·분석 장비 등을 갖춘 시험인증센터를 조성·운영함으로써, 지역 밀착형 기술규제·인증 애로 해소 체계를 확립

10-3 간접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현실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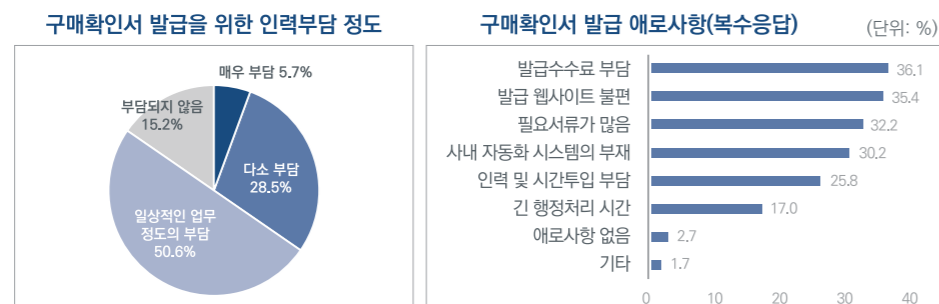
● 구매확인서 발급 비율 저조로 인해 간접수출 실적 인정 한계

- 간접수출은 중소기업의 수출 방식으로 직접수출 대비 진입 장벽이 낮고, 국내 대기업 및 수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수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
 -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총 직접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나, 총 간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로 추정
- 종합무역상사와 같은 수출 중개업자가 타기업의 완제품을 중개하는 형태 혹은 국내 직접수출업체에 자사의 원자재나 중간재 제품을 공급하는 형태로 발생하며 구매확인서를 통해 간접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직접수출기업(구매기업) 중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기업의 비율이 76%로 높은 편*으로 간접수출을 하는 공급기업들이 수출기업으로서의 정책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간접수출 실적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 * 한국무역정보통신 집계, 중소기업 간접수출 정책 포럼(2022)
 - ** 구매확인서 발급을 통해 ①공급기업의 수출실적 인정(포상 및 수출지원사업, 수출금융 지원 가능), ②구매기업의 수출용 물품 및 원·부자재 구매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③관세 환급, 수출관련 보증 등 활용 등 혜택 제공
- 간접수출기업은 국내 공급망을 통해 이미 기업 및 제품 경쟁력에 대한 신뢰도가 구축되어있어 잠재적 직접수출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성장주체로서 이들의 수출역량 제고를 위해 간접수출 실적 인정의 제도적 활성화가 시급

● 발급 부담 및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구매확인서 제도 활용 미흡

- 구매확인서 발급 관련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구매기업은 공급기업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주체로서 관련 업무를 위해 인력과 비용 등을 부담하나 30% 정도가 이에 대한 인력투입이 '다소 부담'되거나 '매우 부담' 된다고 응답
 - * '24년 간접수출 기업 설문조사(무역협회), 간접수출 관련 구매 및 공급기업 905개사 대상
- 구매확인서 발급 촉진을 위해 구매기업들은 발급 절차 간소화, 발급 수수료 인하, 필요서류 축소 등을 제안
- 한편, 하도급법상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였음에도 공급기업의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을 구매기업이 거부하는 사례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25.7% 정도로 조사되어 수출 실적 증명 발급 유인을 제고하는 대책 마련이 요구됨

구매확인서 발급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정책제안

● 간접수출 인정을 위한 행정 절차 개선

- 간접수출실적의 근거가 되는 구매확인서 발급 간소화를 위해 발급 주체를 구매기업뿐만 아니라 공급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수혜자 중심 신청 절차 개선
 - * 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자(공급기업) 요청시 원청자(수요기업)는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나(하도급법 제7조의 2)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음
- 외국환은행의 입금정보 확인 없이 세금계산서만으로 실적 인정 등 간접수출실적증명 발급 간소화 (간접수출실적증명 발급 신청시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외국환은행 입금내역 등을 건별로 매칭·대조하는 수작업 요구)
 -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금액), 제27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시점), 제28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 수출실적인정 기준을 입금 시점에서 거래시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및 작성일자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간접수출실적증명 발급 절차가 간소화 되고 발급 기간도 크게 단축
 - * 세금계산서로는 실제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발행 이후에도 수정·취소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으나, 간접수출실적 증명 발급 기관인 KNET과 국세청이 연계해 확인·관리하는 방안 검토(국세청 협조 필요)

● 간접수출 활성화를 위한 인식 개선 및 인센티브 강화

- 간접수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 협업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고리로서, 대국민 캠페인 및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수출기업도 한국 수출과 부가가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 제고가 필요
- 우수 구매기업(확인서 발급 이행률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행정적 우대(세제 지원, 수출지원사업 혜택 등)를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인식 개선 유도

10-4 수출통제제도 절차 간소화 및 이행 부담 완화

현실진단

- 우리나라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참여 중이며, 국내에서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전략물자 수출 시 수출허가 등 수출통제 제도를 시행 중

*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 NSG(핵공급국그룹), AG(호주그룹),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WA(바세나르협정)

- 러-우 전쟁('22.2월 발발) 이후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對러시아 제재에 동참 중인 가운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통해 수출통제 품목을 규정하고 있음

- 전략물자*뿐 아니라 일반 산업재 중 상황허가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경우,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 시 사전에 심사를 통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

* 통상 산업용이나 무기전용이 가능해 국제협약으로 정한 이중용도 물품(Dual use goods)

** 비전략물자이나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의심되는 품목

국내 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지정 현황

구분	지정시기	상황허가 대상품목 지정 현황
1차	'22.3월	· 선박 등 57개 품목
2차	'23.4월	· 기계류, 전자 등 741개 품목 추가 지정
3차	'24.2월	· 건설기계, 승용차 등 682개 추가 지정
4차	'24.9월	·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 243개 추가 지정
5차	'25.2월	· 반도체장비, 윤활유첨가제, 공작기계 등 29개 추가 지정(단, 인도주의 성격의 의료기기는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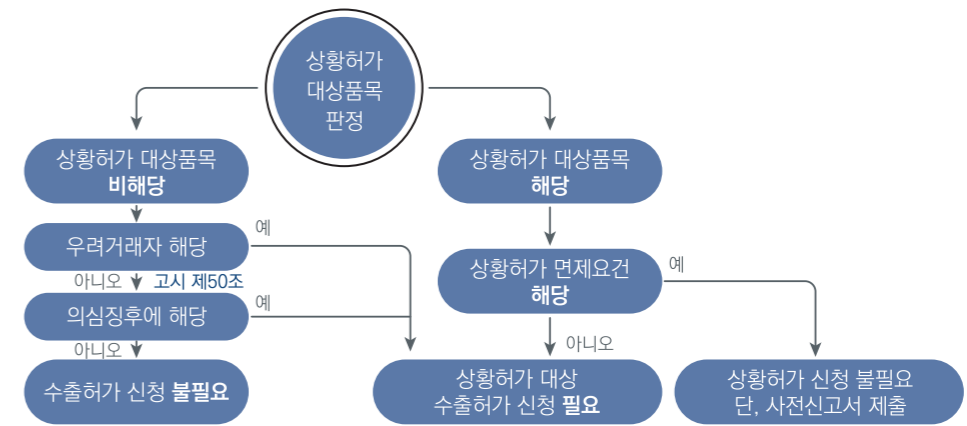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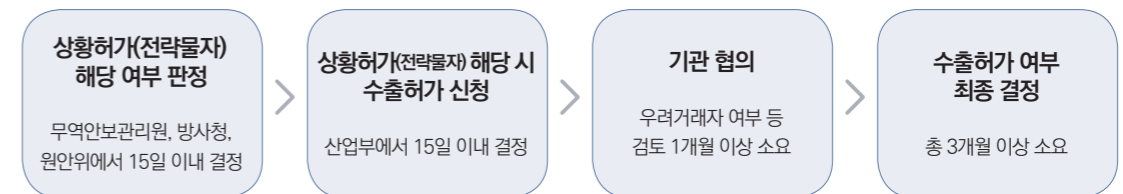
- 상황허가 대상 품목 판정 및 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수출기업 입장에서 제출서류 구비 및 관련 요건 충족이 쉽지 않아 "수출 중단 또는 지연" 등 애로가 지속

- 전문판정 소요기간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최대 15일* 이내이나 기술심사, 행정기관과의 협의, 서류 보완 등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더 오랜 기간이 소요

* 동 기간에는 업체의 제출서류 보완 기간과 외교부, 국정원, 현지 재외공관과의 협의 및 수입국 현지 조사기간 등을 제외한 것으로, 이를 합산하면 실제 보통 2~3개월 가량 소요됨

- 또한, 심사를 위해 수출기업에 '최종사용자 서약서', '최종사용용도 설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수입자가 최종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관련 서류 구비 및 입증에 쉽지 않아, 최종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사례들이 반복해서 발생

상황허가 품목판정 및 허가 절차도



* 출처 : 무역안보관리원

정책제안

- 수출통제 심사 기간 및 절차 간소화

- 전문판정 심사 및 수출허가 승인 기간 단축(예 : 15일 → 7일)
- 긴급을 요하는 수출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패스트트랙 신청 절차 마련

- 수출통제제도 이행에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 보호 및 지원방안 마련

- 최근 무역안보 및 자국 산업기술 보호 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로, 국제정세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국내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책 필요

(예시) ▲산업별 수출통제 대응을 위한 행정업무 등 컨설팅 지원, ▲대체시장 발굴 및 수출선 다변화를 위한 전시회 등 마케팅 지원, ▲국제제재 동참에 따른 피해기업 특례보증 및 긴급 수출안정자금 확대 지원 등

10-5 경제안보 차원의 해외자원개발투자 정책 지원

현실진단

- **해외자원개발은 첨단산업 생태계 지속을 위한 경제안보 분야 주요 과제임**
 -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자원 확보 경쟁의 심화로 해외자원개발은 단순한 민간 투자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안보 과제로 부각되었으며, 특히 반도체, 2차전지, 방산 등 미래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유금속 및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산업 생태계 지속과 직결
- **주요 전략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 자원무기화, 글로벌 공급망 단절 위협에 취약한 구조**
 - 한국의 에너지·자원 자급률은 일본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에너지와 희토류 수입 의존도는 높은 수준*
 - *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 중국이 수출 제한에 나서는 희토류 7종(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에 대한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80%에 달함
 -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인해 주요 금속류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 차질 및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 전례가 있음
- **그럼에도 우리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규모는 과거에 비해 정체 또는 감소세**

해외자원 개발현황

(단위: 건,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해외자원개발 사업수(누적)	석유,가스	367	372	376	378	380	380	383	386	391
	일반광물	525	533	538	544	547	549	551	553	555
자원개발률*	석유,가스	16	15	13	13	13	12	11	11	11
	유연탄	53	50	38	30	32	34	41	40	40
	철	15	28	26	32	32	34	34	43	37
	동	6	7	8	8	10	12	8	10	12
	아연	21.2	22.8	20.6	19.9	20.7	21.5	21.6	19.4	23.4
	니켈	68.9	63.2	61.8	55.2	55.0	47.2	44.8	44.0	43.3

*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개발, 생산하여 확보한 물량이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23년말 기준)

- **가격 변동성, 고위험·고비용 구조, 현지 규제 리스크 등에 더해 국내 정책지원의 불확실성과 한계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
 - 현행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3%)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국제정세 불안과 자원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되는 등 일몰이 반복적으로 도래하여 중장기적 투자계획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R&D 및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재

정책제안

-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33년까지 연장**
 - 현행 세액공제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한시법에 근거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3년으로 7년 연장하여 예측 가능성 및 정책 일관성 증대
-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율 단계적 확대 ('25년 3% → '26년 5% → '30년 10% 수준)**
 - 현재 해외자원 직·간접 취득을 위한 투자·출자금액의 3% 세액공제율 적용 중, 국가전략기술 투자의 세액공제율 15%(대기업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미국의 경우 IRA를 통해 핵심부품 및 광물생산비용 10% 세액공제 등 지원 중
- **해외자원개발 시설투자 및 광산운영 R&D 투자 세액공제 도입**
(국가전략기술 수준의 시설투자 15%, R&D 투자 30~40% 신설)
 - 해외자원개발은 오지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인프라 확충 등에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므로 시설투자 및 광산운영 R&D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통한 투자 활성화 필요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단위: %)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	15		25	
반도체***	20		30	

R&D 비용 세액공제율 (단위: %)

구분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중소기업	30~40	40~50
중견기업	20~30	30~40
대기업		

*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은 2027.12.31.까지
** 국가전략기술 분야 세액공제는 2029.12.31.까지
*** 반도체분야 세액공제는 2031.12.31.까지로 차등적용

10-6 외국인 해외마케팅 인력 활용을 위한 비자 완화

현실진단

- 무역업계 외국인 사무직 채용 실태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27%는 외국인 사무직 채용 경험이 있으며, 49.5%는 향후 3년 내에 외국인 사무직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

무역업계 외국인 사무직 채용 현황 및 만족도 실태조사

- 대상 :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및 수출기업 인사담당자
- 기간 및 응답 : 2025. 2. 25 ~ 3. 4, 총 659개사 응답(수출기업 87.7%)
- 내용 : 외국인 사무직 인력 채용 현황, 만족도, 향후 채용 수요, 지급 및 희망 연봉 등

-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E1~E7) 취업자는 6.4%(24년)에 불과하나, 무역업계는 해외마케팅 수요를 반영해 높은 수준의 채용률을 보임

- 수출기업의 외국인 해외마케팅 인력은 '특정활동(E-7)' 비자가 필요한 전문인력(E-7-1)으로, 엄격한 발급 기준으로 활용 수요 대비 비자 발급이 저조

- 해외마케팅 인력은 특정활동 중 '전문인력(E-7-1)'에 해당되며, ①학위나 경력, ②임금, ③내국인 대비 고용 가능 인원 등 엄격한 기준을 요구
- * 특히 임금 기준이 엄격한데, '전년도 1인당 국민 GNI의 80% 이상'을 적용해 '25년 기준 3,996만원이 적용(단, 현재는 연봉 기준을 2,867만원으로 한시('25.4.1~12.31) 적용)

- 이는 전문인력(E-7-1)이 ①관리자(15개)와 ②전문가 및 관련종사자(52개)를 모두 포괄해 '임원이나 임원에 준하는 관리자'에 해당하는 임금 요건을 적용하기 때문

* 관리자는 경제이력단체나 기업의 고위임원, 경영지원 관리자 등 일정 직위 이상 직원

- 반면 실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인력은 해외영업원, 개발자, 통번역가 등 실무 수준의 사무직으로 관리자급 임금 요건을 적용하기 어려움

- 이로 인해 전체 특정활동(E-7) 체류자는 2만 명('21년)에서 6만 2천 명('24년)으로 증가했으나, 전문인력(E-7-1)은 직종·임금 등의 제한으로 2만 명 수준에 정체

* E-7-1 체류자 추이 : ('19)13,771명 → ('22)11,307명 → ('24)12,216명

- 또한 동 실태조사에서 기업들은 외국인 사무직에게 비즈니스 한국어 능력과 직무 경험을 요구했으나, 관련 직무 교육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

- 특히 '최소한의 한국어 수준'으로 ①문서 이해 및 기본 회화(34.9%), ②비즈니스 회화 및 이메일 작성(23.6%) 등의 수준을 요구

정책제안

- 외국인 해외마케팅 인력의 체류자격 조건 완화

- 무역업계는 ①해외마케팅 니즈(65.2%), ②인건비 절감(28.6%)을 위해 외국인 사무직 채용을 희망
- 반면 전문인력(E-7-1)에 적용되는 임금 요건은 3,996만원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입 연봉*과 외국인 사무직 초봉**을 감안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
- *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 '24년) : (1년 미만) 213만원, (1~2년 미만) 301만원
- ** 외국인 사무직 초봉(무험 실태조사, '25년) : (2천5백~3천만원) 42.5%, (3천~3천5백만원) 30.5%
- 정부 역시 이런 점을 감안해 국민 GNI 적용을 유예(3개월, '24년)하거나 전문인력 임금 요건을 완화(2,867만원 적용, '25년)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
- 기업의 해외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체류자격 관리를 위해서는 한시적 유예조치가 아닌 현실적인 임금 요건 재정립 필요
- 전문인력(E-7-1) 중 해외영업직, 통번역가 등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준전문인력(E-7-2)으로 편입시켜 임금 요건을 최저임금 이상 수준으로 완화 필요

- 외국인 사무직 인력을 위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확대와 직무 경험 제공 방안 마련

- 기존 한국어능력시험 외에 ①비즈니스 한국어 능력 시험 신설, ②사회통합프로그램 내에 한국 기업에 대한 이해 과정 신설 등을 추진
- 외국인 유학생, 구직비자(D-10) 소지자는 TOPIK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으나 기업이 원하는 비즈니스 한국어와는 다소 괴리됨
- 신설한 비즈니스 한국어 능력시험, 사회통합프로그램 수료 여부를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허가나 구직비자 전환 시의 기준으로 활용
- 또한, 수출 중소기업과 구직 중인 외국인이 적절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민관 플랫폼의 정보를 일원화해 제공하고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을 확대
- * 현재는 사람인, 잡코리아, 중기부 K-WORK, 코트라 해외전문인력유치센터에 각각 등록하거나 지인 추천에 의지하는 구조
- 특히 기업들은 ①직무 경험 필수(22.7%), ②특정 국가나 지역 시장 경험(18.4%)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인턴 제도 등의 확대도 필요


21대 대선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11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 자본·금융


- 1 한국형 인내자본 펀드 신설
- 2 첨단산업 투자 확충 위한 규제 완화
- 3 민간벤처투자 활성화
- 4 토큰증권(ST) 제도화
- 5 자본시장 자금유입 촉진
- 6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

 대한상공회의소

 KEF 한국경영자총협회

 FKI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현장의 목소리

혁신이 필요한 곳에 자금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최근 첨단산업분야는 기술력은 물론 자본력에서 승패가 좌우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자금 부족 때문에 사업화에 실패하지 않도록
자본시장과 기업금융의 파이를 획기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40대 IT기업 CEO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생태계가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합니다.
당장의 수익성보다 미래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30대 벤처기업 CEO

“금융업은 여전히 소매금융과 예대마진 위주의 수익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철 지난 칸막이 규제를 개선해 금융혁신과 디지털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50대 금융업 종사자

자본시장 살릴 묘책 없나요?

“새로운 금융투자상품과 기법이 나온다는데 막상 실제로 투자하기는 겁이 납니다.
입법과 제도화가 빨리 이뤄지면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투자하지 않을까요?”
50대 주부

“기업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자본시장도 투자자 친화적으로 설계됐으면 합니다.
투자인센티브를 늘리고, 특히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0대 대학생

11-1 한국형 인내자본 펀드 신설

현실진단

- 미래 첨단기술 선점을 위한 장기 인내자본이 부재한 상황
 - 고성장·고위험 미래첨단기술 분야는 장기적 안목으로 개발 초기의 투자가 중요
 - 민간 기업과 자본은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
 - 우리 기술력으로 직접 개발하기 어려운 미래기술 확보 위해 국가가 인내자본으로서 함께 투자하여 新산업 형성 및 발전이 필요한 상황
- 성장성 높은 미래산업 확보 위해 주요국은 정부 주도의 인내자본 출범 및 운용 중
 - 싱가포르는 1974년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을 설립하고, 2000년대부터 해외 첨단 스타트업 대상으로 투자를 확대해 혁신활동 및 수익성 창출
 - 영국은 2018년 영국 산업은행 자회사로 '영국 인내자본(British Patient Capital)' 출범
 - 국내 국부펀드는 재무적 투자 중심으로 운용돼 장기적 전략투자에 부적합
 - * 한국투자공사(KIC)는 '국부중대·금융산업 발전이 목적'이라고 정관상 규정

싱가포르 테마섹 특징

1 자율 경영(독립투자)

✓ 회사법 적용 받는 일반 투자 회사로 정부·국회 간섭 無
출자자인 재무부는 주주권만 행사, 그 외에는 간섭 없음

2 공격적 투자

✓ 고위험·고성장·전략산업 투자에 방점
벤처, 사모펀드, 비상장주식 등 다양한 종목에 투자

3 대규모 자산운용

✓ 약 388조원 규모 자산운용(전세계 12위 수준)

테마섹 해외기업 투자 사례



정책제안

- 정부의 인내자본 출자 통해 '투자지주회사'(한국형 테마섹) 설립
 -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기관 형태로 국유자산 매각 등을 통해 초기 재원 확보
 - 자산운영사 형태로 중장기 투자정책 등은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정하고, 자금 운영은 투자지주회사 내 섹터별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결정
 - 첨단산업의 실제 기업지원 위한 조건 반영
 - * 경쟁력 있는 금리, 운영자금 지원, 해외법인 설립시 출자 지원, 대환지원 등

투자지주회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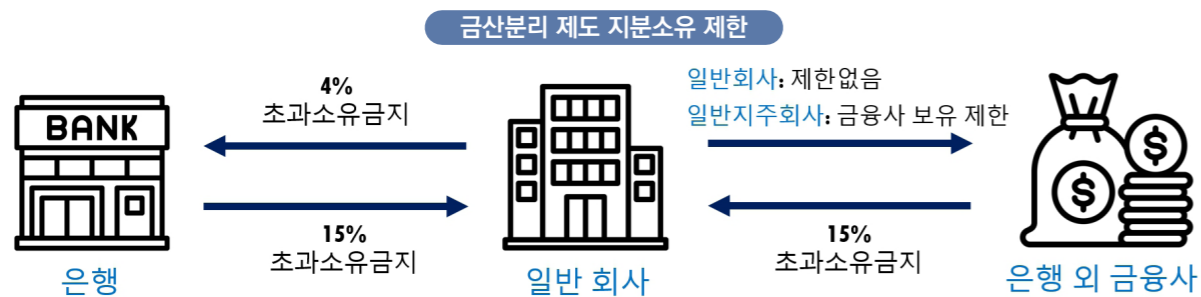
11-2 첨단산업 투자자본 조성 위한 금산분리 완화

현실진단

- AI 등 첨단기술 확보하려면 대규모 자금 필요하나, 금융업 보유규제로 자금조달 어려움
 - 우리나라는 자본건전성 유지 및 기업집단 내 사금고화 방지 등의 명분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업 소유 통한 자금조달 엄격히 제한
 - * 비금융사의 은행·은행지주사 출자제한(4%), 비금융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 등
 - 예외적으로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중기 대상 투자목적 CVC 소유는 허용돼 있으나, 엄격한 규제로 해외 유망기업 인수나 펀드조성이 실패하는 사례 발생
 - * 외부출자 비중 제한(40% 이내), 해외투자 비중 제한(총자산 20%이내), 부채비율 제한 (200%)
 - 반면 일본의 경우 소프트뱅크(IT기업)가 GP 맡아 대형펀드(비전펀드) 운영하는 등 외국 전략펀드는 금융기법 활용해 순식간에 미래기술 선점
 - * 비전 1호펀드(1,000억\$), 2호펀드(1,080억\$)에 사우디국부펀드, 애플, MS 등 LP 참여
- 금융사의 비금융업 영위도 제한돼 있어 금융혁신 및 사업다각화 저해
 - 출자제한(금융지주회사는 5%, 기타 금융사는 15%) 및 자회사 출자가능업종포지티브 규제(열거된 것만 허용) 등 비금융업 영위 엄격히 제한
 - 부수업무 신고나 혁신금융서비스(금융샌드박스) 지정 통해 비금융업 영위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허용 범위 협소하고 심사 과정 엄격해 활용 불편
 - * 부수업무 : 금융의 고유업무와 관련해 자연히 부수되는 업무 (ex. 은행업의 채무보증, 어음인수 등)
 - 반면 해외 주요 금융사는 비금융 신사업 통해 새 수익 모델 창출 중
 - * 美 JP모건체이스(여행 포털+카드업 시너지), 日은 '16년 은행법 개정 통해 부수업무 범위 확대

정책제안

- 비금융사의 금융사 보유제한 완화해 첨단산업분야 및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
 - 금융사 보유제한을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완화해 신사업 추진 지원
 - * 일반 금융사 출자제한(15%), 인터넷전문은행(34%) → 全 금융사 34%로 일원화
 - 일반지주회사의 은행 외 금융사 소유 금지 규제 완화
 - * 미국의 경우 일반지주사의 은행소유만 금지, 은행 외 금융사 소유는 가능
 - 일반지주회사의 은행 외 금융사 보유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 보유 우선 허용해 전략산업펀드 조성, 미래산업 대응 지원
 - 외부출자한도(40→50%) 및 해외투자한도(20%→30%) 상향 등 CVC 규제 완화
 - * 22대 국회 공정거래법 개정안 계류 중. 김상훈 안(24.7월), 박수민 안(24.8월) 등
- 금융사의 비금융사 보유제한 완화해 금융혁신 및 사업다각화 촉진
 -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 폐지(지주회사법 제6조의 3 삭제)
 -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금융지주회사와 비지주 금융사의 출자제한 일원화
 - * 금융지주사(5%), 타 금융사(15%) → 모든 금융사(15%)
 - 금융사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비금융사 출자제한(15%) 폐지
 - 금융사 출자가능업종 및 부수업무의 범위를 현행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된 것 외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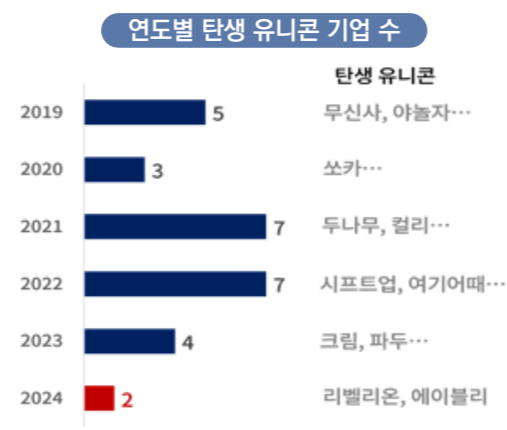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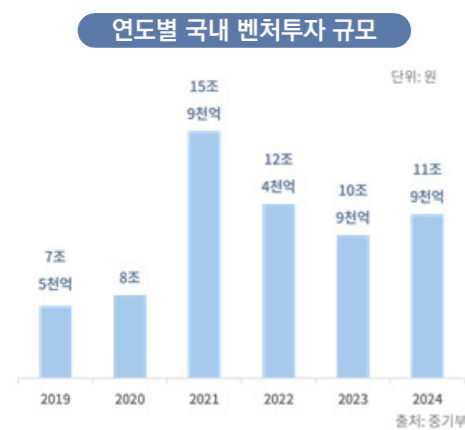


11-3 민간벤처투자 활성화

현실진단

● 최근 벤처투자 및 유니콘 기업 수가 줄어드는 등 경제의 역동성 저하 우려

- 팬데믹 시기 유동성 확대로 증가했던 벤처투자는 '21년 이후로 하락세 전환
 - * 국내 벤처투자 규모(중기부) : ('21년) 15.9조원 → ('22년) 12.5조원 → ('23년) 10.9조원 → ('24년) 11.9조
- 신규 유니콘 기업 수도 최근 하락세
 - * 유니콘 기업(중기부) : ('21년) 7개사 → ('22년) 7개사 → ('23년) 4개사 → ('24년) 2개사



● 벤처투자 시장은 정책금융 의존도 높은 반면 민간자본 유입은 부진

- 국내 벤처투자는 절반 이상이 정부 지원과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하는 구조
 - * 벤처기업 신규자금 조달처(중기부, 2023년) : 정책금융(24.1%)·금융기관대출(28.8%) vs. VC(10.2%)·회사채 발행(3.5%), R&D자금(14.1%), 기타(19.4%)
- 기존의 주요 모험자본 투자기구는 각각 자금모집에 일정한 한계
 - * VC는 창업초기자금 위주(85%가 창업초기단계)이며 소규모 투자(평균 25억)
 - * 공모펀드는 환금성 떨어져 비상장사 투자 소극적, 일반사모펀드는 3~5억원 투자금액 제한,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 참여 제한

● 반면 미국 등 주요국은 벤처·혁신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기구(BDC)를 도입하여 민간 개인투자자들의 벤처자금 유입 촉진

-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공모·상장형 투자기구로 민간 모험자본 공급 도모하는 수단
 - * 개인투자자 자금 공모 → 자산의 40% 이상 비상장 벤처 투자하는 펀드 형성 → 펀드 상장

- 개인은 상장펀드 지분을 타인에게 자유롭게 매매 가능해 환금성이 보장되면서 소액으로도 벤처투자에 대한 접근성 확대
- BDC 펀드 자체는 환매금지기간 설정 등으로 환매를 제한해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치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BDC 도입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됐으나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논의 지지부진

- 21대 국회 발의('22.5월, 정부안), 투자자 보호 미흡 등 반대의견으로 임기만료 폐기
-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계류 중이나 입법 위한 논의는 더딘 상황
 - * 정부안('24.7월), 이헌승 안('24.8월)

정책제안

● 자본시장법 개정 통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 국내 입법 발의안은 미국 BDC에 비해 오히려 투자자 보호수단 충분
 - * 미국 BDC는 안전자산 투자 의무 없으나 발의안은 10% 이상
- 향후 투자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시행령 등으로 보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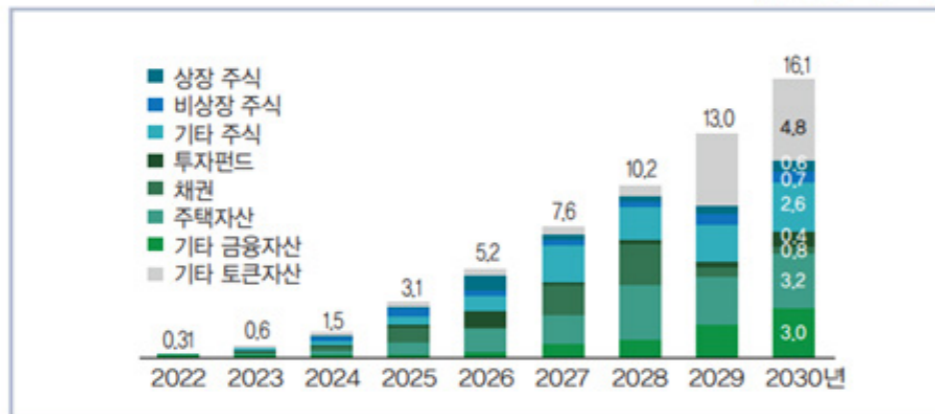
11-4 토큰증권(ST) 제도화

현실진단

- 최근 온라인·디지털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非금전 고가 자산에 대한 수익 청구권을 나누는 조각투자 수요 확산
 - 부동산, 음원, 미술품 등 고가자산에 자산가 아닌 일반투자자도 소액투자 가능
- 조각투자 위한 증권 형태로는 분산원장기술 활용한 디지털 증권인
 토큰증권(ST : Security Token)이 가장 적합
 - 정보를 다수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탈중앙화 방식의 증권발행 방식
 - 보안성·신속성 향상, 거래단위 분할 쉬워 조각투자 용이
- 글로벌 토큰증권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며, 국내 시장도 성장세 지속
 - BCG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토큰시장 규모는 2022년 3,100억 달러에서 2030년 16.1조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 2030년에는 토큰증권(ST) 자산이 글로벌 GDP의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
 - 국내 조각투자 토큰증권 시장 시가총액은 2024년 34조원(GDP대비 1.5%)에서 2030년 367조원(14.5%)으로 성장 전망(PwC)
 - * 국내에서는 부동산 분야가 토큰증권발행(STO) 대중화에 빠르게 도달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토큰증권시장 전망

(단위 : 조달러)



자료 : Boston Consulting Group

- 그러나 우리나라는 토큰증권 발행·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
 - 현행법상 금융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만 일부에 대해 발행·유통이 허용
 - * 뮤직카우(음원), 카사코리아(부동산), 미술품(테사) 등
- 토큰증권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법안(윤창현 의원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
 - 21대 국회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안 임기만료 폐기
 - * 전자증권법 개정안 : 분산원장을 전자증권의 형태로 인정
 - * 자본시장법 개정안 : 비정형증권을 유통하기 위한 여러 소규모 장외시장 형성
 - 22대 국회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안(강준현 의원 등) 발의된 상태
- 토큰증권 제도화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련 사업 추진 애로
 - 조각투자 스타트업 및 일부 증권사들은 막대한 비용 들여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 구축했으나 사업 진행 난항
 - 증권업계는 제도 개선 지연으로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소극적

정책제안

- 토큰증권 제도화 관련 법안 조속입법
 - 전자증권법 개정 통해 발행 가능한 증권 형태로 토큰증권 허용
 - 자본시장법 개정 통해 토큰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가치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토큰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은 가치 산정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 존재

11-5 자본시장 자금유입 촉진

현실진단

● 국내 가계자산의 상당부분은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으로 구성

-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전체 가계자산의 64.4%를 차지
- 반면 미국·일본·영국 등은 가계자산의 50% 이상이 금융자산

주요국 가계자산 구성 비교(2021)

(단위 : %)

구분	한국	미국	일본(2020)	영국	호주
금융자산	35.6	71.5	63.0	53.8	38.8
비금융자산	64.4	28.5	37.0	46.2	61.2

※ 출처 : 금융투자협회(2022)

● 금융자산 중에서도 현금·예금 비중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보다 높음

-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슷한 구조로 현금·예금(43.4%), 금융투자상품, 보험·연금 순
- 반면 미국은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최대이며, 영국·호주는 보험·연금 비중이 최대

각국 금융자산 비중 구성 비교(2021)

(단위 : %)

구분	한국	미국	일본(2020)	영국	호주
현금·예금	43.4	13.2	54.2	27.1	21.6
금융투자상품	25.4	58	16.3	15.6	18.2
(주식)	20.8	40.2	10.4	11.1	17.3
(채권)	2.3	2.3	1.3	0.2	0.1
(펀드)	2.3	15.5	4.5	4.3	0.8
보험·연금	30.4	28.6	26.7	53.1	58.2
기타	0.8	0.2	2.8	4.2	2

※ 출처 : 금융투자협회(2022)

●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개인의 단기투자 비중이 높은 편

- 개인 평균 주식보유기간은 한국 코스피가 미국 NYSE보다 훨씬 짧은 편
- * 韓 KOSPI : ('19) 8.8개월 → ('20) 2.8개월 → ('21) 2.7개월 → ('22) 2.9개월 (출처 : KRX)
- * 美 NYSE : ('19) 6.5개월 → ('20) 5.5개월 → ('21) 5.0개월 → ('22) 5.2개월 (출처 : SEC)

● 주요국은 금융투자상품 투자 늘리고 장기투자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수단 마련

- 미국은 국내 주식 60일 이상 보유 시 배당소득세는 0%, 15%, 20%의 세율로 분리과세,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역시 0%, 15%, 20%의 세율 적용(그 외의 경우는 10~37% 종합과세)

- 영국, 일본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수익 전액 비과세하고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미성년자도 가입 허용
-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기간에 따른 세제혜택 없음

정책제안

● 주식 등 자본시장 투자 늘리기 위해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의 규모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세율 인하
- * (예시) 연 2천만원 이하면 15.4%, 2천만원 초과하면 최대 49.5% → 27.5% 인하
- 전면 분리과세 및 세율 인하 어렵다면 현재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박수영 의원안)의 통과 추진
- * 주주환원 확대기업(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하면 배당소득세 15.4% → 9.9%, 2천만원 초과하면 최대 49.5% → 27.5%로 인하여 분리과세

●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 투자기간에 비례한 배당소득세(15.4%) 차등 부과
- * (예시) 1~3년 보유시 13.2%, 3~5년 11%, 5~10년 8.8% 등

●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등 확대

- 현재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박대출 의원안, 이강일 의원안, 이소영 의원안) 발의돼 계류 중
- 각 법안 중 투자자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도입 추진

구분	현행	박대출 안	이강일 안	이소영 안
연 납입한도	2천만원	4천만원	(1년차) 2억2000만원 (2~5년차) 2000만원	2천만원
총 납입한도	1억원	2억원	3억원	1억원
비과세한도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	수익전액 비과세	현행과 동일, 4년차부터 매년 100만원씩 상향

11-6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

현실진단

- 2013년 금융사 보안 강화 취지로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도입
 - 당시 사이버 공격으로 농협, 신한은행, 제주은행, KBS, MBC, YTN 등 해킹 피해
 - 보안 강화 위해 금융사 네트워크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망분리 규제 도입
 - * 중요 전산자료가 저장된 내부망을 인터넷에 연결된 외부망과 차단해 정보 유출 방지
- 망분리 규제는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및 AI 활용 금융서비스 개발 저해
 - 최근 소프트웨어 시장이 자체 구축형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SaaS)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생성형 AI의 활용이 금융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상황
 - 생성형 AI 등 최신 IT기술을 활용하려면 인터넷을 통해 접근 가능한 AI 모델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하나 망분리 규제로 업무상 불편을 넘어 금융경쟁력 저하 요인
- 미국, 유럽, 호주 등 주요 선진국 금융권에서는 망분리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
 - (위험 기반 접근) 기관의 규모와 리스크 수준에 따라 규제강도를 차등 적용
 - (유연한 규제 방식) 법적 강제보다는 지침과 모범 사례를 통해 자율적인 관리 유도
 - (디지털 혁신 지원) 보안 요건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AI 등 신기술 도입 허용

주요국 망분리 규제방식 비교

구분	규제원칙	재량권수준	금융회사의 책임성
미국	· 네트워크 구분 및 접근통제를 통한 보안확보 · 금융회사의 책임성 강조	높음 (망분리 방식 선택)	· 규제위반의 심각성을 고려한 사후 규제 · 금전적 제재 중심
유럽	· 정보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보장 · 금융회사에 대해 높은 수준의 책임 요구	높음 (망분리 방식 선택)	· 엄중한 금전적 제재를 통한 사후규제
호주	· 다층화된 보안 통제장치 마련 · 금융회사의 책임성 강조	높음 (망분리 방식 선택)	· 벌금, 시정명령, 면허정지 등 사후규제
한국	· 망분리 의무 부과 · 금융회사의 책임인식 저조	낮음 (망분리 방식 지정)	· 과징금 및 과태료

* 출처 : 자본시장연구원(2024)

정책제안

- 정부가 현재 지정 심사 중인 망분리 관련 금융샌드박스의 조속한 상시제도화
 - 정부는 생성형 AI활용 및 클라우드 기반 응용프로그램 이용범위 확대, 가명정보 활용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허용하는 금융샌드박스 지정 신청 받은 상황
 - 글로벌 금융혁신경쟁에서 이미 많이 뒤쳐진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가명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신용정보까지 직접 처리하는 2단계 샌드박스 추진
 - 금융샌드박스 실증특례기간(2년) 경과 전에 보안강화조치 등 마련해 상시법화 추진
 - * 보안기술 수준이 높은 경우 물리적 망분리 아닌 논리적 망분리 허용(PC 1대로 외부-내부망 SW적으로 분리 → 외부 클라우드 활용 후 내부망으로 전환해 작업)

21대 대선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12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 인력

- 1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한 고령자 고용연장
- 2 출산·육아 친화적 근로문화 확산 지원
- 3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 4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 5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활용 확대
- 6 해외 고급인력 유치 확대
- 7 취업 의지 촉진을 위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KEF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FKI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현장의 목소리

세대를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년과 중장년층 모두를 아우르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합니다.”

60대 은퇴자

“중년에도 재취업할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중년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혜택을 더 주는 방법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50대 주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연계된 맞춤형 채용 프로그램을 확대해주세요. 전공·직무 매칭 기반 훈련을 제공하고, 수료 후 채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인턴십 제도를 강화해주세요.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20대 학생

“저는 20대 취업준비생입니다. 현재 청년들을 위한 고용지원 정책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요건이 까다롭고, 중소기업 취업 시에만 한정되어 있어 선택의 폭이 너무 좁습니다.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20대 학생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대 직장인

12-1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한 고령자 고용연장

현실진단

-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고령 인력 활용의 필요성 확대
→ 다만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 방식은 적절치 않음
 -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을 감안하면, 대다수 기업은 법정 정년을 현행(60세 이상)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 * 2024. 6. 기준 호봉급 활용 비중은 1,000인 이상 기업 중 63.0%, 300인 이상 기업 중 58.0%, 100인 이상 기업 중 52.6%(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부가조사, 2024. 12.)
 - 우리나라의 주된 임금체계인 연공급 임금체계가 가진 한계를 고려해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 당시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 노사에게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화했으나, 노동조합의 반대 등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
-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 시, 다양한 문제 발생 우려
 - 법정 정년연장의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집중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 * 무노조 · 중소기업 직원의 임금은 유노조 · 대기업 ·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근속연수는 1/3 수준에 불과 (통계청, 2024. 8.)
 - 청년고용을 악화시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 심화
 - *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층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층 근로자는 약 0.4~1.5명 감소(한국은행, 2025. 4.)
 -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연공성과 고용경직성으로 인해, 기업 비용 부담 증가
 - *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60~64세 정규직 근로자(59만 명) 고용에 따른 비용(임금 + 4대 보험료 사용자부담분)은 연간 30.2조원으로, 이는 25~29세 청년층 90.2만 명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수준(한국경제인협회, 2024. 12.)

정책제안

- 정년 이후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하는 별도 법률 제정
→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고용정책' 추진
 -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퇴직)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임금조정 포함)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하는 제도
 - 30인 이상 기업의 67.9%가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자 고용 원해'(경총, 2023. 7.)
 - 일본은 2004년 65세 고령자 고용확보조치(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중 택1)를 의무화하면서 1998년부터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 → 고령자 고용 확대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을 경감
 -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년이 지난 고령자 재고용은 기존 근로계약과는 다른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도모
 - * 가칭 「정년 이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 등의 형태로 가능
 - ① 재고용 시 기업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② 재고용된 고령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규제(기간제, 파견 등) 예외 적용, ③ 정부 지원방안 등을 명시함으로써 기업의 고령자 재고용 유인을 강화
 - * 정년(60세) 이후 재고용을 희망하는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업무와 인원 범위 내에서 희망자의 건강 상태, 의욕, 지식·기술 등 역량을 고려해 재고용 인원을 선발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
 - 이를 통해 고령 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부담을 줄이고, 청년 신규 채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 고령자 고용안정성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인 現 연공급 임금체계
→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선행 필요
 -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적 요건인 근로자 과반수 '동의' 규정을 '협의 또는 의견청취' 만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특례 마련 필요
 - * 일본은 합리성을 갖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노사합의(동의) 절차 없이도 가능토록 노동계약법에 명문화(2007년)

12-2 출산·육아 친화적 근로문화 확산 지원

현실진단

- 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는 지난 20여 년간 빠르고 지속적으로 확대
→ OECD 상위권의 보장 수준*

*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기간과 급여를 종합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5번째로 보장 수준이 높게 나타남(경총, 2024. 2.)

- 기업이 준수해야 할 출산·육아친화제도 관련 의무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반면, 인센티브는 부족한 상황

- 상당수 기업들은 꾸준히 확대되는 현행 제도를 따라가기에도 버거운 형편

* 506개 사 조사 결과, 응답 기업 대다수(94.5%)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저출산 관련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나, 43.7%의 기업이 정책 협조에 따른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고 느껴 '종합적 손실'로 인식 (한국무역협회, 2024. 1.)

정책제안

- 추가적 모성보호제도 확대보다는 현행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더 많은 기업들이 출산·육아 친화적 근로문화 확산에 나설 수 있도록 혜택 제공

- 출산·육아 친화적 기업투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법인세 감면 폭을 더욱 확대할 필요

* 과거 시행했으나 폐지된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2018년 폐지)' 등의 사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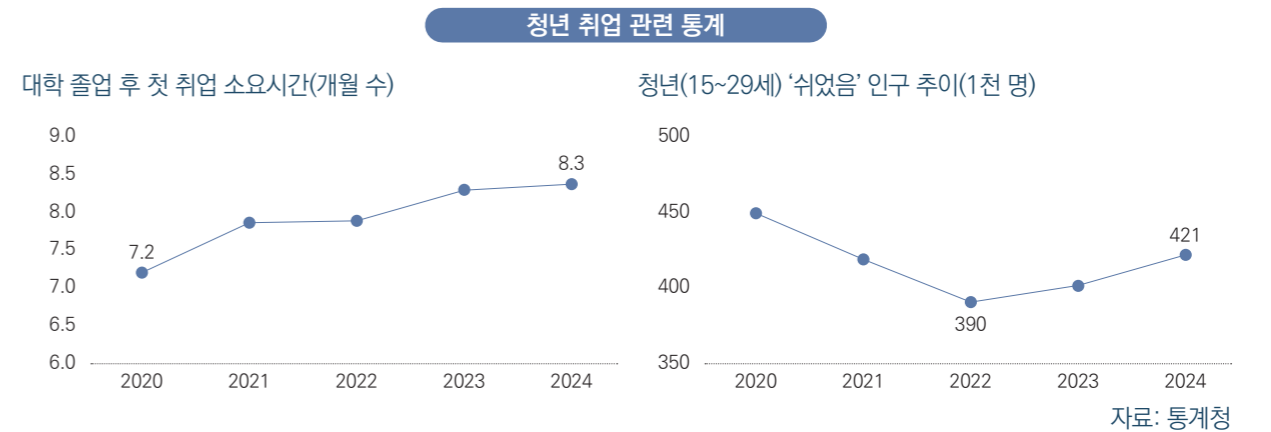
- 제도 실행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공급 확대 및 지원금 제도 확대

12-3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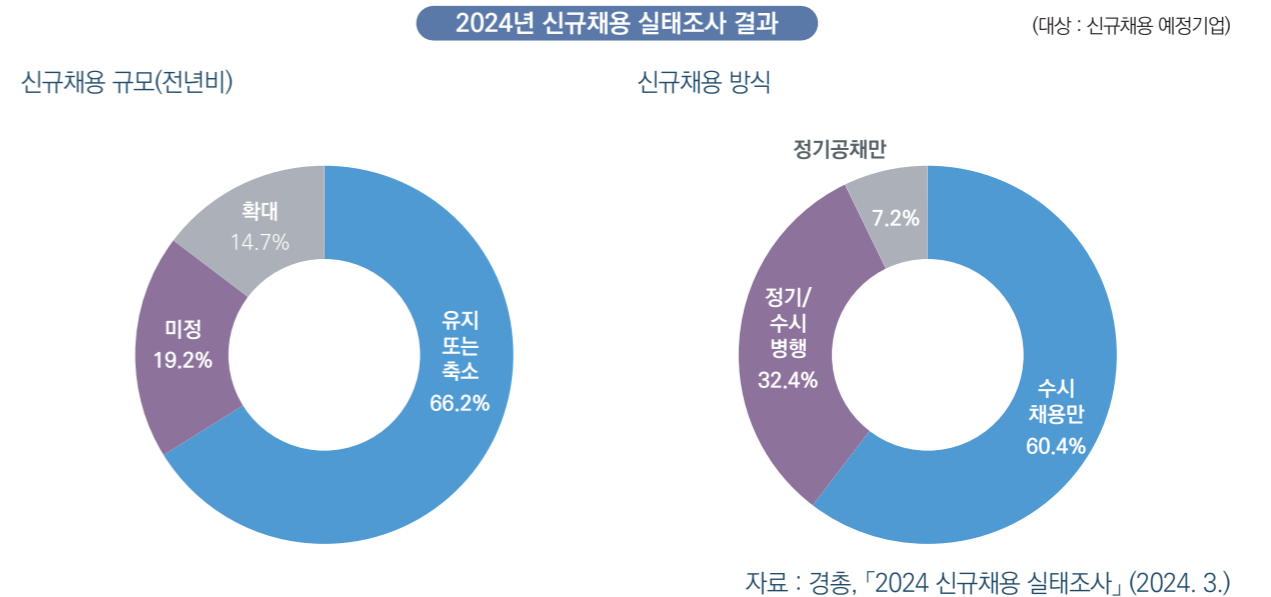
현실진단

-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69.5%, 15 ~ 64세 기준)
그러나, 청년들은 여전히 취업난을 겪고 있는 상황

- 첫 취업 소요 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쉬었음' 청년은 2022년을 기점으로 증가세 지속



-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가 어려운 상황
- 대학 교육만으로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기업은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경력직 채용을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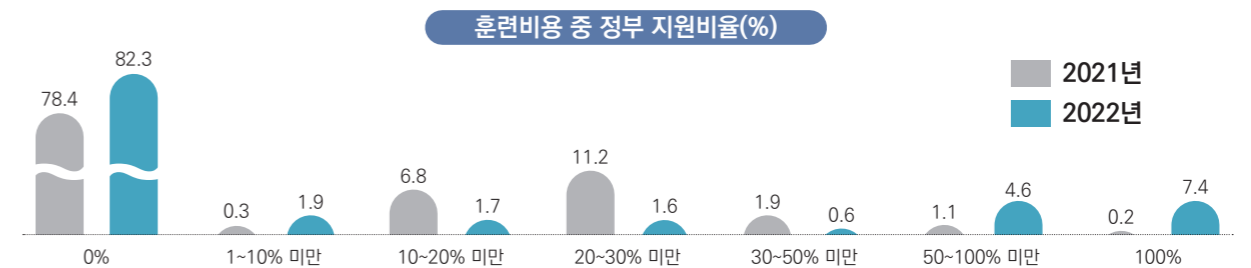
정책제안

-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상 통합고용세액공제(청년 정규직) 지원*을 중견·대기업에도 확대하고 일몰 기한(2025. 12. 31.)도 연장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통합고용세액공제 도입)을 통해 1인당 세액공제 금액이 중소기업은 확대(1,100 ~ 1,200만원 → 1,450 ~ 1,550만원, 2023년 시행)된 반면, 중견·대기업은 기존 공제금액(중견 800만원, 대기업 400만원)과 동일한 상황
- 일경험 등 민간 주도의 수준 높은 청년 고용지원서비스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 예)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中 ESG 지원형 등
- 국가 주도 직업훈련 및 인재양성 체계의 비효율성·경직성을 개선*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의 직업훈련 수요 반영 필요
 - * 기존 산업 부문에 과잉 공급되는 직업훈련 자원(예 : 미용, 제과·제빵 등)을 신산업 영역(예 :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중심으로 강화, 기업규모에 따른 훈련비용 차등 지원의 점진적 완화 등

12-4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현실진단

- 전공과 직무의 불일치 심화로 중소기업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 고착
 -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청년 구인 애로 등 일자리 미스매치 여전
 - * 인력부족률: 300인 미만 사업장 3.0% vs 300인 이상 1.5%(고용부, '24)
 - 노동시장 고학력화가 지속하고 있음에도 산업계 수요는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
 - * 청년층 고학력자 비중: ('15) 19.3% → ('22.상) 22.1% (한국은행, '22.9)
- 중소·중견기업은 재직자 교육훈련 여력 부족, 정부 지원도 미흡
 - 교육훈련 전담부서 및 담당자가 없는 기업 多 → 교육훈련 실시에 한계 有
 - * 전체 기업 중 전담부서는 8%, 담당자는 32.4%만 보유
 - 사업주훈련에 대한 정부 지원 여전히 낮아, 훈련비용 평균 비율은 11.5%에 불과
 - * 정부의 지원 없이 운영하는(0%) 비율이 82.3%
 - AI 도입으로 기존 직무 변화 대응을 위한 재직자 전환 확대 필요



* 출처: 고용부 기업훈련실태조사('23)

정책제안

- 산업계(사업주단체 참여)가 주도하는 인력양성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
 - 산업계가 직접 인력양성 계획부터 훈련과정 개발, 운영하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개별 중소·중견기업이 하기 어려운 재직자 훈련, 생생형 AI, 첨단분야 등 맞춤형 훈련 확대로 생산성 제고
- 플랫폼 구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제반비용의 정부지원 긴요

12-5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활용 확대

현실진단

- 저출생·고령화로 노동력 공급 감소 → 내국인 기피 업종 및 지방·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과 미스매치 현상 심화
- 인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외국인력 활용 필요
 - 그러나 경직적인 現 고용허가제(E-9)로 인해 원활한 외국인력 수급에 제약 발생
 - 우리나라 대표 외국인력 도입 시스템인 고용허가제(E-9)는 산업현장의 비전문 노동력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사전에 외국인력 도입 규모와 허용 업종, 체류 기간 등을 제한하고 있어 지역, 업종,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현장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 * 가령, 온라인 산업 성장으로 택배업 물동량이 증가했으나 일부 직무(예 : 분류)에 외국인력 활용이 불가능해 인력난 해소가 잘 안되는 상황이며, 건설업 가운데 플랜트 업계는 최근 대규모 해외투자 프로젝트 유치 등으로 필요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많으나 내국인 지원자가 적고 외국인 고용은 막혀 있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음.
 - 현행 규정상 외국인 근로자는 중도 출국이 없는 경우 최대 4년 10개월까지만 근무 가능해, 숙련 인력의 유지가 어려움

정책제안

- 고용허용 업종 확대 및 동일사업장 체류기간 대폭 연장 등의 제도 유연화 추진
 - 달라진 산업구조와 시장 상황 등을 신속히 반영해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직무의 제한도 완화함으로써, 산업현장에 원활한 외국인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 고용허용 업종 개선 예
 - (택배업) 외국인 고용허용 택배업 세부 업종에 '일반 창고업(업종코드 52101)'과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서비스업(52993)' 추가
 - (건설업) 일반 건설업은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나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등' 플랜트 건설공사에 예외를 두고 있어, 해당 규정 삭제
 - 동일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외국인력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 제한을 개선함으로써, 숙련 인력의 안정적 활용을 도모

12-6 해외 고급인력 유치 확대

현실진단

- 지속된 저출생으로 출산율이 회복되더라도 인구감소로 인한 충격은 불가피
 - 한국 합계출산율은 0.75명('24년)으로 OECD 최하위. OECD 평균 1.51명의 절반 수준
 - 인구유지 위한 최소 출산율(2.1명) 회복해도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불가피
- 생산인구감소는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에 악영향 → 잠재성장률 하락 초래
 - [OECD] 인구감소와 생산성 향상 둔화로 '20~'30년 1.9% → '30~'60년 0.8% 하락 전망
 - [골드만삭스]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2060년대부터 역성장 할 것으로 전망
- 국내 인재를 해외 유출, 해외 인재를 국내 유입이 되지 않는 실정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인재 경쟁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 인재 유출은 가속화
 - * '13~'22년 10년간 이공계 학부·석박사 유출 33만9275명 추산, 매년 3~4만명 유출(과기부, '24)
 - 국내 외국인력 유입 인구(56만명) 중 84%가 저숙련·단순인력(E-9)
 - 최근 조선업 용접공 등 숙련기능인력(E-7)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장이 요구하는 숙련에 미치지 못해 송출국 현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을 갖추도록 지원 필요
-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를 고려할 때 2040년까지 매년 약 45만명 해외인력 필요
 - 생산가능인구의 현 수준('23년 3,637만명) 유지 위해 2040년까지 총 785만명 필요

연도	생산가능인구	목표생산가능인구	도입 필요 해외인력	해외인력비중
2025	3,561만명	3,637만명	76만명	2.10%
2030	3,381만명	3,637만명	255만명	7.00%
2040	2,852만명	3,637만명	785만명	21.60%
2050	2,418만명	3,637만명	1,218만명	33.50%

 정책제안

- **이민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설치**
 - 현재는 법무부(비자 및 체류관리), 행안부(이민정책), 노동부(외국인력정책), 여성부(다문화가족정책), 교육부(유학생) 등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
- **해외인력 풀(pool) 통해 기업과 한국취업 희망 해외인력간 취업매칭 플랫폼 구축**
 - 재외 한국인 유학생(12.7만명)의 인력 DB관리체계 고도화 및 방문의 날(Homecoming Day) 추진
- **해외인재 유입 지원 비자 절차 개선**
 - 전문숙련인력 비자(E-7) 재편 : 독일식 기술이민제도 도입
 - * 채용 시 기업이 직접 인력발굴·자격검정·신원보증 등 비자절차 수행 → 국내 취업 희망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이 비자절차 수행 후 구직활동 가능하도록 개선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D-8-4(S)) 제도 개선
 - * D-8-4(S) 비자 발급대상을 창업대표로 제한(공동대표 최대 3인) → 스타트업 팀원에 대해서도 비자 범위 확대(튀르키예 사례)
 - 해외 각국의 이민자 유치를 위한 제도 벤치마킹
 - * 호주 주정부 후원비자 : 주정부(지자체)가 지역에 필요한 직업군을 정해 숙련노동자에 한해 자체 비자발급 가능
 - * 포르투갈 NHR 제도 : 직전 5년간 포르투갈 거주기록 없을시 국외소득 10년간 감세, 외국인 투자자와 고급인력 유치
- **글로벌 기업의 생산거점 및 R&D허브의 국내 유치 노력**
 - 해외인재들의 자발적 이주 유도
 - * 이스라엘의 바이츠만 연구소(기초과학)의 경우 연구원의 22%가 외국인
- **해외 교육기반 우수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사증발급기준(법무부) 마련**
 - 반도체, AI, 바이오 등 부족한 전문인력 직종(E-7-1)에 대해 해외 현지에서 교육 후 역량을 검증하여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프로세스 구축
 - * (변경前) 학사+관련 경력1년 → (변경後) 학사+일정기간 현지에서 직무프로그램 이수

12-7 취업 의지 촉진을 위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현실진단

- **現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자의 구직급여 의존도를 높이고 취업 의지 약화**
 - 현행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지나치게 높아 최저 구직급여액이 최저임금의 92%에 달하며,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세후)최저임금보다 높은 역전현상 발생
 - 구직급여액이 최저임금액보다 높다 보니, 구직급여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유인 감소

2025년 최저 구직급여월액과 최저임금월액 비교

최저임금(세후)	<	최저 구직급여(하한액)	<	최저임금(세전)
1,874,490원		1,925,760원		2,096,270원

- 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기준기간(18개월)과 기여기간(180일)이 짧아 단기간 재취업 후 또다시 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 → 단기적인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에 의존하기 쉬운 상황
 - * 수급 요건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면 약 7개월 근무 후 4개월간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하며, 이를 반복할 수 있는 구조

 정책제안

-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및 기준기간·기여기간 연장**
 - 실직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유도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도 확보

21대 대선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13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 노동·안전


IV

- 1 환경변화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
 - ① 연장근로 관리단위 변경 및 유연근무제 합리적 개선
 - ②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 ③ 연구개발, 고소득·전문직, 이그젼션 제도 도입
 - ④ 법정근로시간 단축 반대
- 2 임금체계 개편 활성화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 3 최저임금 제도 개편**
- 4 적극적 고용환경 조성 위한 제도 개선**
 - ① 금전보상신청권 노사 모두에게 부여
 - ② 근로계약 변경신청제도 개선
 - ③ 파견·도급 규제 완화
- 5 노사관계 선진화**
 - ① 사업장 점거 금지원칙 확립
 - ② 대체근로 허용
 - ③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 ④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개선
- 6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명확화 및 처벌 수준 완화**
- 7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KEF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FKI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현장의 목소리

최저임금제도,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직종별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수 침체 등 자영업자가 더욱 힘겨운 이 시기에,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30대 중소기업인

“주 52시간 근로제를 개편해주세요. 법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보니, 현재는 월 급여로 4인 가족 생계를 꾸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필요에 따라 초과 근무를 하고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절해야 하는데, 52시간 상한을 정해버리니 생계에 지장이 생깁니다.”
40대 직장인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에 발맞춰,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30대 직장인

처벌보다는, 스스로 안전을 챙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만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아무리 법을 봐도 경영책임자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고가 나면 더 강하게 처벌한다고 하니 직원들이 안전보건부서에서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중견기업 50대 CEO

“건설공사 사고가 많다 보니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인력채용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와중에 경력직 직원들은 더 안전하고 처우가 좋은 대기업으로 이직하고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합니다.”
건설업계 40대 인사팀장

13-1 환경변화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

1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 및 유연근무제 합리적 개선

현실진단

-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지나치게 경직적 → 기업의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
 - 현행 연장근로제도는 1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 : 급작스러운 업무 증가 등에 유연한 대응 어려움
 -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최대 6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최대 1개월(연구개발의 경우 3개월)로 활용 기간 제한
 - 유연근무제들도 활용 기간이 짧고, 도입요건이 까다로움
 - * 유연근무제 도입 시 전체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고, 재량근로시간제는 대상업무가 시행령에 일부 한정

정책제안

- **기업경영과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근로자의 니즈에도 맞출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개선**
 - 연장근로 관리단위 : (現) 주 단위 → (개정)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 활용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전체근로자대표 또는 부분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도입할 수 있도록 변경
 - * 특정 집단에만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단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재량근로시간제 : 대상 업무 제한 폐지, 노사 자율로 결정

2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현실진단

- **現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활용 제한적** → 예상치 못한 생산 차질, 고객의 요구사항 변경 등에 대응 어려움**
 - *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유별로 1회의 최대 인가기간과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해두고 있음.
 - ① 인가사유 협소(‘업무량 급증’과 같은 사유는 사전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움)
 - ② 돌발적 상황·업무량 급증 시 활용 기간이 연간 90일로 제한
 - * 1년간 활용기간이 9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1주 단위로 신청하기 때문에 1주일에 1일만 사용하더라도 1주일 모두 소진한 것으로 인정되어 90일로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
 - ③ 인가단위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
 -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공장이 있고, 각 공장에서 다른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 한 공장에서 90일을 소진하면 다른 공장에서는 인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시행규칙 각 사유	1회 최대 인가기간	1년간 활용 가능 기간
제1호(재난 등) 제2호(인명보호 등)	4주 이내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제3호(돌발적 상황) 제4호(업무량 급증)		최대 90일
제5호(연구개발)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시 심사* 후 연장 *추가 연장근로 현황,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시행 여부 확인 등

자료 :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2022)

- 정부는 반도체 분야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3개월 →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 지침 시행(25.3월)

 **정책제안**

● **인가사유 확대**

- (現) '특별한 사정' → (개정) '경영상 사정 또는 직무 특성 등 한시적으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 **돌발적 상황·업무량 급증 시 활용 가능 기간 확대**

- (現) 연간 90일 → (개정) 연간 180일 한도, (現) 1주 단위 → (개정) 1일 단위

● **인가단위 변경**

- (現)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 → (개정) 개별근로자 기준

3 연구개발,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제도 도입

 **현실진단**

●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부 업무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필요**

- ① 창의성과 자율성이 중요한 연구개발직, ② 근로시간만으로는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고소득 및 전문직 등 기업 핵심 인력의 경우, 획일화된 現 근로시간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

● **해외 선진국에서는 일정 소득 이상 특정 직군 등에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운영 중**

- 미국은 관리직, 운영직, 전문직 등의 근로자가 ① 직무요건*을 '전부' 갖추고 일정 수준 이상의 주급 (1주 1,128달러 이상)을 받거나, ② 직무요건을 '일부' 갖추고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1년 151,164달러 이상)을 받는 경우 초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운영 중

* 예시 : 관리직의 경우 ① 관리업무 수행, ② 상시 2명 이상 정규직 지휘, ③ 피용자 채용 및 해고 권한 등의 직무요건이 있으며, '주급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선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다만, '연봉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됨.

미국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날짜	1주 급여 기준	연봉 기준
2024. 7. 1. 이전	1주 684달러(한화 약 97만 원)	107,432달러(한화 약 1억 5천만 원)
2024. 7. 1.	1주 844달러(한화 약 120만 원)	132,964달러(한화 약 1억 9천만 원)
2025. 1. 1.	1주 1,128달러(한화 약 160만 원)	151,164달러(한화 약 2억 1천만 원)
2027. 7. 1.	갱신 시점에 유효한 급여 수준으로 결정	

자료 : 미국 노동부 홈페이지(2025. 4. 21. 환율 기준)

- 일본은 ① 새로운 기술, 상품 또는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노사가 합의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되지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거나, ② 연 1,075만엔 이상(한화 약 1억원)의 고소득자로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고 업무 성질상 근로시간과 성과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은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휴식, 휴일, 심야 할증임금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운영 중

 **정책제안**

● **연구개발, 고소득 및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 도입**

→ 산업환경 변화와 근로자 니즈에 맞춰 근로시간을 다양하고 유연하게 활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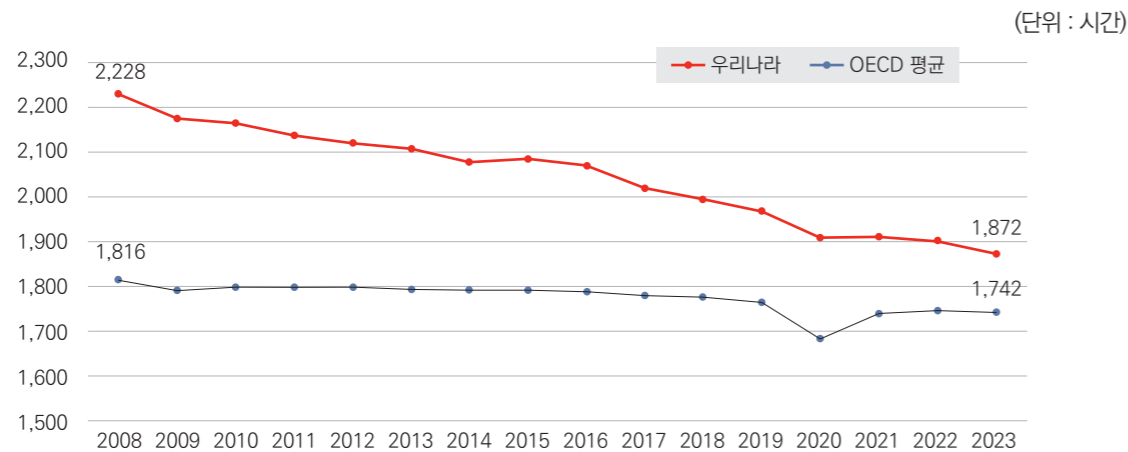
- 근로기준법에 '연구개발, 일정소득 이상 전문직 등에 대해 근로시간 적용 제외' 조항 신설

4 법정근로시간 단축 반대

현실진단

- **현재 국회에는 1주간 법정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단축하는 '주 4.5일제 법안' 계류 중**
 - 현재의 낮은 노동생산성* 하에서는 ① 기업 경쟁력 저하 가속화, ② 기존 생산량 유지를 위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③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 우려
 - *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가 2024년 6월에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 사용(12 → 11위) 등은 상승했으나, 노동생산성 국제경쟁력은 67개국 중 54위로 여전히 하위 수준
- **우리나라는 더 이상 과도한 장시간 근로 국가로 보기 어려운 상황**
 -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평균 실근로시간은 2008년 ~ 2023년 15년간 2,200시간대 → 1,800시간대로 감소 (OECD 국가 중 최대 감소 폭)
 - 경총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풀타임 임금근로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시간 → OECD 평균인 40.7시간과 약 1시간 정도 차이

우리나라와 OECD의 1인당 연간 평균 실근로시간 격차 비교



자료 : OECD Data Explorer

- OECD 34개국 중 대다수 국가가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주 40시간 미만으로 정한 국가는 3개국에 불과

OECD 34개국 법정근로시간

구분	OECD 국가
1주 40시간 미만 (3)	호주(38시간), 벨기에(38시간), 프랑스(35시간)
1주 40시간 (21)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미국
1주 40시간 초과 (5)	칠레(45시간), 콜롬비아(48시간), 이스라엘(42시간), 멕시코(48시간), 터키(45시간)
1주 법정 없음 (5)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21

- **노동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부작용만 초래할 우려**

정책제안

- **법정근로시간 단축 대신, 근로시간을 노사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 필요**

13-2 임금체계 개편 활성화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현실진단

- 많은 기업들이 과거 고도성장기에 형성된 연공 중심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상황
 -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상승·일률적 임금인상이 지배적이며, 근로자 개인의 성과나 직무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보상은 미미
 - 우리나라 연공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음
 - * 2024. 6. 기준 호봉급 활용 비중은 1,000인 이상 기업 중 63.0%, 300인 이상 기업 중 58.0%, 100인 이상 기업 중 52.6%(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부가조사, 2024. 12.)
 - * 우리나라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평균 임금 수준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2.95배로, 일본 2.27배, EU 15개국 평균 1.65배보다 높은 상황(2020년 기준)
- 연공 중심 임금체계가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로자의 동기부여와 보상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노동시장 전반의 임금격차 문제를 심화
-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60세 이후 계속 고용을 위해, 일의 가치와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계로의 개편 선행 필수
 - 미국·유럽의 선진국 대부분은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와 유사한 연공형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이미 오래전부터 직무와 성과를 반영하는 임금체계로 변화 중
 - 우리나라는 노동계의 반대로 임금체계 개편이 부진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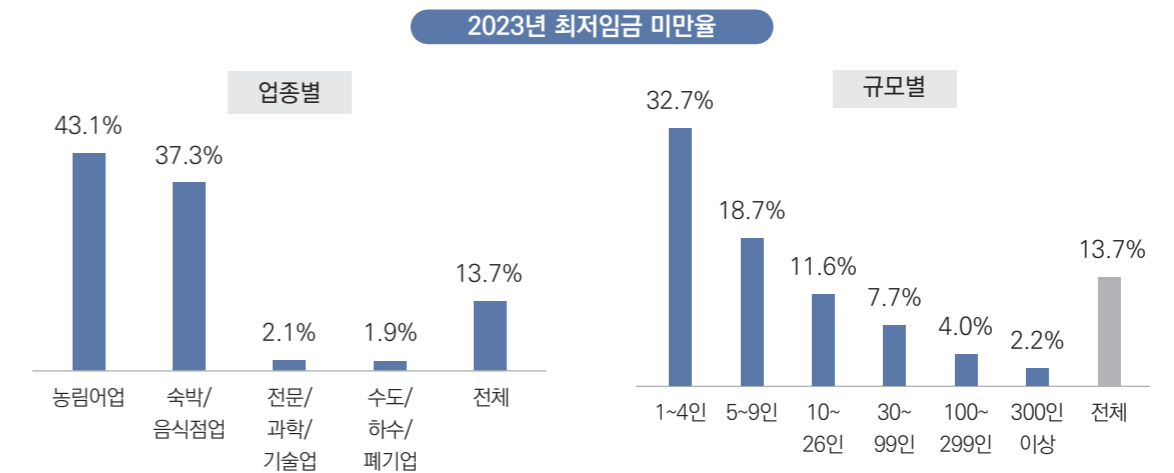
정책제안

-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활성화를 위해, 경직적인 現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 現 고려자고용법은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와 함께 노사 모두에게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 임의규정에 불과해, 실제 임금체계 개편은 부진한 상황
 -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체계 개편(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과반수 근로자(노동조합)의 '동의' 규정을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필요
 - * 일본은 합리성을 갖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노사 합의(동의) 절차 없이도 가능하도록 「노동계약법」에 명문화(2007)

13-3 최저임금 제도 개편

현실진단

- 우리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의 60%'를 초과
 -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
 - 2023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경찰부가조사 기준 65.8%(OECD 기준 61.3%)로 적정 수준의 상한선으로 제시되는 60%를 이미 넘었고, G7 평균(52.0%)보다도 월등히 높아진 상황
- 現 최저임금 제도는 40여년 전의 경제사회 환경에 기반 →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산성이 '업종'과 같은 특성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를 간과한 채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
 - 일부 업종·규모에서는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2024)

- G7 국가를 비롯, OECD 20개국*에서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연령, 업종,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 중
 - * OECD 회원국 중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는 30개국 중,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등 20개국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최저임금위원회, 「2024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 방식의 現 최저임금 결정 구조 → 매년 불필요한 갈등 반복,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에도 부정적 영향

 정책제안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명시**
 - 기업의 지불능력은 임금수준 결정의 핵심요소인 만큼,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지불능력'을 직접적으로 명시
-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실효성 제고**
 - 기업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이 업종별로 차이가 큰 현실을 고려해, 現 임의규정인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의무규정으로 전환
 - '지역별 구분적용' 신설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 정부가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적용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같은 정책을 통한 취약 근로계층 지원 필요**

13-4 적극적 고용환경 조성 위한 제도 개선

1 금전보상신청권 노사 모두에게 부여

 현실진단

- **2007년 근로기준법 개정 시 '금전보상신청제도'*를 도입했으나,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근로자로 한정**
 - *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도, 계속 고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제도
 - 사용자의 신청이나 노동위원회 직권에 따른 금전보상명령은 미인정
 - * 근로관계 당사자 간 신뢰 훼손 또는 회사의 경영 여건상 복직 후 고용유지가 기대되지 않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어 계속 고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용자의 금전보상신청제도 활용은 불가능한 상황
- **해외 주요국의 경우 노사 당사자 모두에게 금전보상신청권을 인정하거나, 법원 직권에 따른 금전보상명령 등을 인정**

해외 주요국의 금전보상제도 비교

국가	부당해고 구제수단	금전보상신청권 유무
독일	원직복직(원칙), 금전보상(예외)	사용자, 근로자 모두 신청권 있음
프랑스	원직복직(원칙), 금전보상(예외)	법원이 원직복직 제안 ⇒ 당사자 일방 거부 가능 ⇒ 거부 시 법원이 금전보상명령
영국	원직복직(원칙), 금전보상(예외)	사용자, 근로자 모두 신청권 없음. 고용심판소가 원직복직 혹은 재고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금전보상명령
이탈리아	선택적 원직복직, 금전보상	법령상 해고 유형에 따라 금전보상 우선 적용 가능

 정책제안

- **금전보상신청권을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부여**

2 근로계약변경신청제도 신설

현실진단

- 現 법제도 하에서는 기업경영이 어렵거나 근로자의 업무 성과가 미진한 경우
→ 해고를 통한 근로관계 종료 외에, 근로조건 조정을 통한 고용유지가 어려운 상황
 - 現 법체계에서는 근로조건 변경(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시
 - ①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변경하거나
 - ②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회의방식의 집단적 동의를 통한 취업규칙 변경 필요
 -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근로조건 변경의 필요성이 상당한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근로조건 조정 불가능
-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를 통해 근로관계를 존속시키면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 필요
 - 해고는 사용자에게는 숙련된 노동력 상실을, 근로자에게는 소득상실을 초래
 - 주요 국가들은 법이나 판례를 통해 근로계약변경신청제도를 인정 → 기업은 유연한 인적자원관리가 가능해지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유지 가능

주요국 근로계약변경신청제도

국가	법 규정
독일	[해고제한법 제2조 변경해고] 고용주가 근로관계의 해지를 통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것을 제안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이 사회적으로 부당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
프랑스	[판례] 근로조건(사용자 권한에 속하는 사항) 변경은 근로자가 거부 시 해고 가능, 근로계약(당사자 합의 대상이었던 계약사항) 변경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계약변경 거부 시 근로계약 해지 가능(해고의 정당성 판단)

정책제안

- 근로계약변경신청제도 신설
 -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변경을 청약 →
 - ① 근로자 수락 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관계 유지
 - ② 근로자 거부 시 근로관계 해지

3 파견·도급 규제 완화

현실진단

- 주요 국가들과 달리, 우리 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를 32개 업무로 제한
 - 우리나라의 파견근로자 활용률*은 주요국에 비해 저조
 - * 한국 임금근로자 중 1.0%(통계청, 2023년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 독일 2.32%, 일본 2.94% (WEC, Economic Report 2023)
- 우리 법원은 사내하도급에도 파견법을 확대 적용해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
 - 기업 간 생산 협업 위축

주요국 파견대상업무 및 사내하도급 제한 비교

국가	파견대상업무	사내하도급
한국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등 대부분 업무 파견 금지, 32개 업무에만 제한적 허용	파견법 확대 적용으로 사내하도급 활용 제약
미국	제한 없음	-
영국	제한 없음	-
독일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 및 업무에서 파견 가능 * 건설업, 육류산업 분야 제외	도급인의 지시권 판단에 있어 상당히 완화된 기준 적용
일본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에서 파견 가능 (항만운송, 건설, 경비 업무 등 일부 업무 제외)	사내하도급을 파견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한 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도급 목적의 지시권을 넓게 인정

정책제안

- 현행 파견대상업무 규제 폐지
 -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 수요와 경기변동에 대응 가능
- 파견법상 지휘·명령 범위를 구체화

13-5 노사관계 선진화

1 사업장 점거 금지원칙 확립

현실진단

- 現 노동조합법상 사업장 점거 제한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
 - 현행법은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된 시설의 점거만을 금지하고, 그 외 일반시설의 점거는 전면적·배타적 점거일 경우에만 금지
 - 그러나 사업장 일반시설 일부를 점거한 경우라도 ① 업무의 중단 및 혼란, ② 파업에 불참한 근로자의 권리 침해 발생 불가피
 - 현장에서는 그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노조가 정당한 점거라고 주장하면서 주요업무시설을 무단점거하거나 부분적·병존적 점거와 전면적·배타적 점거를 반복함에 따라 노사 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
-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에 대해 재판부마다 다른 판결이 내려져 산업현장의 혼란 지속
 - 회사는 노동조합의 무단 점거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불허

정책제안

-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전면적으로 금지
 - 노사 간 물리적 충돌 및 분쟁의 장기화 방지

2 대체근로 허용

현실진단

- 現 노동조합법은 '노조의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
 - 쟁의행위 기간 중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신규 채용은 물론, 기업의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도급, 하도급, 파견 등을 모두 제한
- 사용자에게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항할 수단 부재 → 노사 간 교섭력에 심각한 불균형 발생
 - 사용자의 대체근로 금지로 노동조합은 과도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쟁의행위 활용
 - 노동조합이 장기간 쟁의행위를 진행할 경우, 직접적 경제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신인도 하락과 이미지 훼손 등의 간접적 손실까지 발생
- 주요 선진국은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상황
 - 미국과 영국은 대체근로 금지 규정 부재
 - 독일과 프랑스는 신규채용, 하도급을 통한 대체근로를 허용
- 대체근로 허용으로 ① 산업현장에서의 과도한 투쟁 중심 노조활동과 ② 힘의 논리에 집착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생산적 노사관계로 나아갈 필요

정책제안

- 現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 전면 금지' 조항 삭제
 -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용자의 방어권 인정

3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현실진단

- 現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
 - 법체계상 문제, 법 취지와외의 부조화, 소송 남발 등의 문제 초래
 - 노사 또는 노노 간 불법·부당한 관행의 개선도 어려운 상황
- 現 제도는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 → 과도한 이중처벌*
 - * 근로3권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통해 대부분의 피해 회복 가능
 - *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노동조합법 제89조 2호) 등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형벌이 존재함에도, 별도로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 제기
 - * 부당노동행위 해당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노동조합법 제90조)
- 반면, 노동조합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 부재 → 노사 대등성이 심각하게 저해
 - ① 노조의 고의적인 교섭 거부·해태, ② 과도한 경비원조 요구, ③ 타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 방해 등 근로3권을 남용·침해하는 부당한 행위가 이루어져도,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
- 주요 국가에서는 부당노동행위제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율
 - * (미국 연방노동관계법 제8조 제b항) ① 타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행위, ② 교섭 거부 행위, ③ 불법파업 및 보이콧 행위, ④ 부당한 금품 지급 요구 등을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율

정책제안

-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 삭제
 -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이중처벌 문제 해소
-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정 신설
 - 산업현장에서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가능

4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

현실진단

- 現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투표기간·유효기간 등 구체적 내용 부재 → 오남용 발생
 - ① 찬반투표가 가결될 때까지 투표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거나 재실시하고,
 - ② 한번 가결된 투표 결과를 근거로, 횡수나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수차례 파업을 행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주요 국가에서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해 의결정족수·가결 시 유효기간 등을 규정
 - 미국 전미자동차노조(UAW) 조합원 2/3 이상 찬성을 요하되, 근로자 자유 선택법에 따라 사용자는 90일 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 필요
 - 독일 금속노조(IG-Metall), 공공노조(Ver.di) 조합원 75%이상 찬성을 요하되, 파업기간 중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 찬반투표 재실시
 - 영국 우편 투표 방식을 통해 조합원 과반수 참여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주요공익업무의 경우 조합원 40% 이상 찬성)을 요하되, 투표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찬반투표 재실시

정책제안

-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기간 설정
- 가결된 투표의 유효기간 설정
- 유효기간 경과 후 투표의 효력 종결 규정 신설

13-6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명확화 및 처벌 수준 완화

현실진단

- 처벌 중심의 現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예방 효과 미미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대표이사)와 법인을 매우 엄한 형벌에 처하도록 제정된 법률
 - 법 시행(2022. 1. 27.) 후 검찰이 기소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중 총 36건(2025. 2월 말 기준)에 대해 법원판결이 내려졌으며, 대부분 유죄(3건만 무죄) 선고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50인, 50억 이상)의 사고사망자는 법 시행 전후 큰 차이가 없는 상황 (법 시행전인 2021년 248명 → 법 시행후인 2024년 250명)
- 불명확한 법률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 지속 → 안전인력을 확보한 대형사업장조차 법 준수에 상당한 애로 호소
 - 법률규정만으로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제2조 제9호 가목 후단)'이 누구인지 불명확
 - 처벌요건인 안전·보건 관계 법령(제4조 제1항 제4호)의 범위도 모호
 - 제5조 후단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고, 제4조와 보호대상(종사자)이 동일
 - * 경총 실태조사 응답기업의 81%가 중처벌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였고, 개선사항으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구체화'(47%), '도급·용역·위탁 시 책임 명확화'(38%),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화'(30%) 등을 선택함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 2025. 2. 19.)
- 경영자에 대한 형벌 수준이 매우 과도
 - 법 위반행위의 죄질이 나쁘거나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징역과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것은 과잉입법
 - 법원은 사망원인을 제공한 법 위반 행위자에게는 징역 1년 미만, 주의감독(과실)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대표이사)에게는 대부분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
 - 경영자 신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사고에 직접 기여한 자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부당
- 인적·재정 여건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제 적용
 - 전문인력 없이 안전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소규모 기업에 수많은 매뉴얼 및 절차서, 반기 1회 점검 등의 의무*를 이행토록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
 - * ①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②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③ 필요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및 ⑤ 필요한 예산·권한 기준, ⑥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⑦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시 대응·구호조치 매뉴얼, ⑧ 도급·용역 시 산재예방 조치능력 및 기술평가 기준, ⑨ 안전보건관리비용 기준, ⑩ 공사기간 및 건조기간 기준

정책제안

- 현행 법률 및 시행령상의 모호한 조항을 명확화
 -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사업의 대표자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을 총괄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자로 명확히 규정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특정될 수 있도록 법률에 시행령 위임근거를 마련
 - 법 제5조를 삭제해, 도급·용역·위탁 시 사업주 책임 범위의 해석 논란을 해소
- 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꺾고 있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
 - 징역형을 하한(1년 이상)에서 상한 설정(7년 이하) 방식으로 변경
 - 벌금액 하향 조정(10억원 → 1억원)
 - * 안전보건조치위반 처사죄(산업안전보건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업무상과실치사죄(형법)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사항의 일부만 적용받도록 개정 필요
 - 구체적으로 중대재해 발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안전보건경영방침), 제4호(예산편성·집행),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제8호(급박한 위험시 대응), 제9호(도급·용역 시 평가 등) 규정 적용 제외

13-7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현실진단

- 기업인 처벌 강화 중심의 現 산업안전법령*으로는 효과적인 산재 예방에 한계
 -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9년)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1년) 등
- 現 법령으로는 안전인력 육성과 신기술 개발, 금융 혜택 등의 인프라 확대, 중소기업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쉽지 않은 상황
 - 최근 실태조사에서 응답기업의 32%는 안전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응답
 - *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 (경총, 2025. 2. 19.)
 - 대부분의 안전보건 전문기관도 측정·진단업무에만 특화되어 있을 뿐, 스마트 안전관리 신기술 개발과 지속적인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지원 활동은 미흡한 실정
 - 사업장 안전보건 시설·장비개선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조세제도 지원책도 부족한 상황
- 2023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법률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이후 구체적인 논의 미진행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1. 제도적 변화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

1-4. ... (중략) ...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기반 확충 및 관련 산업의 증진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노사는 입법 활동에 적극 협력하며, 노사정은 구체적인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책제안

-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민간 안전보건 전문인력 및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기업의 자율적 산재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 내용

목적

- 산업안전보건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전반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제고와 산업재해 예방에 이바지함.

종합계획 수립·시행

-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 수립
- 연도별 시행계획 세워 추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 종합계획 등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해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

육성 및 지원사업

- (전문인력 양성) 안전보건 관련학과 신설 등 전문인력 양성 시책 마련 및 교육훈련 비용 지원
- (기술개발 지원) 민간기관의 신기술 연구개발 비용 지원 및 국내외 정보교류 지원
- (금융지원) 산업안전보건 기반조성과 기술혁신 위해 재정 및 금융지원
- (조세특례)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투자액 조세 감면(세제혜택)
- (노사단체 지원) 중앙 및 지역 노사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산재예방사업 지원
- (중소기업 지원)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 및 안전보건 관리비용 지원 등

산업안전보건 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및 운영비 지원

재원의 조달

- 육성 및 지원사업 수행,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을 일반회계 및 산재예방기금에서 지원

21대 대선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14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 산업재생

- 1 산업위기지역 활력 부여
- 2 석유화학산업 테스트베드 복합단지 조성
- 3 과잉생산설비 조정으로 위기업종 구조조정 지원
- 4 산업위기 지역·업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FKI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KEF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현장의 목소리

위기 산업,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제조업체들이 어려워진 게 지금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을 부흥시켜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 생태계가 복원되어 지역경제에 다시 활기가 돌아올 겁니다”
30대 중소기업 종사자

“산업정책이나 지역정책은 모두 긴 호흡으로 멀리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 영역인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다 뒤집어지니 공무원들도 ‘어차피 또 바뀔 거’라며 안 움직입니다. 지속적인 정책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0대 소상공인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산업 재생의 첫걸음입니다

“기업의 R&D 투자는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신시장 창출, 고용확대 등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만큼, 기업에게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대 직장인

“관세전쟁으로 산업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도 투자 여력이 크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새로운 먹거리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30대 창업준비생

14-1 산업위기지역 활력 부여

현실진단

- 경기 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필요
 - 석유화학 등 위기업종이 위치하는 산업위기지역* 내 설비투자 세제지원 확대 필요
 - * ①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약화가 예상되는 지역, ②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
-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인상에 따른 생산원가 증가로 석화산업 등 위기업종의 사업재편 여력 감소 및 글로벌 시장가격 경쟁력 저하
 - '24.10월 산업용(을) 전기요금이 기존 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인상됨에 따라 제조업체들의 비용 부담 증가
 - * 석화산업은 주요 생산비 중 전력비용이 약 3.2%(22년 기준)에 달해,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글로벌 시장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
 - 주요 경쟁국들은 자국 내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 감면 추진
 - * 독일은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한 '산업 전용 전기요금 패키지' 도입에 합의('23년), 미국과 EU도 각각 트럼프 2기 및 폰데어라이엔 집행위 2기 출범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정책 추진
-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범위와 요건이 엄격해 경영위기로 고용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주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어려움
 - 산업위기지역의 기업은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
 - 여러 산업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일부 사업재편 과정에서, 신규 인력을 전혀 채용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고용지원금 지급 기준

현행 고용보험법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단축 근로, 휴직 부여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란, 매출액 감소 사업주 또는 지역 내 주된 사업주의 고용 위기로 관내 대규모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경우 등을 의미
- 한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정책제안

-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정부재원 및 기금 활용을 통한 산업위기 지역 내 전기요금 감면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정책을 추진
-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범위 확대 및 지급금지 요건 완화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범위에 ①「지역 산업위기 대응법」상 산업위기지역의 사업주 및 ②「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추가
 - 「지역 산업위기 대응법」상 산업위기지역 사업주 및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한하여 신규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금지 요건 완화

14-2 석유화학산업 테스트베드 복합단지 조성

현실진단

- 범용제품 위주의 국내 석화업계 사업구조는 중국 및 중동지역과의 경쟁 심화로, 고부가가치·저탄소제품 전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
 - 범용제품 위주의 사업구조는 원료인 원유의 가격변동에 민감하며, 수출의존도가 높아 대내외 공급 증가 시 수익성 하락 발생
 - 고부가가치·저탄소제품 시장은 오랜 개발기간 및 고비용이 요구되는 분야이면서 시장진입이 어려워 중장기적 관점의 사업 추진 필요
- 석화산업의 고부가가치·저탄소제품 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시제품화 이전 파일럿·실증 규모의 콤플렉스(복합설비단지) 부족
 - 석화산업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단계의 지원에 비해 파일럿 및 실증용 제조기술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제한적
 - * 석화산업의 경우, 파일럿 콤플렉스를 통해 새로운 화합물의 합성, 촉매 개발, 공정 최적화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상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위험을 미연에 방지 가능
 - 최근 높아진 건축비*로 인해 파일럿·실증을 위한 설비 투자·운영 비용이 고부가가치·저탄소제품 전환에 따른 초기 사업성 저하 우려
 - * 건설공사비지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 : 46.1('00년), 100.0('20년), 130.9('25.1월)

정책제안

- 시제품화 이전 정부 주도의 파일럿·실증 콤플렉스 조성 및 운영
 - 정부 주도로 공용부지 확보 시 시설 전용, 매각, 기술 판매, 인수합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
 - 유틸리티 및 OSBL* 시설에 대한 공동 활용 방안 마련
 - * Outside Battery Limits : 공장 건설 시 저장탱크, 유틸리티 및 폐수처리 시설 등 생산 공정을 보조하는 시설들이 위치하는 지역

14-3 과잉생산설비 조정으로 위기업종 구조조정 지원

현실진단

- 기업이 과잉생산설비를 폐기하는 경우 자산가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00년까지 운영되고 있음(舊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2)
- 국내 주력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특례 재도입 필요
 -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공급과잉으로 인해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은 공장 가동률을 낮추거나 설비 폐쇄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 국내 NCC(Naptha Cracking Center) 공장의 경우, '13~'21년까지 공장 가동률이 평균 90%를 상회하였으나,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8.4%씩 하락하여, '24년(1~10월 기준)은 역대 최저 수준인 67.8% 기록
 - 이미 다수의 석유화학 기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설비 가동률 하락 및 구조조정으로 인해 업계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음
 - 과거 조특법 제27조의2의 과잉생산설비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기업들이 노후 설비를 조기에 폐기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수행
 - 현재 업황 악화로 과잉설비에 대해 축소·폐쇄를 검토하는 기업들의 막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제도의 재도입 절실
 - * 노후 설비 철거에는 일반적으로 수십~수백억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기업들은 설비 정리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노후 설비를 정리하지 못하면 친환경·고부가가치 생산설비로 전환하기 위한 신규 투자가 어려워지거나 지체

정책제안

- 舊 조특법 제27조의2의 한시적 재도입(일몰 : '28년까지)
- 민간 차원의 자발적 구조조정 지원
 - 제조업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사업재편 펀드 신설 등 정책금융 확보
 - 사업재편 이전 기간동안 유동성 지원 및 주채무계열 평가기준 완화, 사업재편 후 정책자금에 기반한 대환 등 이자비용 절감 지원

14-4 산업위기 지역 및 업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현실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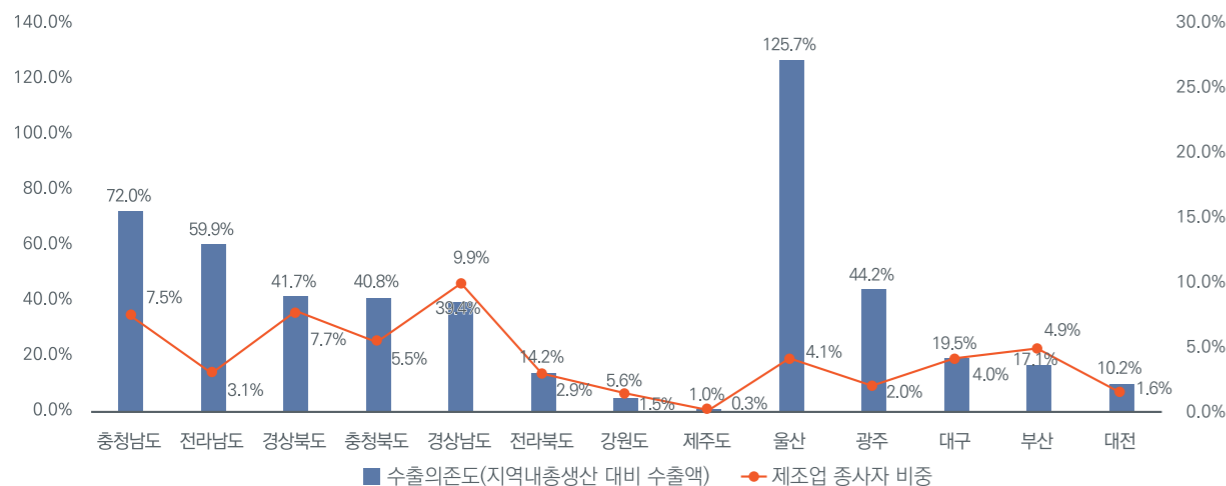
- 글로벌 경기 둔화, 관세전쟁 등으로 수출의존도 높은 우리경제의 부정적 전망이 높아짐
 - 수출비중 높은 업종의 최근 경기전망은 부정적, 일부 업종은 미국 관세와 중국의 공급 과잉이 맞물려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됨

주요 수출업종별 리스크 요인

업종	리스크 요인
철강	미국의 관세 부과 및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가격 경쟁력 약화
자동차	미국 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기계	선진국 경기 둔화에 따른 설비투자 감소
석유화학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가격 경쟁력 약화
반도체	미국의 시, 고성능 반도체 관련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 미국-대만 업체와의 초격차 경쟁 심화

-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주요 수출 제조업의 경기는 지역경제에 직결됨
 - 제조업 종사자(약 415.7만명)의 절반 이상이 비수도권 지역에 분포
 - * 제조업 종사자 비중: 경남 9.9%, 경북 7.7%, 충남 7.5%, 충북 5.5%, 부산 4.9% 등
 - 수출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수출 경기의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 지역별 총생산 대비 수출액: 울산 125.7%, 충남 72%, 전남 57.9%, 광주 44.2% 등

전국 제조업 종사자 분포 및 지역별 수출의존도 현황('23년 기준)



정책제안

- 산업위기 지역 및 업종의 기업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 지역산업위기대응법상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추가 지정 및 해당 지역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대외 요건 약화로 일시적 위기에 직면한 산업위기지역 및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 산업위기지역 및 업종의 대기업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중 그 외 자산의 설비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3%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안)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신성장·원천기술	3%	8%	14%
그 외 자산	1% → 3%*	7%	12%

제언집 문의처

작성 총괄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 (02-6050-3442)

성장을 추진할 동력

- 1 AI 육성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 (02-6050-3381)
- 2 규제 혁신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 (02-6050-3720)
- 3 에너지 정책 대한상공회의소 그린에너지지원센터 (02-6050-7131)
- 4 탄소중립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팀 (02-6050-3804)
- 5 기업가정신 한국경제인협회 산업혁신팀 (02-3771-0252)

새로운 산업의 이식

- 6 신산업 한국경제인협회 산업혁신팀 (02-3771-0252)
- 7 서비스산업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실 (02-6000-5475)
- 8 스케일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 (02-3275-2108)

경제영토 확장

- 9 통상·해외시장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실 (02-6000-5475)
- 10 수출 정책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실 (02-6000-5475)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 11 자본·금융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팀 (02-6050-3841)
- 12 인력 한국경영자총협회 의정협력팀 (02-3270-7350)
- 13 노동·안전 한국경영자총협회 의정협력팀 (02-3270-7350)
- 14 산업재생 한국경제인협회 산업혁신팀 (02-3771-0252)